

연구보고서 2007-19-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이삼식 박종서
김필숙 김형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우리나라 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한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락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는 1.1 수준의 세계적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는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기본계획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반 영역에 대한 포괄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장기적 전망에서의 이민정책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민은 인구변화의 한 요소로서 세계화 추세에 따른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이주는 저개발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견해이다. 국제 이주는 더 이상 이주자를 송출하는 국가 또는 이들을 유입하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이산 또는 디아스포라(diaspora)로 표현되는 인구 이동의 확산은 세계화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와 지식 그리고 사상의 교류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의 세계적 확대의 결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정책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인남성이 외국의 신부를 맞이하는 특이한 형태의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이민전이나 후에 이민자 동족끼리 결혼하는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의 증가는 그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민정책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
양한가족의 증가를 가져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한쪽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이 한국사회에 정착되는 경우, 이후 새로운 형태의 이민에
대한 내국인의 문화적 거부감도 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저출산·고령화현
상과 연계하여 그리고 다문화국가로 이행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
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대부분 기존
연구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과 연계하여 국제결혼
의 본질과 위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인색하며, 그 기본적인 논의의 구
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발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그 지속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어서 국제결혼의 추이와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과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학적 차원 그리고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
제결혼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적 기초자료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해준 통계청 김형석 사무관에게 연구진을 대신해 감사를
표하며,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 연구원 정경희 연구위
원, 이소정 부연구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13
제3절 연구방법	15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9
제1절 국제결혼 개념에 관한 고찰	19
제2절 인구학적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선행연구 고찰	21
제3절 문화인류학적 및 여성학적 관점에서 선행연구 고찰	26
제4절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33
제3장 국제결혼 메커니즘	35
제1절 국제결혼 수요의 메커니즘	35
제2절 국제결혼 공급의 메커니즘	49
제3절 국제결혼 수급의 메커니즘	52
제4장 국제결혼 관련 제도 및 정책	57
제1절 국제결혼 관련 제도	57
제2절 중앙정부의 국제결혼가족 지원정책	6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사업 실태	75

제5장 국제결혼 수준과 행태 변화	82
제1절 국제결혼 수준	82
제2절 국제결혼 행태	84
제3절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실태	110
제4절 국제결혼 수준 및 행태의 시사점	113
제6장 국제결혼가정의 출산 및 양육 실태	117
제1절 이민과 출산력	117
제2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	119
제3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126
제7장 국제결혼의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132
제8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3
부 록	153

표 목 차

〈표 1- 1〉 심층면접 대상자 기본 특성	16
〈표 1- 2〉 사례조사 대상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결혼사업	18
〈표 3- 1〉 출생성비 및 합계출산율(TFR) 변동 추이, 1970~2006	36
〈표 3- 2〉 일부 연령집단별 남녀 인구의 차이, 1990~2006	37
〈표 3- 3〉 일부 연령집단별 남녀 인구의 차이 전망, 2005~2015	39
〈표 3- 4〉 지역별 결혼적령기 미혼인구의 성 구조, 1975~2005	42
〈표 3- 5〉 지역별 25~34세 미혼인구의 성비, 1975~2005	42
〈표 3- 6〉 지역별 평균 초혼연령 변동 추이, 1995~2006	44
〈표 3- 7〉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46
〈표 3- 8〉 남성의 학력수준별 평균 초혼연령, 2000~2006	47
〈표 3- 9〉 지역별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48
〈표 3-10〉 이혼건수 및 조이혼률 변동추이	48
〈표 4- 1〉 국적법상 간이귀화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59
〈표 4- 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구분	61
〈표 4- 3〉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 허가 유형	63
〈표 4- 4〉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1회별)	65
〈표 4- 5〉 주요 관계부처의 국제결혼가족 지원정책(2005~2007)	70
〈표 4- 6〉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76
〈표 5- 1〉 국제결혼 변동 추이, 1991~2006	83
〈표 5- 2〉 한국인여성+외국인남성 결혼: 외국인 남편의 국적	90
〈표 5- 3〉 한국남자+외국여자 결혼: 외국인 처의 국적	92
〈표 5- 4〉 한국인남편 및 한국인처의 혼인형태	94
〈표 5- 5〉 혼인형태별 한국남성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	95

〈표 5- 6〉 외국인배우자의 국적별 한국인 남녀의 초혼 비율	96
〈표 5- 7〉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간 국제결혼의 시도별 분포	97
〈표 5- 8〉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 2006	99
〈표 5- 9〉 지역별 국제결혼 현황: 시군구 순위 (외국인처 비율 기준), 2006	101
〈표 5-10〉 국제결혼 부부(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연령 분포, 1995~2006	103
〈표 5-11〉 국제결혼 부부(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연령 차이, 1995~2006	104
〈표 5-12〉 국제결혼 부부(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교육수준, 1995~2006	105
〈표 5-13〉 국제결혼 부부(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의 학력 차이, 1995~2006	106
〈표 5-14〉 국제결혼부부(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 교육정도, 1995~2006	107
〈표 5-15〉 국제결혼남자의 농림어업종사 현황, 2006	109
〈표 5-15〉 국제결혼부부의 직업, 1995~2006	110
〈표 5-16〉 외국인배우자 이혼 현황, 2004~2006	111
〈표 5-17〉 국적별 외국인배우자 이혼 현황, 2006	111
〈표 5-18〉 국적별 국제결혼 이혼수준, 2006	112
〈표 5-19〉 자녀수별 이혼 현황, 2004~2006	113
〈표 6- 1〉 일부 국가의 인종·국적별 출산율 차이	118
〈표 6-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수	120
〈표 6-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합계출산율	121
〈표 6-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존자녀수 및 추가희망자녀수	125
〈표 6-5〉 심층 면접대상자의 자녀양육 관련 특성	127

부표목차

[부표 1] 외국인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2조 관련)	155
[부표 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56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	162
[부표 4]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 및 제정 일시	169
[부표 5] 지자체 국제결혼 관련 조례 비교	170
[부표 6] 국제결혼 한국인남편-외국인처 연령차이	174
[부표 7] 국적별 자녀수별 이혼 현황, 2004~2006	177
[부표 8] 외국인 처의 연령별 이혼 현황, 2004~2006	178
[부표 9]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평균이혼연령, 2004~2006	179
[부표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심층 면접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180
[부표 11] 일부 국가의 인종 분포 및 이민 특성	185

그림목차

[그림 2-1] 혼인 시장 메커니즘	24
[그림 3-1] 15~24세 미혼남녀의 도시-농촌간 순이동(농촌-도시) 변동 추이	40
[그림 3-2] 지역별 동일연령대의 남녀인구 차이, 2005	41
[그림 3-3] 지역별 25~34세 미혼인구의 성비, 1975~2005	43
[그림 3-4] 지역별 평균 초혼연령 변동 추이, 1995~2006	45
[그림 3-5] 국제결혼 수급의 메커니즘(mechanism)	54
[그림 5-1]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건수 비율	8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국제사회에서 이주는 저개발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견해이다. 국제 이주는 더 이상 이주자를 송출하는 국가 또는 이들을 유입하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이산 또는 디아스포라(diaspora)로 표현되는 인구 이동의 확산은 세계화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와 지식 그리고 사상의 교류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의 세계적 확대의 결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정책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이선주 외, 2005).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인구현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전재한다. 이들 많은 인구현상 중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주제들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국제결혼 증가를 들 수 있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출산율 회복 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에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논의되곤 한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합계 출산율은 2015년 경 1.6 수준이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해도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이민정책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남성이 외국의 신부를 맞이하는 특이한 형태의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이민전이나 후에 이민자 동족끼리 결혼하는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의 증가는 그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는 이민정책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가족의 증가를 가져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한쪽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이 한국사회에 정착되는 경우, 이후 새로운 형태의 이민에 대한 내국인의 문화적 거부감도 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¹⁾

이와 같이,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저출산·고령화현상과 연계하여 그리고 다문화국가로 이행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대부분 기존 연구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과 연계하여 국제결혼의 본질과 위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인색하며, 그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의 규모와 구조 및 그 지속성에 따라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대규모 국내 유입은 그 자체적으로 인구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 여성의 출산력 수준 역시 총인구의 출산력 수준에 변동을 가져와 결국은 인구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보건복지 수준,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의 질적 수준은 전체인구의 자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노동력의 질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오랜 이민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의 고출산력에 의해 인구대치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도 이민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력이 전체 출산율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자들 및 그들의 2세대가 폭동을

1) 국제결혼은 신화처럼 굳어진 단일민족 이데올로기 믿음에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금연, 2003b).

일으키는 등 오랜 이민사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사회통합문제가 현재수준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²⁾ 실제 이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점차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이선주·김영혜·최정숙, 2005).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의 논의와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추이와 행태는 인구정책(저출산대책, 이민정책 등)과 사회정책(보건, 복지, 인권 등)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발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그 지속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국제결혼의 추이와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과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학적 차원 그리고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국제결혼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인구학적 및 사회학적 의미와 인류문화학적 및 여성학적 의미를 정리한다. 인구학적 및 사회학적으로 국제결혼을 인구현상과 사회현상의 메커니즘 하에서 발생하는 국제이동으로 간주하여, 그 유형과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인류문화학적 그리고 여

2) 세계화로 인한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이로 인한 국제 이주 문제,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문제 등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이선주·김영혜·최정숙, 2005).

성학적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원문제 특히, 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고찰하여 출산과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국제결혼 발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배우자로서 외국인여성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인구학적 및 사회적 현상을 조망하고 그 연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외에서 외국인여성의 빈곤문제와 이를 탈피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한국사회에의 정착을 원하는 ‘코리안 드림’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여, 국제결혼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과론적인 관계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향후 국제결혼의 규모와 지속성을 진단하는데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법제적인 고찰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을 진단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규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흐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향성을 명료화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국제결혼의 규모와 행태 변화의 추이를 분석한다. 국제결혼의 규모는 국적별로 파악하여, 시기별 국내와 국외 상황과도 연계시킨다. 국제결혼의 행태는 이주여성의 인권이나 복지수준 그리고 출산과 자녀양육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국제결혼부부간의 거주지, 연령, 혼인형태(초혼, 재혼), 학력, 직업 등에서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제6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고, 내국인과의 출산력 차이뿐만 아니라 향후 전체 인구의 출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에 단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 자질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앞서 실시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국제결혼 전개를 전망하고,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인구정책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어서 사회정책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제 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문헌조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국제결혼 관련 이론과 실재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결혼의 개념적인 것과, 인구학적 및 사회학적인 차원, 그리고 인류문화학적 및 여성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사례조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실시한다. 하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결혼결혼 가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고안되었으며, 주로 국제결혼여성들의 출산 및 자녀양육 행태를 포함한 이들의 인구학적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심층면접조사에는 국제결혼여성의 가족사항, 직업력,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 가치관, 보건, 정책선호도 등이 포함된다. 심층면접 실시에 앞서 시험조사가 2006. 5. 22~23일 양일간 실시되었다. 시험조사는 조사항목의 적합성 여부, 심층면접 대상자의 부담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표 1-1〉 심층면접 대상자 기본 특성

사례 번호	출신국	거주지역	국적 취득여부	현재연령		입국 시기	입국 목적	결혼 날짜	결혼 연령	혼인 상태	결혼 방법
				모	부						
1	중국 조선족	경남 김해시	한국	28	38	2003	결혼	2003	23	초혼	연애
2	중국 조선족	경남 창원시	-	32	38	2002	연수	2003	28	초혼	연애
3	중국 조선족	전남 순천시	-	24	46	2006	결혼	2006	23	초혼	소개
4	중국 한족	전남 순천시	-	32	39	2003	여행	2004	28	초혼	소개
5	중국 한족	대구 달성군	-	32	39	2004	결혼	2004	29	초혼	소개
6	몽골(고려인)	강원 춘천시	-	31	40	2004	결혼	2004	27	초혼	중개
7	몽골	강원 춘천시	-	34	33	1999	여행	2003	30	초혼	중개
8	우즈베키스탄	경남 창원시	-	27	37	2005	결혼	2005	26	초혼	중개
9	우즈베키스탄	강원 춘천시	-	31	46	2000	취업	2003	28	재혼	중개
10	카자흐스탄	전북 김제시	-	33	38	2001	결혼	2001	27	초혼	중개
11	베트남	강원 춘천시	-	29	45	2003	결혼	2003	25	재혼	중개
12	베트남	강원 춘천시	-	22	38	2004	결혼	2003	19	초혼	중개
13	베트남	대전 대덕구	-	26	46	2001	결혼	2001	20	초혼	소개
14	베트남	전남 순천시	-	24	45	2004	결혼				중개
15	태국	강원 춘천시	-	30	39	2000	결혼	2000	23	초혼	중개
16	태국	충북 청주시	-	27	45	2001	결혼	2001	21	재혼	소개
17	태국	전남 순천시	-	35	46	1999	결혼	1999	23	초혼	중개
18	필리핀	강원 춘천시	한국	28	40	2002	결혼	2002	24	초혼	중개
19	필리핀	강원 춘천시	한국	36	45	1997	결혼	1997	25	초혼	중개
20	필리핀	전남 순천시	-	47		1996	결혼	1996	37	초혼	중개
21	필리핀	충북 청주시	-	22	42	2004	결혼	2003	18	초혼	중개
22	인도네시아	강원 춘천시	-	28	46	2003	결혼	2002	23	초혼	연애
23	일본	대구 달성군	-	32	36	1997	결혼	2005	30	초혼	중개

주: 빈칸은 무응답, 혼인상태 재혼은 부인이 초혼이고 남편이 재혼인 경우임.

심층면접을 위한 면접대상자는 각 시·군·군에 설치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시 또는 군을 선정하고, 이곳에 설치된 결혼이민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물론 이들 조사대상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이민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정된 심층면접 대상자는 당초 31명(사례)이었으나, 의사소통 곤란, 사례분석대상으로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8명(사례)이 탈락되어 최종적으로 23명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최종 심층면접조사는 2006년 5월~2006년 7월 사이

에 본 연구진에 의해 실시되었다. 면접은 연구진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1:1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주여성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접 공간을 분리하거나 서로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1~3시간 정도이며,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면접 내용은 사례대상의 양해 하에 녹음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녹취하였다(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서투르고, 발음이 부정확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향은 국제결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담당자를 직접 방문·면접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사업 추진방법, 사후관리, 인구정책(저출산대책 등)에 대한 효과성 등에 관한 것이다. 연구진이 사전에 연락하여 면접시간을 잡았으며, 면접은 국제결혼업무 담당자에게 질문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전후에 담당공무원은 일부 관련 자료를 제시해주시기도 하였다. 사례대상 지역으로는 국제결혼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라북도 와 전라남도(호남권)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영남권)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들을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과 사업실시 개요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혼인통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제결혼의 변동추이와 행태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혼인행태로는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혼인상태, 직업, 교육정도 등이다. 이러한 행태 연구는 국제결혼 부부의 내적 갈등 구조와 외부에 대한 취약성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표 1-2〉 사례 조사 대상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결혼사업

일련 번호	국제결혼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현황
1	전라남도	해남군청 가족복지과 여성지원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500만원) 및 결혼중개업체 계약 맺어 결혼 추진('06) 현재, 공청회 개최 후 사업추진('07)
2	전라북도	정읍시청 사회여성과 가족문화팀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운영(맞선연계)
3	전라북도	고창군청 농업진흥과 농정기획담당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500만원 지원)
4	경상남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결혼중개업체 관여('06)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결혼지원금 지급('07)
5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지원금(500만원) 창원시 농촌총각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정
6	경상북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06년 사업시작 농촌총각 결혼경비지원(500만원)

제 2장 선행연구 고찰

1990년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국제결혼관련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 여성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어 왔다(윤형숙, 2004b). 여기에서는 국제결혼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어서 국제결혼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인구학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문화인류학 및 여성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제 1절 국제결혼 개념에 관한 고찰

인구대사전(통계청, 2006)에 따르면, 국제인구이동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의 이동으로 정의된다. 국제인구이동을 일상적으로 ‘이민’이라고 부르며, 한 ‘개인’의 이동은 이민자라고 표현한다. 국제인구이동을 판별하는 주요 기준은 국적(또는 시민권), 거주지, 거주기간, 체류목적, 출생지 등이다(United Nations, 2002). 일반적으로 거주지 기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입자(immigrants)는 국내에 영주하기 위해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며, 이출자(emigrants)는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출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거주’의 개념이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자 여부를 국적 또는 시민권의 소유 여부로 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자국 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경을 넘어 이주할 때는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동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유엔(United Nations, 1998)의 정의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계절이동자·품팔이·여행객 등은 거처를 외국으로 옮기지 않아

이민자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이동한 이주노동자는 영구이주자로 간주하지 않아 이민자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해외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는 이민자 범주에 포함된다.

국제결혼이란 국어사전에 “국적을 달리하는 남·여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전우섭, 1997).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결국 국제결혼이란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진 가족공동체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이중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2세를 혼혈인 즉 이중문화 자녀라고 부른다. 이질적인 한 문화와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출발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엔이나 ILO에서는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 대신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배타성을 배제하고 동등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한국염, 2005).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과 그 자녀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하였다. 198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제결혼과 혼혈인에 대하여 국지적인 개념으로 축소하여 정의하였다(전우섭, 1997). 국제결혼이란 “해방 이후 외국인(미군)과 결혼한 여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1950년 이후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라고 정의하였다. 정부에서 의미하는 2세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여 얻은 자녀들을 의미하고, 3세는 이런 혼혈인이 성장하여 한국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우리 민족이 아닌 혼혈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자자손손이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두 가지로 유형화 되고 있다(윤형숙, 2004b).

즉, 하나는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온 남자와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농촌이나 도시 하급노동자 등 소위 한국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남자와 경제적으로 후진한 여성과의 결혼이다.³⁾ 윤형숙(2004b)에 의하면, 이 두 유형의 국제결혼간의 공통점은 후진국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사회의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인간의 결합이다. 그러나 이 둘은 섹슈얼리티와 젠더라는 요소에 의해 지구화에 의해 형성된 ‘국제결혼시장’에서 교환되는 사회, 문화적 자본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여성과 외국남성 이주노동자의 결혼은 사랑을 매개로 여성을 통한 시민권의 획득과 남성의 사회적·문화적 자본 등이 교환된다고 할 수 있다.⁴⁾ 반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은 계약적이고 매매혼적인 성격이 강하여 국제결혼여성의 인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여성결혼이민자’로 통칭되나, 이들은 실제 다양한 민족집단으로 구성되어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크다(설동훈·윤홍식, 2005).⁵⁾

제 2절 인구학적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선행연구 고찰

이 절에서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은 주로 국제결혼이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현상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혼인시장에서 혼

3) 다른 외국인 주부에 비하여 중국교포 혼인이주 여성들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가출이 더 용이하였으며, 중국교포 여성의 결혼이주는 국가간의 노동이동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다(이혜경, 1995).

4) 윤형숙(2004b)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제결혼에서 사랑은 모든 실리적인 것을 덮는 최우선적인 것이다. 결혼으로 교환되는 사회적, 문화적 자본은 ‘낭만적 사랑의 감정’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라는 점이다. 국제결혼에 관련된 교환의 요소가 무엇이든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오직 사랑’으로 강하게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과의 결혼을 내국인끼리의 결혼과 차별하고 타자화하는 배제전략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5) 단일민족권의 사람들은 개개인의 생활습관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간격을 좁힐 수 있는데, 국제결혼의 경우 이러한 간격을 좁힐 수 있을 만한 통로가 적어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인의 수준과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녀 성비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루는 배우자 선택(assortative mate selection)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종교를 믿는 배우자만을 찾는다면 혼인할 확률이 그만큼 달라지듯이 지리적인 공간도 혼인 성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예들 들어 도시 처녀들이 농촌총각에게 시집을 가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혼인시장은 거주지 특성별로 다시 세분해야 할 것이다. Golaman et al.(1984), Litcher et al.(1991), Bhrochain(2001) 등도 만약 분할성이 강하다면 혼인시장을 지리적으로 또는 사회적 특성(교육 등)으로 분할하지 않는다면 혼인시장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혼인압박(marriage squeeze)이란 용어는 Glick et al.(1963)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Fraboni and Bilari, 2001). 본래 베이비붐 시기에 많은 여자들이 몇 년 전에 태어난 남자와 비교 시 신랑이 적어지는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Fraboni and Bilari, 2001). 인구학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혼인력(nuptiality)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혼인시장에서 압박을 일으키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혼인압박을 혼인시장의 불균형(imbalance)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기본개념은 상대적으로 수가 더 적은 성이 혼인을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성 차별적인 인구이동이나, 출생성비의 불균형, 출산력의 변동으로 인한 성 및 연령 구조의 변화로 혼인압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는 혼인을 생각할 때 사랑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시장과 같은 존재로서 혼인시장에 참여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늘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시장은 학교, 직장, 교회, 친목단체, 여행지 등 파트너를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공간이다. 물론 어떤 공간은 다른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장적 관점에서 혼인을 설명하려는 접근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다. 경제학자들은 남자나 여자의 수요와 공급의 합이 혼인의 보상과 비용을 변화시켜서 혼인의 수준과 배우자 선택(assortative mating)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혼인과정을 통해 설명한다(Becker, 1974; Grossband-Shechtman, 1982; Oppenheimer, 1988). 혼인시장 이론에서는 여자는 임신과 보육, 가사 서비스를 남자는 경제적인 지원 즉, 아내로서의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Heer & Grossband-Shechtman, 1981; Grossband-Shechtman, 1982; Oppenheimer,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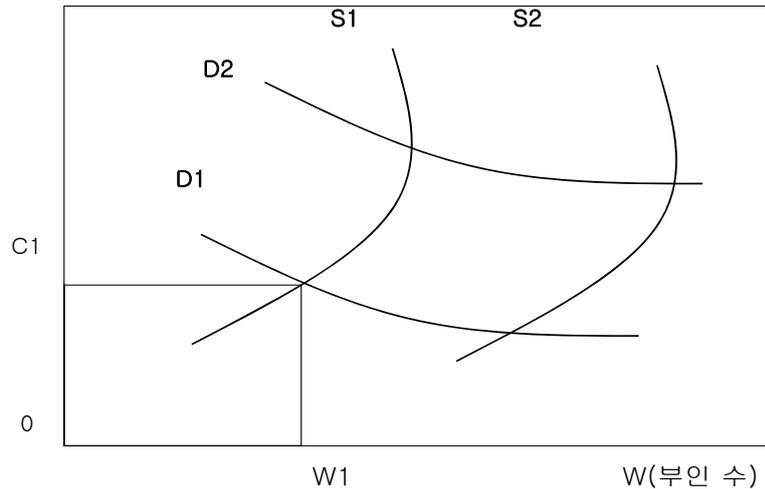
[그림 2-1]에서 개별 혼인은 수요(S)와 공급(D) 선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혼인시장 이론의 기본원리는 절대적인 사람 수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곡선의 기울기를 변화시키거나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여자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난다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것은 곧 여자의 결혼 성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남자가 돈이 많아지거나 혼인 욕망이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혼인성향이 늘어나게 된다(Grossband-Shechtman, 1982). 혼인시장에서 남자가 더 많아지면 여자의 총공급(S1)은 그냥 있는 동안 총수요가 D1에서 D2로 이동하게 되어 여자의 혼인이 증가하게 된다(Heer & Grossband-Shechtman, 1981). 혼인은 상재적인 남녀수는 물론 법이나 종교, 관습에서 정하는 최소 연령에도 영향을 받으며, 다른 경제사회 요인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여자의 취업은 여성의 총공급을 줄여, [그림 2-1]에서 S2에서 S1으로 이동(D1은 불변)시켜 여자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Grossband-Shechtman, 1982).

사회학자들(Guttentag & Secord, 1983)은 구조적 권력에서 성비가 불균형이 되면 배우자 선택에서 거래하는데 유리해 진다고 한다. 권력구조에서 불균형해진 성비의 결과로 성비가 혼인의 수용성(acceptability) 및 바람직성(desirability)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여자는 경제적인 모티브가 더 강하

기 때문에 성비에서 유리해지면 더 자주 혼인하며 더 나은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가 더 많아진다면 남자들은 경제적인 모티브가 적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어 혼인을 적게 한다고 본다. Guttentag과 Secord(1983)은 성비와 혼인선호와의 관계를 여자는 선형, 남자는 여자는 약한 곡선 관계로 주장한다.

[그림 2-1] 혼인 시장 메커니즘

C(보상)



자료: Heer & Grossband-Shechtman(1981).

인구학자들은 혼인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혼인압박(marriage squeeze)’으로 규정하여 혼인의 수준이나 패턴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Akers, 1967; Muhsam, 1974; Spanier and Glick, 1980; Schoen, 1983). 그들은 혼인압박이 남자와 여자 양성(兩性)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측정지표를 다양하게 만들어 왔다.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만약 남자가 여자 보다 많다면 미혼 남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고, 여

자가 남자 보다 많다면 여자의 미혼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Akers, 1967; Dixon, 1978).

이러한 혼인압박의 이론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농촌은 도시화 등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성구조적인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남성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선택기회가 적고, 지역사회를 벗어나 배우자를 선택할 확률도 적다. 결국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농촌 남성들은 그 배우자로 외국인을 찾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염(2005)은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서 찾고자 한다. 즉 유교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출생성비 왜곡, 여성의 결혼 포기 또는 연기 등으로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점도·김춘택(2006)에 의하면, 농촌사회에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삶을 전개해 온 농촌총각의 경우 타지로 가지 못하며 열악한 결혼조건으로 인해 국내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로 말미암아 농촌 총각들은 결혼을 위해 외국 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김두섭(2006)은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가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우리사회의 국제화 진행으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 문화적인 변화도 작용을 것이며, 이 보다 근본적으로 혼인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작용했을 수도 있으며,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 적용된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바 크다(김두섭, 2006). 이해경

(2005)에 의하면, 외국인여성은 1990년대 초반에 농촌 노총각의 배우자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도시 재혼자의 배우자로 선호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통일교를 통한 결혼이주가 많으며, 수도권에서는 국내입국을 위한 위장결혼도 많은 편이다(이혜경, 2005).

제 3절 문화인류학적 및 여성학적 관점에서 선행연구 고찰

이 절에서 문화인류학적 그리고 여성학적 관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은 주로 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간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갈등적인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학적 관점은 국제결혼 형성과정에서 외국인여성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며, 부부생활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거나 인권탄압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여성학자들은 지구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여성 이주로서의 국제결혼, 초국가주의와 국민국가의 경계넘기, 시민권과 차이의 정치학, 문화적 혼성성과 타자성, 친밀성의 국제시장, 인권유린 등 다양한 개념으로 국제결혼의 문제에 접근한다(김민정, 2002; 홍기혜, 2000; 김은실, 2003; 윤형숙, 2003; 이금연, 2003; 김정선, 2004; 윤형숙, 2004b에서 재인용). 여성학자들의 연구들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여성들의 갈등, 인권유린, 한국가부장제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성지혜, 1996).

문화인류학적 관점과 여성학적 관점 모두 국제결혼여성들이 겪는 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염(2005)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인신구금, 폭행,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인권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외국인 이주여성노동자를 생산직 노동자(산업연수나 개인적 인맥을 통해 들어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종사), 성산업 유입 여성(연예인 비자 E-6으로 입국한 여성) 그리

고 국제결혼 여성으로 구분하고, 생산직여성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성 차별적 임금과 대우,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부재,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성산업에의 유인 강요, 여성기숙사의 부족 등 문제점들을 제시하였으며,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에 대해서는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윤형숙(2004b)은 국제결혼 여성들을 ‘불쌍한 한국농촌남성을 두 번 울리는 사기·위장 결혼자’와 ‘남편과 시집의 폭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피해자’라는 두 극단적 이미지 사이를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국제결혼여성에 관한 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그녀는 국제결혼여성을 지나치게 피해자화 하는 것을 이들을 타자화하고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윤형숙(2004a)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맺어지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들의 결혼이 가진 ‘거래적’인 성격,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의 문제는 사회적,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이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여성을 ‘국제결혼의 덫’에 걸린 희생자로 이미지화하고 고착시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상업화된’ 국제결혼이 ‘비상업적인’ ‘국내결혼’에 대비되고 구별되어 중국에는 이들을 타자화하는 전략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문제들은 한국인남성의 특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특징은 한국사회에서 주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조영달(2006)에 의하면, 남편은 수입이 없거나 유동적이며, 일거리가 많을 때에는 보통이고 적을 때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금연(2003a)은 농촌 총각들의 주요 특징으로 늦은 나이에의 결혼, 문화

사회적 활동의 기회부족, 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음주문화, 가부장적인 사고, 전통적 가족 체계 유지에 대한 가족의 요구, 타문화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결여, 언어의 한계, 낮은 학력과 사회기회 부족 등을 들며, 이로 인하여 외국인 배우자와의 생활이 순탄치 않다고 한다. 채숙희(2003)도 결혼한 이주여성이 나이가 많은 부모에게 기대어 살면서 일을 하려하지 않는 남편, 아직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부모, 부모-자식간의 경계가 없는 경제관념, 부부가 대화를 나누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기를 종용하는 가부장제적인 사고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염(2005)은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결혼여성들은 다달이 부모님께 돈을 부치기는커녕, 심지어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 진 빚까지 갚느라 값싼 노동력으로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양점도와 김춘택(2006)에 의하면,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부부간에도 어느 정도 남성 중심적인 농촌 사회로의 외국여성들의 유입은 여러 가지 문화적 충돌을 겪게 된다. 이들은 문화적 충돌이 이주 여성의 경제적 빈곤화,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 범죄의 성장,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증가 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은 국제결혼형성과정과정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남성간의 국제결혼이 주로 결혼정보회사, 특정종교단체, 개인의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윤을 목적으로 결혼을 상품화하는 결혼중개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금연, 2003a). 결혼중개업체들은 결혼의 성사를 위하여 한국남성들의 입

장에서는 외국인여성들의 이미지를 가부장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시집에 순종 잘하는 한국 전통 여인상에 맞추어 상업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의 신분이나 나이 및 자녀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의 허위정보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염, 2005).⁶⁾

이러한 거의 허위정보와 비싼 중개료를 통해 성사된 국제결혼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외국인여성들을 배우자(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하고, 시집식구들은 가정부처럼 취급한다(한국염, 2005).⁷⁾ 매매혼에 의한 ‘본전 뽑기’에 따른 폭력의 빈번한 발생하기도 한다(이금연, 2003a). 외국인여성들은 ‘위장결혼’,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등의 잘못된 편견에 시달린다(한국염, 2005). 실제 평균연령 차이가 10살이고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도 나고 보니 의처증이 생기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으로 아내를 대하다 보니 쉽사리 폭력이 이어진다(한국염, 2006).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한국염, 2005).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일부 외국인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편이나 브로커에 의해

6) “한국에서 농부가 제일 대접을 받는 직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여자가 일할 필요가 없다. 시부모가 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 것이다.” 등 허위에 가까운 말을 해서 여자는 농촌 남자와 결혼을 해도 자기가 편하게 살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노동자나 미장으로 일하면서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직업을 속인다. 그리고 친정에 매월 돈을 부쳐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다른 실상이 나타나, 외국인 여성은 속았다고 느끼게 되고, 심지어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혼상담소는 신고제로 문제를 방지할 길이 없고, 통일교를 통한 결혼 역시 종교 단체이다 보니 감히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한국염, 2005).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스스로의 자조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이금연, 2003a).

7) 이주여성들이 년달이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특히 “나가라”고 한다.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이나 가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크게 부부관계,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로 대별될 수 있다(이혜경, 1995; 성지혜, 1996; 이금연, 2003; 홍기혜, 2000; 광주여성의 전화, 2004; 신경희, 2004; 윤형숙, 2004a; 보건복지부, 2005; 전만길, 2005; 한국염, 2005; 김오남, 2006; 김이선, 2006; 양점도·김춘택, 2006; 조영달, 2006). 우선 부부관계의 문제점들로는 의사소통 어려움, 성격과 기대 차이, 남성의 정신적 문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남편과의 사고방식과 습관, 성격의 차이, 경제적 곤란, 언어와 문화 차이, 부부관계의 계급화, 서로 다른 기대 차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주 여성과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들로는 음식조리, 관혼상제, 종교, 가치관 등의 차이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통제에 의한 갈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들로는 사교육비와 양육비용, 보육담당자, 자녀언어습득, 자녀교육, 자녀양육 관련 부부간 태도 차이, 한국어를 습득하기 전에 출산·양육을 책임져야하는 어려움, 자녀양육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제약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김오남은 의사소통문제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국제결혼 부부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 부부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영주(2001)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동화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과 문화 및 언어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 전만길(2005)도 한국인남편의 외국인아내에 대한 불만은 의사소통의 부족,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 사고의 차이 순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염(2005)에 의하면,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갖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가족과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한국문화를 알 수도 없다고 한다. 의사소통 곤란으로 남편과

시택식구와 대화가 적어지면서, 기가 죽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심리적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염(2005)은 국제결혼여성들이 한국어를 몰라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한국문화를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김오남(2006)은 유교적이고 며느리로서 의무가 강요되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여성이 시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으로 여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실태조사에서 생활습관이 가장 높은 갈등으로 나타났으며(강유진, 1999), 최근 보건복지부(2005) 조사에서도 이주여성이 남편과의 성격차이 다음으로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⁸⁾

문화와 가치관 등의 차이에 의한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은 농촌사회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에서 가족주의 가치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으로 이주여성의 고통이 더 크게 나타난다(김오남, 2006). 보건복지부(2005)에서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에 비해 친구관계나 여가 활동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보다 시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노인부양의 어려움,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어려움, 질병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 문제도 이들 부부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홍기혜(2000)는 중국조선족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은 경제력을 비롯한 가정 내 많은 자원을 독점하는 것으

8) 이와 같은 갈등은 국제결혼여성들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국제결혼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2, 광주여성발전센터) 30명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폭행 57%, 폭언 18%,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학대 12%였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중 16%는 자녀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숙희, 2003).

로 인해 이주여성이 부부갈등을 호소한다고 한다. 전만길(2005)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여성들이 사회생활 제한, 경제권을 주지 않는 것, 부양능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남편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끝으로 일부 연구들은 국제결혼가정의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은희(2004)는 농촌지역 거주 국제결혼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해·언어 발달지체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첫 임신인 경우가 많으나 경제적 문제, 언어와 정보의 협소에 따라 기본상식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산후조리 부족, 여성의 만성질환, 아이의 영양실조 등을 겪기도 한다(한국염, 2005). 특히, 언어문제와 다른 피부색에 대한 차별의식은 국제이민여성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어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며, 이러한 문제는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및 이에 따른 학업부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자녀는 낮은 국어 성적, 다른 피부색, 의사소통 능력 등에 있어서 자신감 상실 등으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며,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나쁜 친구들과 사귀거나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집단문화화)이 있다(조영달, 2006).⁹⁾ 정은희(2004)는 농촌지역 거주 국제결혼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해·언어 발달지체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 자녀의 경우, 학교조차 다닐 수 없거나 학교에서 이탈하여 노동인구로 전락하거나 비행청소년과 결탁하여 폭력 등 사회문제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제4절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이 장에서는 국제결혼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여러 관점을 기준으로 국제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고찰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제결혼의 개념에 관한 고찰 결과이다.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국제결혼 이민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국제결혼이민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이들 모두를 외국인이민자로 통칭하여 민족 집단별 독창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대상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컨대, 국제결혼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국제결혼 발생에 대한 혼인압박이론이나 실제적인 원인들을 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일부 원인의 종류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제결혼 발생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향후 국제결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국제결혼 여성과 그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언어, 피부색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교육 등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부적응 문제로 나타나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 국제결혼 여성과 그 자녀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문제에 못지않게 이들의 질적 수준은 인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구 자질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여성과 이들의 자녀양육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이 부부생활 등에서 갖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이들 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출산 행태는 국제결혼부부의 인구학적·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두섭,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출산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제 3장 국제결혼 메커니즘

국제결혼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제결혼 발생의 메커니즘을 수요-공급 관계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요 측면에서의 국제결혼 발생 메커니즘은 국내의 인구학적 현상과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다. 공급 측면에서 국제결혼 발생의 메커니즘은 주로 외국인 신부 국가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진단하였다.

제 1절 국제결혼 수요의 메커니즘

1. 인구학적 원인

국제결혼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은 인구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구구조 불균형은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 구조 불균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개인적인 남아선호가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단들이 유용될 수 있어야 한다(이삼식, 2001). 이전에 성 선택적 출산을 가능케 하는 수단(의료기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가 무작위 생리적 과정(biological random process)을 통해 자녀 중 남아를 적어도 1~2명을 두어 강한 남아선호사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생성비가 자연수준(106)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Lee, 1997).¹⁰⁾ 우리나라에 초

10) 출생시 성비는 자연상태에서 105~106정도(여아 100명당 남아수)이다(이삼식 외, 2007).

음파 기기가 도입된 시기는 1969년이며, 이를 이용한 태아성감별은 1980년 이후에 실시되었다(신성철, 1987). 많은 부부들은 1~2명의 자녀를 가지 되, 이중 적어도 1명의 남아가 포함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희망은 초음파검사와 함께 융모막검사, 양수검사 등을 이용한 태아 성감별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의해 가능해졌다(이삼식, 1998; Lee, 1997).¹¹⁾ 그 결과 출생성비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1983년에 107.4를 기록한 후 계속 높아져 1990년에는 116.5에 이르렀다.

〈표 3-1〉 출생성비 및 합계출산율(TFR) 변동 추이, 1970~2006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 부인당 자녀수)

연도	출생성비	TFR	연도	출생성비	TFR	연도	출생성비	TFR
1970	109.5	4.51	1983	107.4	2.11	1996	111.6	1.58
1971	109.0	4.53	1984	108.3	1.78	1997	108.2	1.54
1972	109.5	4.12	1985	109.5	1.67	1998	110.1	1.47
1973	104.6	4.08	1986	111.7	1.62	1999	109.6	1.42
1974	109.4	3.77	1987	108.8	1.56	2000	110.2	1.47
1975	112.4	3.42	1988	113.3	1.56	2001	109.0	1.30
1976	110.7	3.00	1989	111.7	1.56	2002	110.0	1.17
1977	104.2	2.99	1990	116.5	1.59	2003	108.7	1.19
1978	111.3	2.64	1991	112.4	1.74	2004	108.2	1.16
1979	106.4	2.90	1992	113.6	1.78	2005	107.7	1.08
1980	105.3	2.83	1993	115.3	1.67	2006		1.13
1981	107.2	2.65	1994	115.2	1.67			
1982	106.8	2.43	1995	113.2	1.6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발생의 원인으로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결혼적령기 남성 초과 또는 여성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다.¹²⁾ 실제 출생성비 왜곡은 초음파 등 성 선택적 의료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

11) 태아성감별을 위한 융모막검사는 임신 9주, 양수검사는 임신 16주, 초음파검사는 임신 20주 시에 실시된다.

12)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2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작된 1980년 후반부터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결혼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 30~40대 남성들은 1960년대 생과 1970년대 생이 대부분이다. 즉, 출생성비 불균형이 적어도 최근 국제결혼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1990년대 이래 활발한 국제결혼에서 한국인남성의 연령은 30~40대인 점을 감안하면, 출생성비 불균형이 아닌 출산력 변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혼인적령기 남녀인구간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혼인연령이 평균 약 3세 정도 더 높아(예를 들어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2006년 초혼연령은 남자 30.9세, 여자 27.8세), 한 시점에서의 결혼적령기 남녀는 출산수준이 서로 다른 시기의 출생코호트에 속한다. 즉 과거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기에 결혼적령이 높은 남성들이 결혼적령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태어났었다.

〈표 3-2〉 일부 연령집단별 남녀 인구의 차이, 1990~2006
(단위: 만명,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수)

연도	남성 (28~32세)	여성 (25~29세)	차이	성비	연도	남성 (28~32세)	여성 (25~29세)	차이	성비
1990	224	210	14	106.5	1999	220	217	3	101.6
1991	226	207	18	108.8	2000	224	212	12	105.6
1992	224	205	19	109.4	2001	227	204	22	110.9
1993	221	204	17	108.3	2002	226	196	30	115.2
1994	218	206	12	105.8	2003	223	190	33	117.2
1995	216	209	6	103.1	2004	216	187	29	115.7
1996	216	212	4	101.9	2005	207	186	21	111.2
1997	217	217	1	100.4	2006	201	189	12	106.6
1998	218	218	0	100.0	2007	198	191	7	103.6

주: 결혼적령기는 2006년 평균초혼연령±2세로 산정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늦음에 유의해야 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예를 들어, 2006년 남녀의 평균초혼연령±2세를 결혼적령기로 간주하였을 경우 1990년 이래 2006년까지 결혼적령남성인구가 결혼적령여성인구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2001~2005년간 성비가 110 이상으로 특히 큼을 알 수 있다. 즉, 반드시 결혼적령기에 모두 결혼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일부 남성들의 경우 신부 부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제결혼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국내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간 결혼적령기 인구의 불균형 분포를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산업화 및 근대화 이후 농촌 인구가 도시(특히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였다. 고출산으로 인한 농촌의 과잉인구가 빈곤(인구배출요인, pull factor)을 탈피하여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집중되었다. 당시 도시는 산업화의 거점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값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산업시설과 결합하는 이른바 인구흡입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하였다. 이농향도의 현상은 모든 연령집단에 동등한 정도로 발생하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쉽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젊은층 인구에 주로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 농촌의 인구구조는 점차 고령화되고 반면에 도시의 인구구조는 점차 젊은층이 많아지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젊은층 인구 중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의 도시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였다. 그 이유는 근대화 초기에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여자에게 더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는 서비스산업, 사무직 발전 등에 따라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농촌(군)에서 도시(시)로 순이동(전입-전출)한 15~34세 인구는 1995년까지 초과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우 사회적 요인에 의한 농촌인구 감소 발생). 2000년대에 들어서면 오히려 도시의 인구가 농촌으로 적은 규모이나마 초과유입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일부 농촌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의하거나 일부 귀환이동(return migration)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한 것으로도 간주해 볼 수 있다.

〈표 3-3〉 일부 연령집단별 남녀 인구의 차이 전망, 2005~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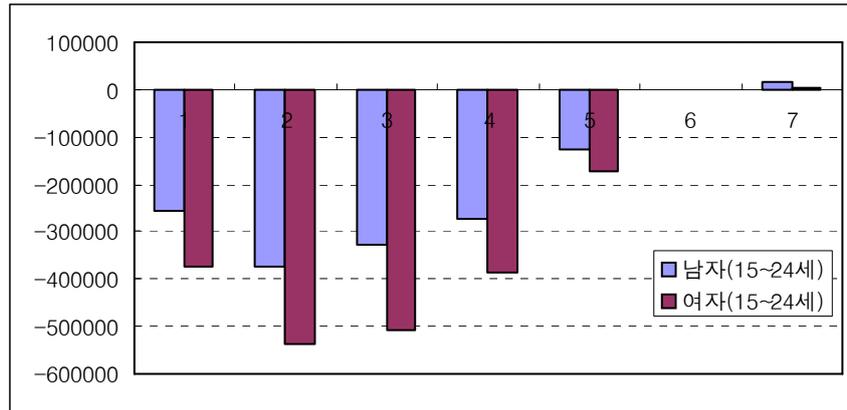
구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5년
남자						
15~19세	-188,682	-246,591	-205,215	-153,564	-62,878	5,072
20~24세	-67,347	-128,392	-123,277	-118,026	-62,381	12,997
25~29세	-78,724	-142,693	-148,678	-159,779	-69,422	21,443
30~34세	-33,721	-64,614	-34,125	-75,063	-2,005	54,659
여자						
15~19세	-238,643	-292,336	-264,042	-189,420	-70,507	5,341
20~24세	-136,493	-243,790	-243,083	-196,348	-101,780	-1,359
25~29세	-58,441	-108,904	-94,368	-97,789	-8,167	38,259
30~34세	-20,261	-42,648	-22,091	-63,315	802	57,300
순이동						
15~19세	-49,961	-45,745	-58,827	-35,856	-7,629	269
20~24세	-69,146	-115,398	-119,806	-78,322	-39,399	-14,356
차이 (여-남)						
25~29세	20,283	33,789	54,310	61,990	61,255	16,816
30~34세	13,460	21,966	12,034	11,748	2,807	2,641
순이동						
남(15~24)	-256,029	-374,983	-328,492	-271,590	-125,259	18,069
차이						
여(15~24)	-375,136	-536,126	-507,125	-385,768	-172,287	3,982
(15~24세) 차이(여-남)						
	-119,107	-161,143	-178,633	-114,178	-47,028	-14,087

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이동을 표본조사하였으나, 보고서(또는 KOSIS 등) 상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는 시부-군부간의 이동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

여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젊은층 인구가 오랜 기간 누적적으로 탈농촌 이주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미혼인 15~24세 인구의 초과전출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15~24세 남자의 초과전출 규모는 1975년 256천명, 1985년 328천명, 1995년 125천명 등이다. 15~24세 여자의 초과전출 규모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375천명, 507천명, 172천명이었다. 2005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초과전입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규모는 과거 이동해나간 규모에 비해 적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연령층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1975년 119천명, 1985년 179천명, 1995년 47천명, 2005년 14천명이 덜 초과전출 하였다.

[그림 3-1] 15~24세 미혼남녀의 도시-농촌간 순이동(농촌-도시) 변동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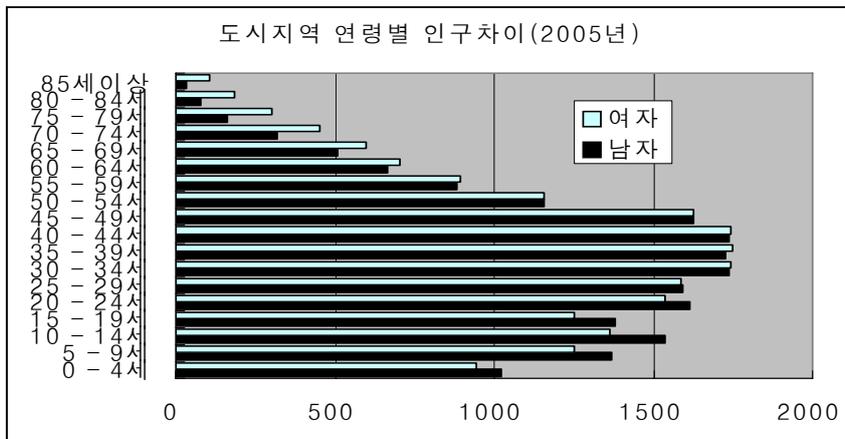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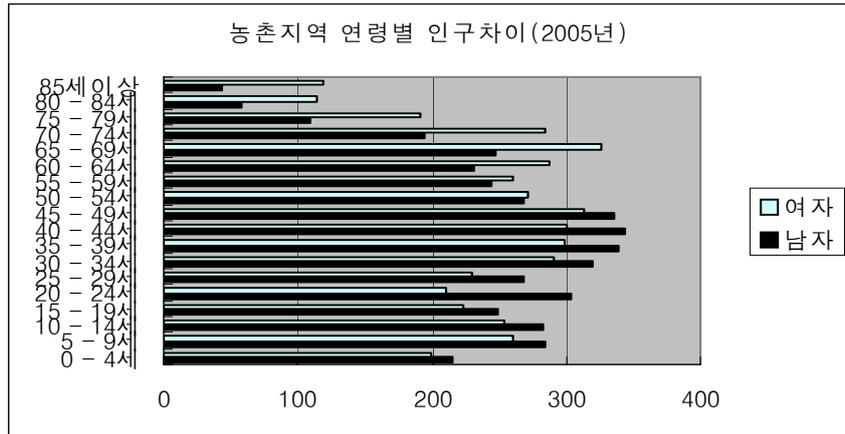


이는 이동의 flow 개념보다 이동의 결과로서 남아 있는 인구의 구조인 stock 개념으로 파악해보면 더 명료하다. 이러한 stock 개념은 결국 지역간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농현상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농촌에 남아 있는 젊은 인구의 성 구조(여기에서는 동일 연령대에서 비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지는 비대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 혼인상태별로 보면, 결혼적령기에서 미혼남녀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서 25~34세 미혼인구의 성비는 1975년 322로 남자미혼인구가 여자미혼인구를 3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결혼적령기 미혼인구의 성비는 1985년 237, 1995년 218, 2005년 153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농촌지역에서 젊은 미혼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입되었으며, 여성의 만혼현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2] 지역별 동일연령대의 남녀인구 차이, 2005

(단위: 천명)



농촌지역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초과전출현상이 심하고 여성의 초혼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 25~34세 미혼인구의 성비는 도시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난다. 최근에 올수록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도시로의 이동률이 둔화되면서 농촌에서도 25~34세 미혼인구의 성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아 2005년 읍지역 215, 면지역 269로 각각 나타난다.

〈표 3-4〉 지역별 결혼적령기 미혼인구의 성 구조, 1975~2005

(단위: 천명, 여자 100명당 남자수)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시지역														
20~24	772	624	1,144	941	1,312	1,166	1,583	1,379	1,693	1,473	1,606	1,401	1,584	1,448
25~29	360	110	469	167	743	304	963	399	1109	538	1224	728	1311	969
30~34	52	18	63	27	106	54	225	94	335	124	475	194	723	353
35~39	9	5	12	8	24	17	45	32	107	59	175	77	311	139
읍지역														
20~24	148	84	219	134	241	140	183	119	158	103	142	99	132	92
25~29	54	13	72	22	106	34	92	33	85	31	94	41	95	53
30~34	7	2	10	3	16	6	24	7	29	7	40	11	57	18
35~39	2	1	2	1	4	2	6	2	11	3	17	5	29	8
면지역														
20~24	574	237	561	237	512	179	446	193	305	144	229	122	165	96
25~29	183	23	156	28	180	37	184	47	144	40	143	48	113	50
30~34	20	3	21	3	27	5	50	9	54	9	65	13	69	17
35~39	5	1	5	1	8	2	12	3	22	5	33	6	40	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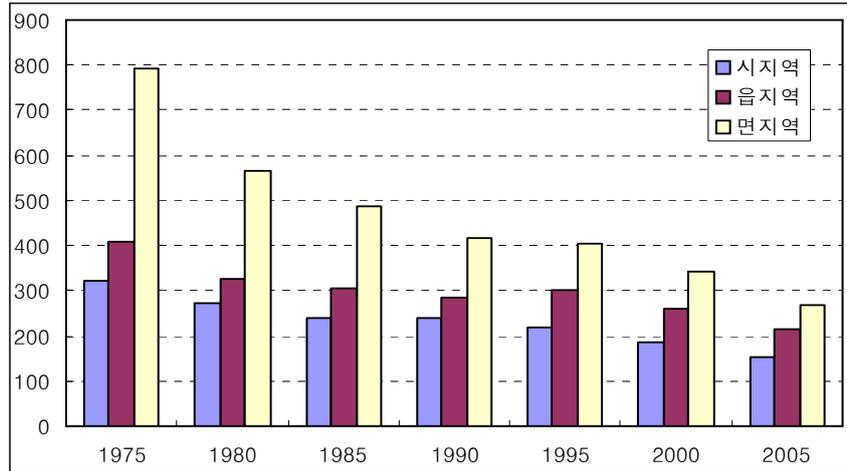
〈표 3-5〉 지역별 25~34세 미혼인구의 성비, 1975~2005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시지역	322.5	274.5	237.4	240.8	218.1	184.2	153.9
읍지역	410.6	327.2	305.1	286.3	299.4	260.7	215.3
면지역	791.0	564.3	488.9	416.2	405.6	342.8	269.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그림 3-3] 지역별 25~34세 미혼인구의 성비, 1975~200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 사회경제적 원인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지역간 미혼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인구학적 요인 이외에 최근의 사회현상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다. 즉,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참여 증가 및 가치관 변화 등에 따른 여성의 결혼 연기 및 포기 현상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남성의 초혼연령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이다. 일부 남성의 결혼 지연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특히 농촌에서 결혼할 상대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도시(동부)와 농촌(읍부, 면부)의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평균초혼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06년 30.9세로 상승하였다.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면부에서 27.9세에서 31.3세로 약 10년 동안 가장 낮

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읍지역에서 남성 평균초혼연령은 동 기간 28.1세에서 30.8세로 증가하였으며, 동지역에서는 28.4세에서 30.9세로 증가하였다. 즉, 그러나 1995년만 해도 동부, 읍부, 면부의 순으로 평균 초혼연령이 높았으나, 2006년에는 면지역, 동지역, 읍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면의 농촌에서 남성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워 비자발적 만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6〉 지역별 평균 초혼연령 변동 추이, 1995~2006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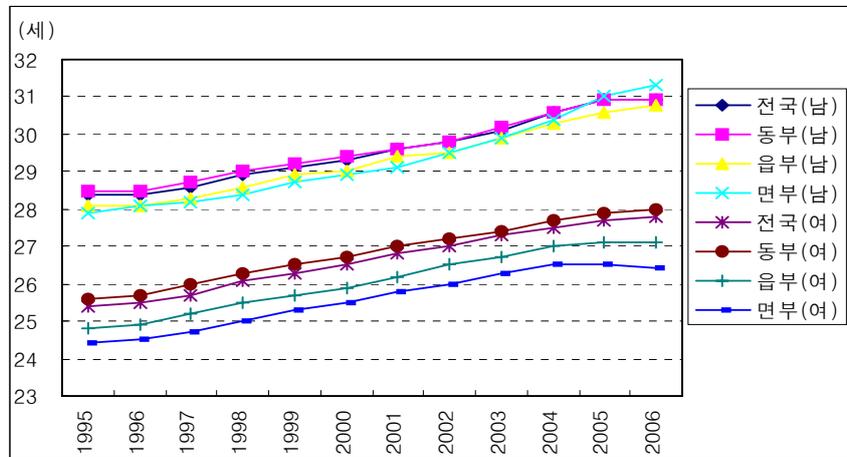
연도	남편				처			
	전국	동부	읍부	면부	전국	동부	읍부	면부
1995	28.4	28.5	28.1	27.9	25.4	25.6	24.8	24.4
1996	28.4	28.5	28.1	28.1	25.5	25.7	24.9	24.5
1997	28.6	28.7	28.3	28.2	25.7	26.0	25.2	24.7
1998	28.9	29.0	28.6	28.4	26.1	26.3	25.5	25.0
1999	29.1	29.2	28.9	28.7	26.3	26.5	25.7	25.3
2000	29.3	29.4	29.0	28.9	26.5	26.7	25.9	25.5
2001	29.6	29.6	29.4	29.1	26.8	27.0	26.2	25.8
2002	29.8	29.8	29.5	29.5	27.0	27.2	26.5	26.0
2003	30.1	30.2	29.9	29.9	27.3	27.4	26.7	26.3
2004	30.6	30.6	30.3	30.4	27.5	27.7	27.0	26.5
2005	30.9	30.9	30.6	31.0	27.7	27.9	27.1	26.5
2006	30.9	30.9	30.8	31.3	27.8	28.0	27.1	26.4

자료: 통계청, KOSIS(2007. 7. 9 현재).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전체적으로 1995년 25.4세에서 2006년 27.8세로 2.4세가 증가하여, 남성(2.5세)과 유사한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 패턴을 보면, 남성의 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면부 지역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동부(2.4세), 읍부(2.3세), 면부(2.0세) 순으로 상승폭이 커 여전히 도시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결혼 상대

자를 찾을 수 없어 비자발적으로 결혼이 연기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도시에서 경제활동 참가, 결혼관 약화 등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 지역별 평균 초혼연령 변동 추이, 1995~2006



자료: 통계청, KOSIS(2007. 7. 9 현재).

25세 이상 미혼남녀들이 조사 당시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미혼남성의 주된 이유로는 소득부족(19.2%), 고용불안정(17.3%), 결혼비용 부담(21.3%) 등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은 미래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결국 교육기간을 증가시키는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만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11.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5.1%) 등 배우자의 접근성 문제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과 비교하여 보면, 농촌 미혼남성들이 소득부족이나,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등 배우자의 접근성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25세 이상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이유로는 마땅한 사람 못 만남 24.4%, 이성을 만날 기회 없어 6.5%로 배우자 접근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큰 문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결혼생활 양립곤란 17.8%, 결혼비용 부담 13.2%,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8.9% 등 사회문화적인 이유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소득부족(4.7%)과 고용불안정(6.1%)은 남성에 비해 큰 장애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표 3-7〉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단위: %)

이유	미혼남자			미혼여자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소득부족	19.2	18.5	23.3	4.7	4.8	3.6
실업/고용 불안정	17.3	17.8	14.1	6.1	5.8	8.4
일-결혼생활 양립곤란	5.3	5.0	6.6	17.8	18.1	15.1
결혼비용(주택/혼수등) 부담	21.3	22.8	12.5	13.2	13.0	14.0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5.1	5.3	4.1	8.9	8.8	9.2
마땅한 사람 못 만남	11.6	11.2	13.5	24.4	24.2	25.6
이성을 만날 기회 없음	5.1	4.5	8.4	6.5	6.4	7.2
기타	15.1	14.8	17.4	18.5	18.7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751)	(642)	(109)	(460)	(402)	(59)

자료: 이삼식 외(2005).

즉 남성(농촌지역, 저학력 등)들은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비혼이 증가한 반면, 여성들은 여러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아, 가뜩이나 신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남성들은 국외에서 신부들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 남성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평균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났다(표 3-8). 2006년의 예를 들어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경우 평균초혼연령이 35.7세로,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남성의 경우 31.3세,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경우 30.5세에 비해서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에서 정주하고 있는 농촌남성들은 타지로의 이동이 곤란한데다가 열악한 결혼조건으로 인해 국내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¹³⁾

〈표 3-8〉 남성의 학력수준별 평균 초혼연령, 2000~2006

(단위: 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학교이하	31.8	32.3	32.8	34.1	35.1	35.9	35.7
고등학교	28.9	29.3	29.6	30.1	30.7	31.2	31.3
대학이상	29.3	29.5	29.7	29.9	30.2	30.4	30.5

자료: 통계청, KOSIS, 각 연도.

가치관의 변화도 여성의 만혼화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편혼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미혼인구의 결혼관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혼남성의 71.4%(‘반드시 결혼’은 29.4%)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49.2%(‘반드시 결혼’은 12.9%)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치관은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과거 출산력이 다른 시기에 태어난 결혼적령 남녀인구규모의 차이, 국내이동의 선택성(migration selectivity)으로 인한 지역간 인구의 성비 불균형, 여성의 만혼화 및 비혼화 경향 등 인구학적 및 사회적 원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남성들은 한국사회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이들 미혼남성들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이면서 사회적으로 자신의 열악한 위치를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는 외국인여성들과의 결혼을 원하는 것이다.

13) 일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주변 위치에 있으며, 주된 특징으로는 불안정한 직업 및 낮은 수입, 만혼, 사회문화 활동 기회 부족, 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유주문화, 가부장적 사고, 전통적 가족체계 유지에 대한 가족의 요구, 타문화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결여, 언어의 한계, 낮은 학력, 고령부모에게의 높은 의존 등을 들 수 있다(조영달, 2006; 이금연, 2003a; 한국염, 2004; 채숙희, 2003).

〈표 3-9〉 지역별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단위: %)

구분	반드시 결혼해야함	결혼 하는 편	해도안해도 무방	결혼하지 않는 편	모름	계(명)
미혼남성	29.4	42.0	23.5	2.2	3.0	100.0(1,466)
도시	29.0	41.8	24.1	2.1	3.0	100.0(1,247)
농촌	31.5	42.9	20.1	2.7	2.7	100.0(219)
미혼여성	12.9	36.3	44.9	3.7	2.2	100.0(1,205)
도시	12.7	36.2	44.9	3.7	2.5	100.0(1,054)
농촌	13.9	36.4	45.0	4.0	0.7	100.0(151)

자료: 이삼식 외(2005).

한편,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는 농촌의 미혼남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중반 이래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 남성들이 재혼 상대로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면서 본인의 결함(헨디캡)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여성들을 선호하고 있다. 참고로 이혼건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여 2003년에는 16.7만 쌍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10만 쌍 이상(2006년 12.5만건)이 이혼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2000년대 국제결혼 한국인남성 중 30~45% 수준이 재혼이며, 특히 2004년에는 그 비율이 45.3%에 이르고 있다(이에 대한 구체인 분석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5장을 참조한다).

〈표 3-10〉 이혼건수 및 조이혼률 변동추이

(단위: 천건, 총인구 1,000명당)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이혼건수	45.7	68.3	120.0	135.0	145.3	167.1	139.4	128.5	125.0
조이혼율	1.10	1.50	2.50	2.80	3.00	3.50	2.90	2.60	2.60

자료: 통계청, KOSIS.

제 2절 국제결혼 공급의 메커니즘

최근 들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로는 앞서 제기한 국내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 이외에 국외적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다.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의 흐름에서 기인된 것과 일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과 관련된 것이 있다.

고전경제학적 이론 중 거시적 입장에서 국제이동은 국가간 또는 지역간 노동과 자본의 불평균한 분배 때문에 발생하는데, 자본이 빈약한 저개발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제공하는 선진국으로 이동한다.¹⁴⁾ 미시적 입장에서 개인은 소득수준 상승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고임금을 추구하여 자발적으로 국제이동을 결정한다(Massey et al, 1998: 이선주·김영혜·최정숙, 2005 재인용) 이와 같은 고전경제학적 이론에 따라, 초장기 한국사회로의 외국인 유입은 주로 노동력(특히, 불법) 이동의 형태로 전개된다.

실제로 한국의 국제결혼 중 일부는 산업 연수생 제도의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노동력의 이동은 반드시 정착할 사회에 부가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들의 주거와 여가는 바로 정착할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국인 남성이 외국 주재원으로 있는 동안 외국인 여성과 결혼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런 사례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다.

처음 연수 왔을 때 현장 아줌마가 소개시켜 주었다. 처음에는 서로 몰랐고... 현장 아줌마가 소개시켜줘서 만나고... 엄마 아버지가 경상도 말투 쓴다. 우리 사는 동네는 거의 경상도 말투 쓴다. 연수를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사례 2, 중국 조선족 여성)

14) 1960년대에 심화되기 시작한 이주에 대한 고전 경제학적 접근은, 이주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두는 거시적 입장과 이주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입장으로 나뉜다 (Massey et al, 1998: 이선주·김영혜·최정숙, 2005 재인용).

한국으로의 외국노동력 유입은 국내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¹⁵⁾ 한국사회에는 자본집약적인 3차 산업과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이 공존한다. 국내 노동자들은 힘들면서도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2차 산업(특히 3D산업)에의 종사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3D(Dirty, Dangerous, Difficult)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정책을 펴왔으며, 그 영향으로 아시아의 많은 저개발국에서 주로 남성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해왔다. 과거 산업연수원생도 이러한 국제이동형태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아시아 저개발국의 노동자들은 빈곤을 탈출하기 위하여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국내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국제결혼은 외국노동력의 유입과는 사뭇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공급의 메커니즘에서 외국노동력 유입을 중요시하는 것은 국내의 노동시장에 진출하고자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는 국가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가난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이주의 여성화’를 촉발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가난한 여성들은 노동이동, 성매매이동, 국제결혼이동 등 다양한 이주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으로의 이동루트가 극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이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15) 1970년대 Piore에 의해 정교해지기 시작한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이주를 연결한다(IOM, 2003). 이주를 개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결정과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는 미시경제학과는 달리,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이주는 목적국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Piore는 산업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이주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선주·김영혜·최정숙, 2005).

사실은 여기서 일 했을 때... 계약 때문에 3년 끝나고 우즈베키스탄 들어가야 해요. 안 들어가면 ... 불법적으로 되요. 우즈베키스탄 다시 들어갔다다 다시 한국 들어가면 편하게 들어갈 수 없어요.... 관광비자 받아서 한달동안 들어가면 내가 한달동안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원 있어요. 학원 갔다가 한국말 배워서 아무래도 앞으로 회사에서 일 하려면 한국에 다시 가야 한다. 그때 정말 내가 우즈베키스탄 얼마나 싫어했는지, 한국 내 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한국 가고 싶은 마음 있었는지...(사례 9, 우즈베키스탄 여성)

위의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식품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된 사례이다.

우리 신랑은 제가 외국사람 결혼하면 우리 집도, 조금 부모님도 도와줘 수 있어. 똑같아. 그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전에 우리 신랑 돈 많은 줄 알았어. 도와줄 수 있어. 왜냐면 태국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하면요 더 못 살아요. 제가. 남자도 일도 없다. 일도 안 해. 여자만 일을 하니깐. 남자는 일이 없어요. 일 안해요. 일 안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농사 사람 일 하기도 힘들어 있잖아요. 제가 가고 싶어요. 외국 그냥. 그랬더니 만났어요. 만나면 맘에 들은 거예요. 좋아요. 그냥 결혼은 못했어요.(사례 16, 태국 여성)

위의 태국 여성 사례는 태국에서의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한 비관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경우이다. 태국에서 남성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국 남성과 결혼할 경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반드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빈곤한 여성들에게 한국사회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빈곤한 여성들은 굳이 임금이 아니더라도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한국인남성들과 결혼을 희망하게 되는 것이다.¹⁶⁾ 외국인여성들은 이러한 꿈을 이루기

16) 국제결혼이나 합법적인 노동이동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여성

위해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자, 고령자, 장애인 등과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표 5-4> 참조).

제 3 절 국제결혼 수급의 메커니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조류 아래에서 아시아지역의 빈곤한 여성들의 한국사회로의 유입 희망은 한국사회 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국제결혼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이 결혼중개업체 등을 매개로 외국인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고자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동남아, 러시아, 몽고 등 아시아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코리아 드림’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이와 같이, 국내의 수요와 국외의 공급이 일치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성적 교환을 통한 거래로 상품화되면서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통일교와 결혼중개업체 그리고 최근에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국제결혼 초창기에는 통일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⁷⁾ 즉, 통일교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농촌총각과 대체로 학력수준도 높

들은 유흥산업이나 성산업 등으로 유입되어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17) 통일교는 아담이 실패한 이상적인 참가정을 만들고 세계평화를 가져온다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걸고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다(윤형숙, 2004b). 즉, 통일교는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개개인 하나 보다는 천일 국 주인으로서 가정을 설정하고 있다. 그만큼 결혼을 통한 가정일구기는 통일교의 핵심사업이다.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일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통일교를 통해, 필리핀, 일본, 남미 여성들이 결혼하여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이금연, 2003a).

고 사회적 배경도 좋은 일본여성간의 국제결혼을 추진해 왔다.¹⁸⁾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인남성과 일본인여성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그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¹⁹⁾

그 와중에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남성과 중국의 조선족여성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조선족 여성은 비록 중국에 살지만 민족적, 문화적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혼인이 농촌총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좋은 대안으로 환영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여성간의 문화적 갈등, 결혼에 대한 기대의 차이, 이주를 위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위장결혼·사기결혼 등이 문제가 되고, 한국남성과 결혼할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등에서의 여성들과 한국남성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중국조선족과의 결혼을 대체하였다. 이들이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한국말을 모르고 신체적인 특성 상 티가 나기 때문이다. 통일교는 이들 간의 국제결혼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교는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인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주선하였다.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할 수 없는 한국남성들과 결혼을 통해서라도 잘 사는 나라로 이주하고자 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고 이러한 욕구를 통일교가 매개한 것이다. 통일교는 잘 사는 나라에 이주하고자 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욕구에 ‘죄악된 습관이 없는(no vices)’ 한국의 이상적 남자와 ‘참가정’을 만든다는 꿈과 욕망을 부여하고, 한국 농촌총각들에게는 국내에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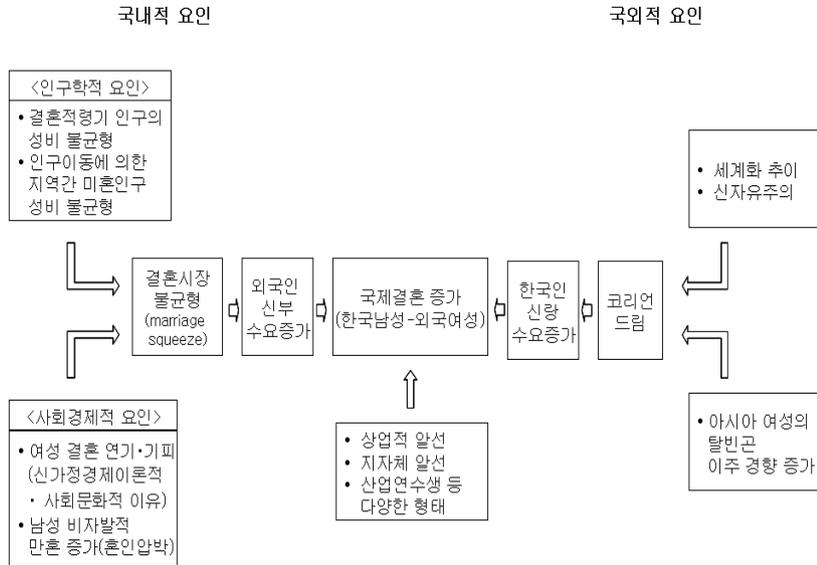
18) 일본인여성들은 동남아나 러시아, 중국, 몽골 등에서 온 여성들과 달리 결혼을 해도 국적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19) 한국사회에서는 통일교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일본여성들과의 결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당시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일본여성들이 교육수준이 낮고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한국인남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일본여성들이 ‘행실이 좋지 않거나 화류계 여성’일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한편,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일본인여성들 중에 한국인남편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실망하여 항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일본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한국인남성들과의 결혼을 꺼리게 되었다(윤형숙, 2004a).

날 수 없는 순수하고 가정적이며, 순종적인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통일교를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종교와 상관없이, 결혼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 때문에 ‘장사속’이며,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부자나라의 남자와 결혼해서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중요한 배경과 동기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은 부부간의 동등성과 ‘낭만적’ 사랑이다. ‘이상적인 참가정’을 만들겠다는 종교적인 이유도 이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로 제시된다.

이상 최근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발생 구조는 [그림 3-5]와 같이 종합 정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한국 고유의 현상이기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의한 세계적인 현상의 일부로서 간주해볼 수 있다.

[그림 3-5] 국제결혼 수급의 메커니즘(mechanism)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선행연구 고찰의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유독 인권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국제결혼의 매개적인 특성이 지나치게 매매혼으로 상업화되고 인권 착취적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²⁰⁾ 그러한 매개체로서 결혼정보 회사의 부도덕성과 일부 종교단체의 선교행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생활에서 문화나 생활습관의 차이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여, 특히 농촌남성을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체계에 어긋날 때에 폭력과 인권유린 등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윤형숙(2004a)과 이선주·김영혜·최정숙(2005) 등 대부분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국제결혼은 성혼과정과 결혼 후 부부생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로 각종 문제점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구조적인 특수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남녀간 자연스러운 만남 등을 통한 사랑을 매개로 한 결혼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적간 결합에 있어서도 신랑과 신부 모두 외국인, 신랑 내국인-신부 외국인, 신랑 외국인-신부 내국인 등 다양한 형태가 고르게 분포한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사랑이 아닌 상업적인 중개를 통한 매매혼적인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어 있고, 중개 대상으로 외국인 신부를 한국인 신랑에게 공급하는 패턴이 획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여성의 빈곤화 및 여성의 이주화,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국제결혼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배우자와 그들로부터 태어난 후세대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정책 등을 통해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면, 이에 대

20) 한국염(2005)에 의하면, 여성노동자보다는 국제결혼이, 국제결혼보다는 성산업 서비스 여성의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

한 장기적인 계획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유일한 방안은 사회적 통합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국제결혼을 지나치게 부정시하고 특히, 외국여성들을 ‘국제결혼의 덫’에 걸린 희생자로 이미지화하고 고착시키는 문제는 지적되어야 한다(윤형숙, 2004b).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의 ‘상업화된’ 국제결혼이 ‘비상업적인’ ‘국내결혼’에 대비되고 구별되어 중국에는 이들을 타자화하는 전략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진 외국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서의 정착과 성공에 상당한 인생의 의미를 두고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인권유린 및 폭력의 피해자 등으로 범주화하여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사회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즉, 외국인 배우자와 친정식구, 한국남성과 시댁식구, 지역사회 일반시민 모두에게 사랑과 포용의 태도를 가지고 상호적응하고 조정할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의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의 인구학적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들 가정 및 외국인배우자들을 엄연하게 현재 및 미래 한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기초적인 인구학적 행태와 생활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4장 국제결혼 관련 제도 및 정책

제 1절 국제결혼 관련 제도

1. 국적법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출생, 인지, 귀화 및 수반취득으로 구분된다.²¹⁾ 이 중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2조)은 생득적인 것으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 전 부가 사망한 때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모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제3조)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의 요건으로는 신청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귀화허가는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로 구분된다. 국제결혼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한다. 물론, 국제결혼 외국여성이 이미 출생한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수반취득에 의해

21) 이외에도 국적법 제9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방법으로 국적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부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 등 다른 방법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국적회복은 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에 해당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귀화의 요건으로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국적법 제5조).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제5조1호)”가 있어야 하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특정한 요건 하에서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등의 경우에 간이귀화를 할 수 있다(제6조 2항).

둘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6조 2항).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 앞의 혼인 및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앞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앞의 혼인 및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앞의 혼인 및 체류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표 4-1〉 국적법상 간이귀화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첨부서류	비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법 제7조 특별귀화 요건)는 제외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의 간이귀화 요건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법 제6조제1항제1)에 한하여 적용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법 제6조제1항제2호)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호적등본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법제6조제1항제3호)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위 1~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1~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법제6조제2항제3호)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위 1~2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1~2호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법 제6조제2항제4호)

특별귀화의 요건으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해당된다(국적법 제7조). 이외 수반취득으로서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국적법 제4조 2항).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여부를 증빙서류 제출, 거주지 실사 등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귀화 적격 여부는 초등학교 3~4학년수준의 읽기와 한국에 관한 기본상식을 묻는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아야 한다.²²⁾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국내 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귀화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간이귀화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는 <표 4-1>과 같다.

간이귀화 허가 등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0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 상실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취득한 권리 중 양도가능한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법 제18조).

2.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²³⁾이 대한민국

22)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인, 미성년자, 60세 이상, 특별귀화, 기타 특별 사유 등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

2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의 상한이 부여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8조의2). 이 중 국제결혼과 관련된 체류자격으로는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등을 들 수 있다.

거주(F-2)자격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 적용된다. 방문동거(F-1)자격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에 부여된다. 2002년 4월부터 방문동거비자(F-1)가 아닌, 거주비자(F-2)를 결혼비자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여성들이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상 불안으로 인하여 남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가출이나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된다.²⁴⁾

〈표 4-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구분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구분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영주(F-5)자격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

24) 단기종합비자인 C-3으로 들어와 한국남성과 가정을 꾸리고 임신·출산하였으나, 남편의 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으며,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일하다 내국인과 자연스럽게 만나 결혼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지위를 갖게 되는 여성들도 있다(이금연, 2003a).

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홍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부여된다. 또한,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부여된다.

한편,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로 거주(F-2)자격의 계속적인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2002.9.1)』에 의하여 거주(F-2)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해주고 있다(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2002). 그 배경으로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체류허가를 불허하고 출국조치 할 경우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회적인 비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기타 인도적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할 경우 체류허가 및 생계유지 차원의 취업활동을 허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 후 결혼동거 기간 중 국민의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내 체류를 희망 하는 자와 구체적으로 국민의 귀책사유(폭력, 가정불화 등)로 이혼·별거하여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배우자에 대해 계속 체류를 허가해주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허가 내용을 달리한다.

〈표 4-3〉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 허가 유형

요건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제출서류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국내 혼인신고 후 입국 후 결혼 동거기간 중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배우자로서 국내 체류 희망자	거주(F-2)자격으로 체류 허가 ◦ 국내 혼인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1회 1년의 범위 내 ◦ 2년 이상인 경우 1회 3년 범위 내	신원보증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입증서류, 국내체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유서, 기타 일반체류허가 신청서류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1)	상동	신원보증서, 이혼입증서류(이혼판결문, 호적등본, 합의이혼서 등),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기타 국내체류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 이혼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1) ◦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 한 경우	방문동거(F-1)로 변경, 체류허가 ◦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1회 1년 범위 내 ◦ 2년 이상일 때 1회 2년 범위 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 ◦ 2년 범위 내 사유소멸시까지 3개월씩 체류 허가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중인 경우 ◦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허가 ◦ 국내 혼인동거기간 2년 미만 경우 1회 1년의 범위 내 ◦ 2년 이상일 경우 1회 3년 범위 내	신원보증서, 별거사유 입증 소명자료, 자녀 및 가족 부양 확인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1) ◦ 이혼소송 준비와 기타 가사정리를 위해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허가 ◦ 국내 결혼동거기간 2년 미만시 1회 1년 범위 내 ◦ 2년 이상인 경우 1회 2년 범위 내 거주(F-2)자격으로 체류허가 ◦ 매회 3개월씩 체류허가, 조속한 기간 내 별거상태 해소 중용	

주: 1) 한국인배우자와의 출생자녀를 국내에서 양육 또는 한국인부모·가족 부양시
2) 신원보증서(혼인동거기간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보증인을 국민의 배우자에서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 등으로 변경에 한정).

자료: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2. 10. 14(의원회관 소회의실).

이외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를 허가한다.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에도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와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달리하여 체류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혼소송 준비와 기타 가사정리를 위해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체류를 허가하되 조속한 기간 내에 별거상태를 해소하도록 중용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표 4-4 참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E-10), 방문취업(H-2)이 해당된다. 또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이들 취업활동 체류자가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인 고용자에 대해서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외동포(F-4)라도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²⁵⁾에는 금지된다.

25)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표 4-4〉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1회별)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교(A-1)	재입기간	19.교수(E-1)	2년
2. 공무원(A-2)	공무수행기간	20.회화지도(E-2)	1년
3.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21.연구(E-3)	2년
4. 사증면제(B-1)	협정상의 체류기간	22.기술지도(E-4)	2년
5.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3.전문직업(E-5)	2년
6. 일시취재(C-1)		24.예술홍행(E-6)	1년
7. 단기상용(C-2)		25.특정활동(E-7)	2년
8. 단기종합(C-3)	90일	25의2.연수취업(E-8)	2년
9. 단기취업(C-4)		25의3.비전문취업(E-9)	1년
10. 문화예술(D-1)	2년	25의4.내향선원(E-10)	1년
11. 유학(D-2)	2년	26.방문동거(F-1)	2년
12. 산업연수(D-3)	영24조의2제1항1~3호 경우 2년, 4호경우 1년	27.거주(F-2)	3년
13. 일반연수(D-4)	2년	28.동반(F-3)	동반자에 정해진 기간
14. 취재(D-5)	2년	28의2.재외동포(F-4)	2년
15. 종교(D-6)	2년	28의3.영주(F-5)	상한 없음
16. 주재(D-7)	2년	29.기타(G-1)	1년
17. 기업투자(D-8)	5년	30.관광취업(H-1)	협정상의 체류기간
18. 무역경영(D-9)	2년	31.방문취업(H-2)	3년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007. 3. 5.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첫째,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돈벌이를 위한 국내 입국을 위하여 국민과의 혼인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노약자나 불치병 환자 등과 혼인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악용의 우려 때문에 정부는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배우자에게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의 외국인 아내에게 결혼과 동시에 주던 국적취득의 기회를 현행법과 같이 결혼 후 한국 내에 2년 이상 거주할 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였다(임종훈, 2003). 외국

인 배우자에 대하여 F-2(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면서 귀화 허가 시까지 매년 호적등본을 소지하거나 국민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토록 하였다.²⁶⁾

그러나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은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²⁷⁾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도 국적신청을 안 해주며, 이혼을 한다할 때 양육권과 면접권을 얻어내는 것은 아주 어렵다. 정부는 외국인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G1비자를 도입하였다(한국염, 2005). 즉, 2004년 1월 20일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중 한국인 남편이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 간이귀화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한국인 남편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로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자가 귀화신청을 원할 경우 재판이혼 등의 법원 판결 혹은 결정문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 극심한 폭력 등의 사례를 제외하면 남편의 귀책사유(경제적 위기,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등)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유경선, 2003; 임중훈, 2003; 한국염, 2005). 한편,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자는 입장도 존재한다(임중훈, 2003). 또한, 현행 2년간의 규제기간도 인권침해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조항의 삭제가 시급히 요구된다.

26) 다만,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민인 배우자의 친척의 요청이나 소송 진행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F-2(거주)의 자격을 그대로 두거나 F-1(방문동거), G-1(기타)로 체류자격(6월 또는 1년)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었다(임중훈, 2003).

27) 이주여성들은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 문제를 이용하여 이주여성을 억압하는 사례도 있다(한국염, 2005).

둘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단 시간 내에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입국 후 2년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다. 국적법에서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본국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주여성들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기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서 귀화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외국인 남성의 경우도 한국국적을 할 수 없이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적을 원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 배우자 F2-1 비자 소지자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부여한 5년 이후가 아닌,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획득하고 한국내의 모든 관련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유경선, 2003).²⁸⁾

셋째,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 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한국염, 2005). 한국정부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이들 여성들이 한국 내 모든 복지 관련법에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자복지법 제4조 1항에 해당되는 여성은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계비, 이동교육 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의 복지급여와 모자복지 시설 등의 입소도 공식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아내에 대한

28)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만가족이 생계를 유지 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 (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다.

신원보증을 남편이 해야 하고, 그리고 아내가 가출시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상 미등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되어, 출입국관리법과 모자복지법등 복지 관련 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유경선, 2003).

넷째, 이주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미등록자의 경우, 이들은 한국국적자인 아이를 미등록자인 외국인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자에 대한 전면사면과 영주권 부여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특히 제3세계국가 여성들의 경우는 한국국적을 취득을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을 경우 한국 내에서 체류하며 이들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주 여성들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무관하게 일정기간 동안 별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들 여성들이 겪고 있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특히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의 경우는 남편들이 자신들의 신원보증을 해지 할 것을 염려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유경선, 2003).

다섯째, 결혼 정보회사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형성과정에서 허위정보가 매개되어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결혼시장의 인위적인 왜곡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이혼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2년 체류기간을 만료하면 귀화시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일곱째,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쫓기는 국제결혼 신부들이 늘고 있다. 이혼하려고 할 경우 이것은 가정폭력 범주에 들지 않아 헤어질 수도 없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 2절 중앙정부의 국제결혼가족 지원정책

현재 정부는 유관부처별로 국제결혼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법무부 등 5개 부처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중앙정부 지원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홍보·교육, 제도개선, 직접서비스, 인적네트워킹, 인프라 및 프로그램 영역이다.

1. 홍보·교육

각 부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홍보 및 교육 분야에 해당한다. 정부 각 부는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인식 개선이 주요한 정책과제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로 홍보 책자 발간 및 배포이다.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재, 모성보호가이드 책자,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책자, 국제결혼 가족의 경험과 피해사례 등을 담은 동영상, 국제결혼여성의 체험기 등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이주여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4-5〉 주요 관계부처의 국제결혼가족 지원정책(2005~2007)

구분	홍보, 교육	제도개선	직접서비스	인적 네트워킹	인프라/프로그램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재 발간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4개언어<1366>홍보책자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가족교육, 자녀지원, 출산 전후도우미지원 무료법률구조출장방문상담 e-배움터 온라인 교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가족 맺어주기 멘토(친정어머니)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여성 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여성 1366센터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한국생활도우미 발간 체험기 및 피해사례 홍보영상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반영 사회복지시설 중 사자교육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중개업법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에대한 특례조항신설 긴급지원대상자에 외국인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무료진료 여성결혼이민자 방문보건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교육인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안내 교사역량강화 다문화반영하는 교과서 개발 교과서내용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자녀 전담 교사 배정 선배또래친구 1:1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정 운영(1개소)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착기(나는 이렇게 살았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용 한국어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교육도우미 출산농가도우미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귀화증서 수여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 면접심사강화 사회통합교육과 국적취득연계방안 도입 			

그러나 이런 책자들은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한국어 교재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도 발간하였다. 그리고 기타 안내 책자도 내용면에서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은 대체로 책자를 발간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더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종합적인 홍보·교육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의 홍보·교육 사업은 해당 업무의 내용을 잘 특화시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생활 안내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더욱이 교과서에 문화적 다양성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정규 수업 중에도 홍보·교육 분야 정책 목적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 제도적 측면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모성보호 가이드북 역시 전문성을 확보한 홍보·교육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2. 제도개선

제도개선 분야에는 아직 활발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부분은 큰 의미가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2005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급여시 결혼이민자의 소득·재산은 이전소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대상에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였다. 2007년 12월에 통과하여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결혼중개업법도 제도개선 영역의 좋은 시도라 할 수 있다. 법무부의 경우는 귀화필기시험제도 부활을 계획하고 있으며, 면접심사는 더욱 강화한 바 있다.²⁹⁾

그러나 아직 사회 각 영역에서 국제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가 되는 제도가 산재해 있다. 향후 장애가 되는 제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와 각 부처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9)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면접심사 강화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하고 있다.

3. 직접 서비스

국제결혼 가정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역시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녀지원, 출산 전후 도우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e-배움터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 전남, 경북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07년 이 지역의 4,500여명 결혼이민자들이 수강하였고, 이 중 한국어 4단계 및 한국문화 전과정을 이수해 학교에서 수료증을 받은 이민자는 720여명에 이른다. 2008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무료진료, 여성결혼이민자 방문보건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농림부 역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과 출산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큰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종 도우미 파견 사업은 해당 부 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우미의 지원 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도우미와 농림부, 보건복지의 도우미는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4. 인적 네트워킹

국제결혼 여성의 정착에서 지적되는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주 여성들은 언어구사 능력이 떨

어지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이주 초기에 인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이런 경향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비슷한 연령층 여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 여성의 대인관계는 가족 내로 폐쇄되어 있으며, 동년배를 통한 사회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주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가정과 한국인 가정의 후원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 여성에게 일명 친정어머니에 해당하는 멘토를 연계시켜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교사를 배정하고 있으며, 학내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1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적관계 지원이 또 하나의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을 그들을 특수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수집단(minority group)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그것이 그들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배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각 정부 부처는 지원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결혼이민의 역사가 10여년을 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과 관련한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이다. 2007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 38개소가 설치되었다. 이 센터는 한국어교육, 부부·가족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보호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요리와 취미,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여성 쉼터, 여성긴급전화의 일환인 결혼이민여성 1366센터도 운영 중이다.

인프라 확충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전국 38개소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자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정확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시설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 위탁의 형평성과 동시에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중앙정부 정책 현황의 시사점

현재 국제결혼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유관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부처가 각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많은 경우 형식과 내용면에서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 이는 정부의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다. 형식이 중복되면 형식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면에서 중복적이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복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홍보·교육 영역은 각 부처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더욱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홍보·교육은 향후 더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책자 발간

배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매체는 지면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 인터넷 콘텐츠,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등 모든 것이 이용 가능하다. 향후 이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서비스 영역에서도 이러한 중복성의 문제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제도 개선 영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내면적 장애요인을 발굴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타문화에 대하여 배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발굴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국제결혼 여성 스스로 이런 잠재적 장애요인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잠재되어있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발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책 내용을 검토했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책 대상이 매우 특정화되어있고, 개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 측면에서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별화된 지원정책은 국제결혼 가정을 사회적으로 더욱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적 편견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정책적 방향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요인을 제거하여 향후에는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사업 실태

2007년 5월 현재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3개 광역시도(경남, 경북, 제주)와 60개 기초자치단체로 전국 지자체의 24.7%에 이른다(여성가족부, 2007: 최순영,

2007에서 재인용).³⁰⁾ 이들 기초지자체들은 충북·남, 전북·남, 경북·남으로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³¹⁾ 시도별로는 경남 95.0%, 경북 82.6%로 해당 시도의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에도 6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충북(25.0%), 충남(31.3%) 및 전남(22.7%)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4-6〉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시도	사업시행 기초지자체(A)	전체 기초지자체(B)	비율(A/B)
충북	영동, 괴산, 단양(3)	12	25.0%
충남	보령, 금산, 연기, 부여, 청양(5)	16	31.3%
전북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9)	14	64.3%
전남	강진, 해남, 장성, 진도, 신안(5)	22	22.7%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봉화, 울진(19)	23	82.6%
경남	창원, 마산,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김해, 밀양, 양산, 고성,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19)	20	95.0%
전국 계	60	246	24.7%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최순영 보도자료(2007. 6. 7)에서 재인용.

일부 기초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조사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1장 연구방법을 참조하도록 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의

30) 2007년 전국적으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예산은 28억4천8백50만원이다(최순영 보도자료, 2007. 6. 7).

31) 최순영(보도자료 2007. 6. 7)은 현재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에 대해, 1)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지원·조장함으로써 한국 농어촌 남성들을 상대국의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점, 2) 지자체가 국제결혼 성사비용을 증액시켜 사실상 중개업체의 이윤을 보존해 주고 있다는 점, 3) 결혼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점, 4)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 지원 예산 보다 훨씬 많은 결혼비용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대신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우³²⁾, 2005년에 시작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2006년 말에 중단되었다. 그 이유로는 전라북도(도청)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보다 언어문제가 더 심각함을 인식하여 국제결혼지원사업을 해외이주여성교육도우미(가정방문)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 책임성으로 인하여 고창군에서도 중단하였다. 2007년에 들어 전라북도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고창군 담당자에 따르면, 국제결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 있어서 국제결혼부부간의 대화소통 곤란, 폭력 및 인권 침해, 이혼 또는 도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땅한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에서 국제결혼사업을 직접 운영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문제 발생시 여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고창군은 국제결혼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³³⁾ 대신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였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3단계의 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회원위주로 국제결혼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국제결혼 비용(1,250만원)의 40%인 500만원(도비+군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³⁴⁾ 그 과정으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고 선발하여 고창군에서 위탁한 보조금(500만원)을 국제결혼완료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모든 업무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처리하며, 국제결혼은 농촌총각들이 직접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제결혼지원 위탁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2008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32) 농업진흥과 농정기획담당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조례 없이 국제결혼사업일 실시할 경우 추후 선거출마예정자의 선심 공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34) 군의원, 주민들은 결혼 못한 농촌총각이 있으니 국제결혼지원사업을 2005년과 같이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해남군에 거주하는 50세 미만 농촌총각들을 대상으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액 군비만으로 지원 신청한 농촌총각 56명에게 1인당 5백만원씩 총 2억8천만원을 위탁기관을 통해 지원하였다. 이들 농촌총각은 베트남 현지를 방문토록 하여 맞선, 처가방문, 신혼여행 과정 등을 거쳐 성혼시켰으며, 현대 2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당초 2007년에도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30명/15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여, 현재 중단 중이었다.³⁵⁾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사회여성과 가족문화팀 하에 농촌총각결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에서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로는 농촌남성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³⁶⁾ 상담소에서는 2006년에 개소된 이래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제결혼 관련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하길 원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 있다. 담당직원이 2006년에 중국에서 가서 3쌍을 결혼시켰으며, 2007년에는 베트남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다. 예산은 3,500만원을 책정하여 결혼성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제결혼 관련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선, 결혼결정 등에 총 4~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폭력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 한국인남성들에게서 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상담, 한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35) 사업 중단 이유로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결혼 알선의 불법성, 베트남 여성 인권 침해, 남성이 경제력도 없고 나이가 너무 많음, 국적 미정, 관청에서의 중개업체 선정, 해당 중개업체에서 베트남 여성의 몸매기준으로만 선정 등이다.

36) 정읍시 담당직원에 따르면, 민간결혼중개업체들은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냐, 돈 안주냐 등으로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중개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조속히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공무원이 주선하는 것으로, 이들의 현지 출장과 관련한 실질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조가 필요하다.

해남군 국제결혼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해남군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농어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통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자
- 지원시기 : 농어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초혼자: 5000천원
 - 35~45세 재혼자 4,000천원, 46세 이상 재혼자 : 3,000천원
- 심사기준: 제1순위 초혼자, 제2순위 35~45세 재혼자, 제3순위 46세 이상 재혼자
- 지원금 지급절차
 - 지원사업 신청서 거주지 읍면장 제출
 - 읍면장 신청서 검토 후 군수에게 추천
 - 군수는 검토 후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선정 후 사업 대상자에게 통지
 -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청구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사업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를 검토 후 신청자의 지정계좌에 송금

경상남도 김해시³⁷⁾의 경우, 여성들이 농촌거주를 기피함에 따라 농촌총각들이 결혼할 수 없는 문제가 사지역사회의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03~2004년 국제결혼현황조사 결과 40세 이상을 포함하여 400여명의 농촌총각들이 존재하여 지역사회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당시 마땅한 사업기관을 찾지 못한데다가 사업의 특수성이 미흡하여, 김해시에서는 결혼관련 사업을 시기상조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농촌총각현황을 파악한 결과 농촌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장 지시로 결혼주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할 조직을 찾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등과 상담하고 타 지역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제결혼 후 외국인신부들이 도망가는 문제점들

37)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을 인식하고 김해시에서는 직접 결혼업체를 주선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경상남도 특수사업의 성격으로 국제결혼가정의 부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상남도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김해시에서도 시 특수사업으로 국제결혼사업을 적극 도입하였다.³⁸⁾ 김해시에서는 이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여성단체에 사업대상자의 신상 조사 및 적격성 여부를 의뢰하고 있다. 김해시 관내 결혼업체 10곳 중에서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³⁹⁾ 2006년에는 위탁금 1,050만원을 계약하여 농촌총각 1인당 150만원씩 부담금 지원을 해주었다. 2007년에는 국제결혼 후 외국인여성의 도망 등을 고려하여 혼인신고 1개월 후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에서는 국제결혼 후 6개월간 가정 방문(출산 후 병원방문 2회, 가정방문 매 2개월마다 총 3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후관리의 노력을 하고 있다.⁴⁰⁾ 시에서는 민간업체와 사후관리 2년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담당공무원은 민간업체 통역사와 함께 국제결혼가정을 방문하여, 남편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면담하고, 부인은 통역사를 통해서 면담한다. 문제 발견시, 위탁업체에게 알려줘, 남편의 태도 등 변화를 유도한다(공무원이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했을 경우 부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우려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방문교육 및 집합교육), 한국 전통예절 등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8) 2006년에는 총 6명(도 2명, 시 자체 4명)의 사업비로 36,000천원 그리고 2007년에는 3명의 사업비로 15,000천원을 책정하였다. 경상남도에서는 지원금만 제공해 줄 뿐, 사업 방식 등 모든 것은 사업 추진 시·군에서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9) 관내의 업체들이 타 업체에 위탁을 안주나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등 민원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

40)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민간결혼중개업체에게 계약 체결 시 외국인여성이 입국 6개월 후 정착이 되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였다. 실제, 2006년 한 부부가 결혼 후 6개월 이전에 이혼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책임을 지기위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재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다.

국제결혼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최근의 경향으로 매스컴 등에서 국제결혼여성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국제결혼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시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민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위탁받기를 희망하면서 보다 비싼 국제결혼비용을 요구하거나, 탈락시 이견을 제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조례제정은 없으며, 2006년에 결혼이민자 관련 조례를 상정한 바 있다. 담당공무원은 예산 제약으로 한계성이 있으나, 적어도 관리차원에서 시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상남도 창원시⁴¹⁾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06년에 3명, 2007년에 4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 과정으로는 개인 신청, 실사(농지소유, 거주여부, 호적등본, 농기구 원본, 인후보증 등), 제공을 거친다. 현실적으로 읍·면·동을 통해 국제결혼 대상을 파악하나 실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1~2명으로 아주 적으며, 그 이유는 능력, 경제적 문제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은 결혼중개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여성을 초청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총각이 설명회를 듣고 대상자를 선택하게 된다. 지원금은 1인 당 500만원(150만원 지원, 나머지 350만원 시비)으로, 결혼 후 외국인등록증(번호)을 소지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 사후적으로 상·하반기 순회하면서 국제결혼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이민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41) 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팀

제 5장 국제결혼 수준과 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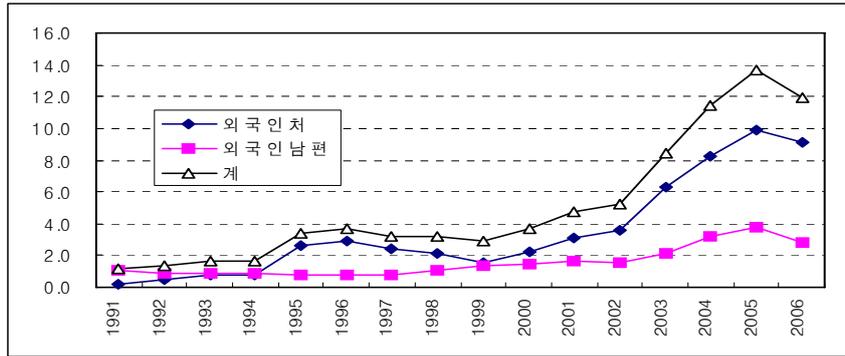
제 1절 국제결혼 수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의 초기형태는 주로 1960~1970년대에 한국인여성들이 외국인남성들과 결혼하여 선진국에 정착하는 것이었다.⁴²⁾ 이러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간 약 4천건에 2005년에 1만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약 9천건으로 여전히 활발하였다.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은 1993년 3천여 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결혼건수의 1%미만으로 한국인여성+외국인남성간의 결혼건수보다도 적다. 그러나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은 1995년에 1만건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2년까지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며 5천건~1만건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 연 2만건 수준으로 그리고 2005~2006년에는 연 3만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규모의 증가에 따라 전체 혼인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의 비율은 1990년대 초 1% 미만에서 2005년에는 9.9%로 높아졌으며, 2006년에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9.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인여성과 외국인남성간의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대 초 1% 내외에서 2005년 3.8%까지 높아졌으며, 2006년에는 다소 감소한 2.8%로 나타났다.

42) 1990년대 이전 국제결혼은 가난한 여성들이 미국, 일본 등으로 결혼이주를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설동훈·윤홍식, 2005). 이들은 주로로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미군기지촌 여성과 미군과의 결혼도 포함된다(이금연, 2003a).

[그림 5-1]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건수 비율



<표 5-1> 국제결혼 변동 추이, 1991~2006

(단위: 명, %)

구분	전체 결혼건수 ¹⁾	국제결혼건수			국제결혼비율		
		한국남성+ 외국여성	한국여성+ 외국남성	소계 (C+D)	한국남성 +외국여성	한국여성 +외국남성	소계 (F+G)
A	B	C	D	E	F	G	H
1991	416,872	663	4,349	5,012	0.2	1.0	1.2
1992	419,774	2,057	3,477	5,534	0.5	0.8	1.3
1993	402,593	3,109	3,436	6,545	0.8	0.9	1.6
1994	393,121	3,072	3,544	6,616	0.8	0.9	1.7
1995	398,484	10,365	3,129	13,494	2.6	0.8	3.4
1996	434,911	12,647	3,299	15,946	2.9	0.8	3.7
1997	388,591	9,266	3,182	12,448	2.4	0.8	3.2
1998	375,616	8,054	4,134	12,188	2.1	1.1	3.2
1999	362,673	5,775	4,795	10,570	1.6	1.3	2.9
2000	334,030	7,304	5,015	12,319	2.2	1.5	3.7
2001	320,063	10,006	5,228	15,234	3.1	1.6	4.8
2002	306,573	11,017	4,896	15,913	3.6	1.6	5.2
2003	304,932	19,214	6,444	25,658	6.3	2.1	8.4
2004	310,944	25,594	9,853	35,447	8.2	3.2	11.4
2005	316,375	31,180	11,941	43,121	9.9	3.8	13.6
2006	332,752	30,208	9,482	39,690	9.1	2.8	11.9

주: 전체 결혼건수는 국내결혼과 국제결혼 모든 건수 포함.

자료: 통계청, KOSIS.

제 2 절 국제결혼 행태

1. 국제결혼 성립과정

국제결혼은 1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국제결혼의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은 거시적 차원의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분석은 국제결혼 성립 메커니즘을 구조적 차원에서 설명해주지만, 개인의 행위 동기나 집단 내 하위분류에 따른 특성을 밝히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차원의 국제결혼 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결혼 성립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 차원의 국제결혼 성립과정은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제결혼 선택의 개인적 동기, 배우자 선택과정, 결혼과정의 개입주체 등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결혼 성립과정의 미시적 차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수요자 측면보다도 공급자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자 측면은 구조적 제약요건에 의해서 국제결혼 성립과정이 거의 설명되지만, 공급자 측면은 자료의 한계와 대상에 대한 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혼 성립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가? 현재 국내 이주여성의 국적을 보면 주로 중국과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 여성들이다. 이들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조건에서 생활하기 위해 결혼을 통한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또 다른 특수한 동기는 종교적 선택이다. 주로 일본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여성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제결혼의 일반적 유형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제 힘으로는 우리 집에 딸 하나 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편도 아니니까. 제가 제 힘으로 부모님 노후를 책임질 힘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시집오면 우리 부모님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에서 노후생활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결혼 했어요... 제가 느낀 건 다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친대도 많이 받고 중국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돈도 못 받고 그런 것도 많고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선택했죠.(사례 3, 중국 조선족 여성)

중국 동포 여성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부모도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동기는 단지 중국 동포 여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여성에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할 때 한국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 이미지가 작동하기도 한다. 이 이미지 역시 경제적 풍요로움과 연관되는 것으로 일종의 코리안드림(Korean Dream)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잘사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에 가면 경제적으로 만족스런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전에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죠. 그냥 잘 사는 나라, 월급 많이 나오는 나라. 그리고 ... 저기 뭐라 그래요? 우즈베키스탄보다 조금 더 똑똑한 나라...한국 남자 결혼하면 한국 나라를 꿈이 큰 나라로 받아 들여요, 잘 사는 나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남자랑 결혼해야 잘 살 수 있다고...(사례 9, 우즈베키스탄 여성)

국제결혼을 선택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은 본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빈궁한 본국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가지고 한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은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에 의한 구조적 결정요인과 함

계, 개별적 욕구 충족 메커니즘에 의해서 성사되는 것이다.

국제결혼 성립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를 만나는 통로이다. 여성가족부 2006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제결혼 가정 중 45.7%는 가족·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본인 스스로 20.0%, 결혼 중개업체 17.7%, 종교기관 14.3% 순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6: 48~56).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의 소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해온 여성을 통해 직·간접적 소개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증가 초기에는 주로 중개업체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2006년 시점에 가족·친구 등의 소개라고 답한 경우도 실제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 과정에서 자주 드러났다. 면접 초기에는 친구소개로 만났다고 대답하였으나, 면접 진행 중에 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을 밝힌다.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신랑은 포크레인 기사데, 신랑 친구의 와이프가 중국여자들 한국남자한테 소개시키는 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도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소개비를 한 700~800만원 준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싸게 해주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은 거 같아. 별로 중국에서 준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와 싸웠어요. 소개자가 너무 많이 남겨 먹은 거 같애 가지고. (그런 사실을 알고 결혼했나요?) 모르고 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신랑도 처음에는 말 안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서 그런 거 결혼했다고 말하지. 돈을 얼마나 주고 그런 말은 절대로 안했는데, 살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말해주네요.(사례 3, 중국 조선족 여성)

한편 배우자를 만난 방법이 거주지역, 출신국에 따라 유형적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여성가족부 조사자료에 이 같은 경향이 잘 드러나는데(설동훈 외, 2006: 48~56), 도시 거주 가구는 가족·친구 소

개,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농촌 거주 가구는 결혼 중개업체, 종교기관을 통해 만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농촌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원할 경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중개업체나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국제결혼 가구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인의 소개 기회에서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은 대체로 남자 측에서 지불하며, 1~2주일 안에 결혼은 결정된다. 주관 업체 측은 최대한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고, 심한 경우 결혼을 결정하도록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업체가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국제결혼 욕구를 가진 남녀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혼인 형태는 남녀 상호관계에 의한 자연스런 행위 결정이라 볼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은 관계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적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성취동기는 남녀 모두에게 명확한 편이며, 결혼중개업체는 바로 이 점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제결혼 성립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통로는 특정 종교단체이다. 이 종교단체는 선교를 목적으로 각국의 남녀를 혼인시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래 종교인으로 국제결혼에 이르는 경우와,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종교인이 되는 경우이다.

춘천에 와서 남편을 만났는데 생일이 똑같아요. 목사님이 얼굴이 비슷하다고... 결혼하라고. 결혼 전 (필리핀에서) 성당 다니다가 통일교 간 것은 결혼하려고... 우리 삼촌이 통일교 믿어서 추천했어요. 우리 삼촌이 태국사람들 매칭하고 그랬어요. 삼촌이 한국사람들 잘 생기고, 안 때리고 그래서 추천했어요.(사례 18, 필리핀 여성)

위의 필리핀 여성은 삼촌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위해 해당 종교인이 된 사례이다. 이 여성은 이전에 천주교 신자였다. 평소 가정형편이 어려워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삼촌의 권유로 해당 종교인이 되었고, 종교단체의 소개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한국인 남성의 경우 단지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특정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두 부부는 모두 결혼을 위해 해당 교회에 나갔고, 결혼 후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둘 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물론 둘 다 종교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경우도 있다. 아래 몽골여성의 경우 결혼 전부터 특정 교회에 나갔고, 한국 남성을 비롯하여 남편 외가 쪽은 모두 동일한 종파의 교회를 다녔다. 이후 교회의 주선으로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는 그냥 교회로 만났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린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냥 하느님이 주신 걸로, 하느님이 주신 신랑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런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활동 많이 열심히 하면서 교회서 있다가 2000년 우리 신랑 만나게 되었어요.(사례 7, 몽골 여성)

특정 종교단체의 국제결혼 사업은 아직까지 그 내부적 과정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가와 배우자 선택과정 등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국제결혼 외국인의 국적

한국인여성이 결혼한 외국인남성의 국적은 일부 예외가 있으나 2002년 이전에는 일본 국적이 50% 이상 60% 미만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02~2003년에는 40%대 그리고 최근에는 30%대까지 낮아졌다. 일본인남편의 비율은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2004~2005년을 제외하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⁴³⁾ 이러한 추이는 절대수가 감소하였다기보다

전체 혼인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여성의 수는 다소 기복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1,000~1,500건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물론, 중국남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인하여, 그 비중은 30%대에서 1995년부터 20%대 그리고 2003년부터 10%대로 낮아졌다. 이외 캐나다(2006년 기준 3.2%), 호주(1.5%), 독일(1.4%), 프랑스(1.0%)의 국적을 가진 남성과의 결혼건수는 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인여성과 선진국 남성과의 결혼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⁴⁴⁾

한편, 중국인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건수는 2002년까지 200건 내외에서 유지되었으나, 그 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5,04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수가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42.2%로 높아졌다. 다만, 2006년에 건수는 2,597건(전체 건수 중 27.4%)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국인남성의 위장결혼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파키스탄남성과의 결혼도 1~2%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결혼으로 볼 수 있다.

43) 이금연(2003a)은 일본인남성과의 결혼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1980년대 이래 일본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와 연관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44) 외국인남성과 결혼은 경제사회적 동기보다 “한국남성의 우월주의, 권위주의와 보수성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이금연, 2003a 재인용). 윤형숙(2004b)은 이들의 결혼이 ‘낭만적 사랑’에 의한 것으로 구애기간, 서로에 대한 매력과 성적 끌림, 이주노동자의 고학력과 친근한 매너 등으로 인해 사랑의 확신이 생기며, 결국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 간에는 여성을 통한 시민권의 획득과 남성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교환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2〉 한국인여성+외국인남성 결혼: 외국인 남편의 국적

(단위: 명, %)

구분	외국인 남편	외국인 남편의 국적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기타
1991	4,349	2,297	156	1,680	-	-	-	-	-	216
1992	3,477	1,747	137	1,335	-	-	-	-	-	258
1993	3,436	1,818	185	1,127	-	-	-	-	-	306
1994	3,544	1,978	141	1,109	-	-	-	-	-	316
1995	3,129	1,751	207	891	-	-	-	-	-	280
1996	3,299	1,789	191	965	-	-	-	-	-	354
1997	3,182	1,670	151	902	-	-	-	-	-	459
1998	4,134	1,818	514	981	-	-	-	-	-	821
1999	4,795	2,649	234	1,190	-	-	-	-	-	722
2000	5,015	2,941	218	1,095	-	-	-	-	-	761
2001	5,228	3,011	222	1,132	97	164	58	79	64	401
2002	4,896	2,377	272	1,210	84	174	80	89	126	484
2003	6,444	2,613	1,199	1,237	93	223	78	108	130	763
2004	9,853	3,378	3,621	1,348	110	230	83	136	103	844
2005	11,941	3,672	5,042	1,413	85	285	76	102	219	1,047
2006	9,482	3,756	2,597	1,455	129	308	98	139	152	848
1991	100.0	52.8	3.6	38.6	-	-	-	-	-	5.0
1992	100.0	50.2	3.9	38.4	-	-	-	-	-	7.4
1993	100.0	52.9	5.4	32.8	-	-	-	-	-	8.9
1994	100.0	55.8	4.0	31.3	-	-	-	-	-	8.9
1995	100.0	56.0	6.6	28.5	-	-	-	-	-	8.9
1996	100.0	54.2	5.8	29.3	-	-	-	-	-	10.7
1997	100.0	52.5	4.7	28.3	-	-	-	-	-	14.4
1998	100.0	44.0	12.4	23.7	-	-	-	-	-	19.9
1999	100.0	55.2	4.9	24.8	-	-	-	-	-	15.1
2000	100.0	58.6	4.3	21.8	-	-	-	-	-	15.2
2001	100.0	57.6	4.2	21.7	1.9	3.1	1.1	1.5	1.2	7.7
2002	100.0	48.5	5.6	24.7	1.7	3.6	1.6	1.8	2.6	9.9
2003	100.0	40.5	18.6	19.2	1.4	3.5	1.2	1.7	2.0	11.8
2004	100.0	34.3	36.8	13.7	1.1	2.3	0.8	1.4	1.0	8.6
2005	100.0	30.8	42.2	11.8	0.7	2.4	0.6	0.9	1.8	8.8
2006	100.0	39.6	27.4	15.3	1.4	3.2	1.0	1.5	1.6	8.9

주: 2001년 이전 독일, 캐나다, 호주, 파키스탄 남성의 결혼은 기타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통일교는 선교의 목적을 앞세워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농촌 총각과 대체로 학력수준도 높고 사회적 배경도 좋은 일본여성간의 국제결혼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 내에서는 통일교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⁴⁵⁾ 일본사회 내에서도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한국인남성의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적 여건에 실망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여 한국인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래 최근까지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일본인여성의 수는 1,000~1,500명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어, 최근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결혼이 활발하지 않았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 중 일본인여성의 비율은 높아 1992년에는 59.5%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조선족과 동남아여성들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본인신부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10% 미만 그리고 2004년부터는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국인남성과 중국의 조선족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중국 국적 여성의 수는 1991년 106명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 9,271명, 2003년 11,373명, 2005년 20,635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들 중국의 여성들은 주로 조선족으로 같은 민족이고 언어 사용이 인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 강한 혈통주의의 경향을 가진 한국인남성들에게 기타 국가의 여성들보다 선호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전체 외국인여성 중 중국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16.0%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81.5%로 증가하였다.

45) 당시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은 일본여성들이 농촌에서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것에 대해 일본여성들이 '행실이 좋지 않거나 화류계 여성'일 것이라는 의식이 존재하였다.

〈표 5-3〉 한국남자+외국여자 결혼: 외국인 처의 국적

(단위: 명, %)

구분	외국인 처	외국인 처의 국적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고	기타
1991	663	224	106	232	-	-	-	-	-	101
1992	2,057	1,223	429	249	-	-	-	-	-	156
1993	3,109	826	1,851	230	-	-	-	-	-	202
1994	3,072	561	2,043	227	-	-	-	-	-	241
1995	10,365	1,412	8,450	188	-	-	-	-	-	315
1996	12,647	2,370	9,271	228	-	-	-	-	-	778
1997	9,266	1,075	7,362	213	-	-	-	-	-	616
1998	8,054	1,004	4,688	1,514	-	-	-	-	-	848
1999	5,775	1,248	2,883	280	-	-	-	-	-	1,364
2000	7,304	1,131	3,586	235	-	-	-	-	-	2,352
2001	10,006	976	7,001	265	510	134	185	157	118	660
2002	11,017	959	7,041	267	850	476	330	241	195	658
2003	19,214	1,242	13,373	323	944	1,403	346	297	318	968
2004	25,594	1,224	18,527	344	964	2,462	326	318	504	925
2005	31,180	1,255	20,635	285	997	5,822	270	236	561	1,119
2006	30,208	1,484	14,608	334	1,157	10,131	273	206	594	1,421
'01~'06	127,219	7,140	81,185	1,818	5,422	20,428	1,730	1,455	2,290	5,751
1991	100.0	33.8	16.0	35.0	-	-	-	-	-	15.2
1992	100.0	59.5	20.9	12.1	-	-	-	-	-	7.6
1993	100.0	26.6	59.5	7.4	-	-	-	-	-	6.5
1994	100.0	18.3	66.5	7.4	-	-	-	-	-	7.8
1995	100.0	13.6	81.5	1.8	-	-	-	-	-	3.0
1996	100.0	18.7	73.3	1.8	-	-	-	-	-	6.2
1997	100.0	11.6	79.5	2.3	-	-	-	-	-	6.6
1998	100.0	12.5	58.2	18.8	-	-	-	-	-	10.5
1999	100.0	21.6	49.9	4.8	-	-	-	-	-	23.6
2000	100.0	15.5	49.1	3.2	-	-	-	-	-	32.2
2001	100.0	9.8	70.0	2.6	5.1	1.3	1.8	1.6	1.2	6.6
2002	100.0	8.7	63.9	2.4	7.7	4.3	3.0	2.2	1.8	6.0
2003	100.0	6.5	69.6	1.7	4.9	7.3	1.8	1.5	1.7	5.0
2004	100.0	4.8	72.4	1.3	3.8	9.6	1.3	1.2	2.0	3.6
2005	100.0	4.0	66.2	0.9	3.2	18.7	0.9	0.8	1.8	3.6
2006	100.0	4.9	48.4	1.1	3.8	33.5	0.9	0.7	2.0	4.7
'01~'06	100.0	5.6	63.8	1.4	4.3	16.1	1.4	1.1	1.8	4.5

주: 2001년 이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여성의 결혼은 기타에 포함.

자료: 통계청, KOSIS.

그 비율은 1998~2000년에 50%대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1~2005년에는 60~70%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신부의 수가 2006년에 14,608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비중도 50%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문화적 갈등, 결혼에 대한 기대의 차이 등으로 한국인남성과 결혼할 중국조선족여성들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주를 위한 중국조선족여성들의 위장·사기결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감시가 철저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여성의 수는 2001년 134명에서 2003년 1,403명, 2006년 10,13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 처 중 비중은 2001년 1.3%에서 2003년부터 급상승하여 2006년 33.5%로 중국여성 다음으로 높다. 2005~2006년 사이에 중국여성의 결혼건수가 약 6천명 감소하였으나, 베트남여성의 결혼건수가 약 5천 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2005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였던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건수가 2006년에 약 1천 건이 감소한데 그쳤다. 이외 필리핀, 몽골 등의 여성들과 한국남성간의 국제결혼도 낮은 수준이나마 점차 증가하였다.

최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국제결혼(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건수는 총 127천건에 이른다. 외국인 여성의 국적별로 분포를 보면, 중국이 63.8%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베트남 16.1%, 일본 5.6%, 필리핀 4.3% 등이다.

3. 국제결혼 이전 한국인 남녀의 혼인상태

2000년대 국제결혼 유형을 살펴보면, 외국인남성과 결혼한 한국인처의 초혼비율은 2001~2002년에 60% 수준이었으나, 2004~2005년에는 45% 내외로 오히려 재혼비율이 더 높았다. 2006년에는 초혼 55.2%, 재혼 42.5%로 다시 초혼비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한국인처의 재혼은 대부분 '이혼 후 재혼'이었으며, '사별 후 재혼'도 한국인남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여성들이 사랑 등을 이유로 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높으나,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로 외국인을 찾는 성향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4〉 한국인남편 및 한국인처의 혼인형태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인남편혼인												
총계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혼	6,676	7,739	11,175	13,667	17,277	19,044	66.7	70.2	58.2	53.4	55.4	63.0
재혼	3,230	3,844	7,781	11,591	13,480	10,702	32.3	34.9	40.5	45.3	43.2	35.4
사별후	341	418	756	1,040	1,244	995	3.4	3.8	3.9	4.1	4.0	3.3
이혼후	2,889	3,426	7,025	10,551	12,236	9,707	28.9	31.1	36.6	41.2	39.2	32.1
미상	100	92	258	336	423	462	1.0	0.8	1.3	1.3	1.4	1.5
한국인처 혼인												
총계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혼	3,142	3,470	3,637	4,553	5,180	5,237	60.1	60.9	56.4	46.2	43.4	55.2
재혼	1,961	1,842	2,674	5,111	6,506	4,030	37.5	37.6	41.5	51.9	54.5	42.5
사별후	145	167	269	610	745	430	2.8	3.4	4.2	6.2	6.2	4.5
이혼후	1,816	1,675	2,405	4,501	5,761	3,600	34.7	34.2	37.3	45.7	48.2	38.0
미상	125	68	133	189	255	215	2.4	1.4	2.1	1.9	2.1	2.3

자료: 통계청, KOSIS.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인남편의 초혼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재혼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남편의 초혼비율은 2001~2002년 70% 내외였으나, 2003~2005년에는 50%대였으며, 2006년에 다소 증가한 63.0%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남편의 재혼비율은 2000년대 초 30%대에서 40%대로 높아졌으나, 2006년에는 다소 감소한 35.4%로 나타났다. 재혼 중에는 ‘이혼 후 재혼’의 비중이 아주 높았다. 흔히 농촌에서 짝을 찾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에서 신부를 찾는 것 못지않게, 국내에서 결혼에 실패한 남성들이 외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인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연령 차이가 큰 경향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⁴⁶⁾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인남성의 초혼건수가 전체 초혼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2.5%에서 2006년에 6.9%로 증가하였다.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인남성의 재혼건수가 국내의 전체 재혼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6.9%에서 2005년 22.6%로 급상승하였으며, 2006년에도 19.2%로 높았다. 한국인남성의 재혼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2003년까지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이다.

〈표 5-5〉 혼인형태별 한국남성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남자초혼	272,098	258,486	253,286	252,472	254,221	275,422
국제결혼남자초혼(%)	2.5	3.0	4.4	5.4	6.8	6.9
총남자재혼	46,943	47,225	50,237	56,671	59,772	55,688
국제결혼남자재혼(%)	6.9	8.1	15.5	20.5	22.6	19.2

자료: 통계청, KOSIS.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외국인 처의 국적이 일본,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고 등인 경우에 한국인남성의 혼인이 초혼인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인 경우에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여성과 재혼을 하는 한국인남성들이 중국교포(조선족)나 러시아교포(고려인) 등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외모 상 차이가 없는 동포를 선호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인남성과 결혼한 한국인여성(처)의 경우에는 남편의 국적이 중국이나 파키스탄인 경우에 대부분 재혼이었으며, 일본인 경우에는 초혼과 재혼이 거의 반반 이었다. 이외의 국가들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초혼인 경향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인남성들과

46)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면 언제든지 아내를 맞출 수 있는 상업적 구조가 국내에서 재혼이 힘든 한국인남성들로 하여금 쉽게 재혼하게 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여성들도 중국출신의 남편하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재혼이 높으며, 이는 언어, 외모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6〉 외국인배우자의 국적별 한국인 남녀의 초혼 비율

(단위: 명, %)

구분	외국인 처의 국적						외국인 남편의 국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67.4	66.8	59.0	54.1	56.2	64.0	61.6	65.3	57.6	47.1	44.3	56.5
일본	87.0	85.4	83.7	87.3	87.2	87.7	47.8	47.4	50.5	49.4	51.1	55.1
중국	61.4	59.2	51.7	46.8	46.8	52.1	77.6	61.4	31.2	21.9	19.1	29.6
미국	72.0	70.2	69.3	66.6	73.4	76.9	77.7	79.8	76.9	77.3	79.4	81.7
필리핀	79.7	80.0	78.1	70.8	70.9	70.1	83.5	82.1	88.0	88.1	88.1	90.7
베트남	73.7	72.6	70.7	72.3	74.2	75.0	88.3	91.9	94.1	90.8	91.2	92.4
태국	83.8	81.5	79.2	75.8	76.2	69.5	86.2	88.8	87.2	86.6	94.6	90.8
러시아	69.4	63.8	67.8	50.5	58.1	55.2	91.1	89.9	88.0	85.9	91.2	92.6
몽고	78.6	72.8	65.3	63.0	64.0	66.9	62.5	54.8	46.1	49.0	39.3	33.3
기타	83.4	79.3	77.6	75.8	74.2	74.8	81.5	82.8	71.8	70.1	70.1	76.6

주: 혼인형태 미상을 제외한 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KOSIS.

4. 국제결혼 가정의 지역별 분포(결혼당시 기준)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은 수도권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전북지역에서는 2005년에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 감소폭은 2005~2006년간 전체 국제결혼건수의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전북지역에서의 국제결혼 감소는 극히 미세하였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국제결혼건수의 감소는 주로 중국여성의 결혼건수가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다. 즉, 서울에서 중국여성의 결혼건수는 2005년 6,177건에서 2006년 4,214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천에서는 2,015건에서 1,572건으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5,434건에서 3,847건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표 5-7〉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간 국제결혼의 시도별 분포

(단위: 명, %)

시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06
계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127,219
서울특별시	2,527	2,649	4,744	6,565	7,637	6,168	30,290
부산광역시	684	747	1,343	1,386	1,408	1,466	7,034
대구광역시	274	285	620	826	1,014	1,070	4,089
인천광역시	550	644	1,163	1,565	2,015	1,572	7,509
광주광역시	165	171	322	545	498	643	2,344
대전광역시	219	228	414	589	779	687	2,916
울산광역시	122	153	274	363	560	620	2,092
경기도	2,269	2,482	4,342	5,967	7,341	6,492	28,893
강원도	274	347	593	611	769	795	3,389
충청북도	275	393	663	809	920	953	4,013
충청남도	409	481	752	1,027	1,378	1,472	5,519
전라북도	442	452	719	1,195	1,385	1,343	5,536
전라남도	396	460	764	1,030	1,327	1,582	5,559
경상북도	388	484	844	1,030	1,489	1,885	6,120
경상남도	472	474	770	1,077	1,636	2,240	6,669
제주도	76	105	202	268	231	277	1,159
국외	464	462	685	741	793	943	4,0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특별시	25.3	24.0	24.7	25.7	24.5	20.4	23.8
부산광역시	6.8	6.8	7.0	5.4	4.5	4.9	5.5
대구광역시	2.7	2.6	3.2	3.2	3.3	3.5	3.2
인천광역시	5.5	5.8	6.1	6.1	6.5	5.2	5.9
광주광역시	1.6	1.6	1.7	2.1	1.6	2.1	1.8
대전광역시	2.2	2.1	2.2	2.3	2.5	2.3	2.3
울산광역시	1.2	1.4	1.4	1.4	1.8	2.1	1.6
경기도	22.7	22.5	22.6	23.3	23.5	21.5	22.7
강원도	2.7	3.1	3.1	2.4	2.5	2.6	2.7
충청북도	2.7	3.6	3.5	3.2	3.0	3.2	3.2
충청남도	4.1	4.4	3.9	4.0	4.4	4.9	4.3
전라북도	4.4	4.1	3.7	4.7	4.4	4.4	4.4
전라남도	4.0	4.2	4.0	4.0	4.3	5.2	4.4
경상북도	3.9	4.4	4.4	4.0	4.8	6.2	4.8
경상남도	4.7	4.3	4.0	4.2	5.2	7.4	5.2
제주도	0.8	1.0	1.1	1.0	0.7	0.9	0.9
국외	4.6	4.2	3.6	2.9	2.5	3.1	3.2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2005~2006년간 수도권에서 국제결혼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반해, 전국적으로 베트남여성의 결혼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국제결혼 감소를 소폭으로 제한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국제결혼건수가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9% 수준에서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과거에 국제결혼 비중이 서울, 경기도 순으로 높았으나, 2006년에 처음으로 역전되었다(서울 20.4%, 경기 21.5%). 이외 지역에서의 국제결혼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경남, 경북, 전남에서 증가폭이 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 분포는 그 수요를 발생시키는 전체 인구 특히 한국인남성인구 수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전체 인구나 남성인구에는 실제 결혼적령기와 거리가 먼 연령층과 이미 결혼한 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발생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연간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수의 비율을 구하였다. <표 5-8>에는 2006년 전체 결혼건수와 국제결혼건수 비율을 한국인남성(남편)과 한국인여성(처)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합하여 전체 비율을 구하였다.

전체 결혼건수 중 한국인남성 국제결혼건수 비율은 9.1%로 한국인여성 국제결혼건수 비율 2.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합한 전체 국제결혼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한국인남성 국제결혼 비율의 경우 면지역에서 18.1%로 읍지역 10.0%, 도시지역인 동지역 7.7%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여성과 외국인남성과의 국제결혼 비율은 오히려 도시인 동부에서 3.0%로 상대적으로 높고, 면부(1.8%)와 읍부(1.6%)는 거의 유사하였다. 두 국제결혼형태를 합한 경우, 동부와 읍부의 경우 국제결혼비율은 약 10% 수준이었으나, 면부에서는 거의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8〉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 2006

(단위: 명, %)

구 분	혼인건수				국제결혼비율		
	전체 혼인남성	국제결혼 한국인남성 (외국인 처)	전체 혼인여성	국제결혼 한국인여성 (외국인 남편)	국제결혼 한국인남성 (외국인 처)	국제결혼 한국인여성 (외국인 남편)	국제결혼 전체
전국	332,752	30,208	332,752	9,482	9.1	2.8	11.9
동부	274,369	21,052	283,816	8,448	7.7	3.0	10.6
읍부	26,938	2,697	23,837	375	10.0	1.6	11.6
면부	31,445	5,682	25,099	443	18.1	1.8	19.8
서울특별시	73,924	6,168	70,711	2,959	8.3	4.2	12.5
부산광역시	20,017	1,466	21,624	520	7.3	2.4	9.7
대구광역시	13,892	1,070	14,298	225	7.7	1.6	9.3
인천광역시	17,261	1,572	16,418	405	9.1	2.5	11.6
광주광역시	8,487	643	8,532	80	7.6	0.9	8.5
대전광역시	9,502	687	9,223	136	7.2	1.5	8.7
울산광역시	7,493	620	6,510	58	8.3	0.9	9.2
경기도	77,231	6,492	67,937	1,829	8.4	2.7	11.1
강원도	8,731	795	8,063	112	9.1	1.4	10.5
충청북도	9,291	953	8,816	110	10.3	1.2	11.5
충청남도	13,373	1,472	11,313	187	11.0	1.7	12.7
전라북도	10,429	1,343	9,985	121	12.9	1.2	14.1
전라남도	10,507	1,582	9,322	113	15.1	1.2	16.3
경상북도	16,178	1,885	14,479	185	11.7	1.3	12.9
경상남도	20,789	2,240	18,446	223	10.8	1.2	12.0
제주도	3,576	277	3,582	102	7.7	2.8	10.6
국외	12,071	943	33,493	2,117	7.8	6.3	14.1

자료: 통계청, KOSIS.

시도별로는 전남이 1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 12.9%, 경북 11.7%, 충남 11.0%, 경남 10.8%, 충북 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2006년 결혼 10쌍 중 1쌍 이상이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인 것이다. 이외 강원과 인천 각각 9.1%, 경기 8.4%, 서울과 울산 8.3% 등이다. 대전(7.2%)과 부산(7.3%)이 전국에서 국제결혼(한국인

남성+외국인여성) 발생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여성과 외국인남성과의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중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4.2%, 제주 2.8%, 경기 2.7%, 인천 2.5%, 부산 2.4%이며,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는 2%미만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 한국인여성과 외국인남성과의 국제결혼이 상대적으로 우세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표 5-8), 경남 함양군의 경우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비율이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 의령군(35.0%), 전남 진도군(30.7%), 경남 남해군(30.0%), 경북 의성군(28.7%), 전북 진안군(28.1%), 전남 해안군(27.4%), 전북 무주군(27.2%), 전남 고흥군(26.8%), 경북 영양군(26.4%)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봉화군(5.1%), 충남 청양군(4.5%), 경북 성주군(3.6%), 전북 장수군(3.5%), 경남 산청군(3.4%) 등은 한국인여성과 외국인남성과의 국제결혼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비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나 러시아 출신의 동포여성들의 부모(또는 조부모)의 고향에 거주한 남성들과 결혼하며, 이어서 이들 여성의 소개로 친지나 친구들이 그 지역의 남성들과 결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을 지역시책으로 삼아 알선, 지원 등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 등은 제4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표 5-9〉 지역별 국제결혼 현황: 시군구 순위(외국인처 비율 기준), 2006

순위	행정구역	혼인건수(명)				국제결혼비율(%)		
		총 남자혼인	외국인 처	총 여자혼인	외국인 남편	한국남+ 외국처	한국여+ 외국남편	소계
1	경남 함양군	259	101	169	2	39.0	1.2	40.2
2	경남 의령군	160	56	143	2	35.0	1.4	36.4
3	전남 진도군	192	59	114	1	30.7	0.9	31.6
4	경남 남해군	253	76	206	3	30.0	1.5	31.5
5	경북 의성군	272	78	229	3	28.7	1.3	30.0
6	전북 진안군	153	43	109	1	28.1	0.9	29.0
7	전남 해남군	475	130	378	8	27.4	2.1	29.5
8	전북 무주군	136	37	104	0	27.2	0.0	27.2
9	전남 고흥군	399	107	325	6	26.8	1.8	28.7
10	경북 영양군	110	29	99	1	26.4	1.0	27.4
11	경남 산청군	211	55	174	6	26.1	3.4	29.5
12	경북 상주시	569	147	469	7	25.8	1.5	27.3
13	경북 군위군	141	36	101	3	25.5	3.0	28.5
14	전남 함평군	167	42	140	3	25.1	2.1	27.3
15	경북 성주군	240	58	196	7	24.2	3.6	27.7
16	전남 담양군	293	69	244	5	23.5	2.0	25.6
17	충남 청양군	149	35	110	5	23.5	4.5	28.0
18	충북 보은군	188	44	143	0	23.4	0.0	23.4
19	경남 합천군	262	61	229	6	23.3	2.6	25.9
20	경북 청도군	216	50	184	1	23.1	0.5	23.7
21	전남 완도군	271	62	205	2	22.9	1.0	23.9
22	전남 영광군	302	69	244	6	22.8	2.5	25.3
23	전남 장성군	276	63	180	1	22.8	0.6	23.4
24	경북 예천군	224	51	193	2	22.8	1.0	23.8
25	전북 고창군	284	64	211	6	22.5	2.8	25.4
26	충남 부여군	360	81	310	9	22.5	2.9	25.4
27	경북 봉화군	160	36	136	7	22.5	5.1	27.6
28	충북 영동군	282	63	239	2	22.3	0.8	23.2
29	경남 거창군	324	72	273	2	22.2	0.7	23.0
30	전북 장수군	131	29	115	4	22.1	3.5	25.6
31	전북 임실군	183	40	158	1	21.9	0.6	22.5
32	경남 하동군	270	59	229	1	21.9	0.4	22.3
33	전남 신안군	272	58	193	2	21.3	1.0	22.4
34	경남 함안군	385	82	317	5	21.3	1.6	22.9
35	충북 옥천군	304	64	278	5	21.1	1.8	22.9
36	충북 단양군	158	33	146	4	20.9	2.7	23.6
37	경북 고령군	242	49	200	1	20.2	0.5	20.7
38	충남 금산군	308	62	255	4	20.1	1.6	21.7
39	강원 횡성군	244	49	194	7	20.1	3.6	23.7
40	충북 괴산군	195	39	161	3	20.0	1.9	21.9

5. 국제결혼부부의 연령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에서 결혼당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표 5-10>과 같다. 결혼당시 한국인남편의 연령은 1990년대 3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적으로 30대 후반과 더 나아가 40대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30대 비율은 1995년 48.9%에서 2006년 39.2%로 낮아진 반면, 40대 이상 비율은 1995년 32.7%에서 2006년 54.4%로 높아졌다. 특히 5세 간격 연령별로는 2006년 기준으로 35~39세가 27.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44세 20.2%, 50세 이상 13.9%, 45~49세 13.6%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인남편의 연령 변화는 국제결혼이 초기 노총각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혼이나 사별 남성의 재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외국인여성의 연령은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5세 미만의 비율이 1995년 30.1%에서 2006년 42.9%로 증가하였으며, 25~29세의 비율은 27.2%에서 18.3%로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30대 이상의 비율도 1995년 42.7%에서 2006년 38.8%로 낮아졌다. 요컨대, 국제결혼에서 한국인남편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여성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 간의 연령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부부관계에서 여러 형태로 갈등구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구학적으로도 자녀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겠다.

〈표 5-10〉 국제결혼 부부(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연령 분포, 1995~2006
(단위: %)

연도	결혼연령								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한국인남편									
1995	0.2	3.3	14.4	26.7	22.7	12.4	7.8	12.5	100.0
1996	0.1	3.5	14.7	30.2	25.4	11.3	6.5	8.2	100.0
1997	0.1	3.0	15.2	28.8	24.5	12.4	6.8	9.2	100.0
1998	0.2	4.1	17.0	25.6	24.5	11.9	7.2	9.6	100.0
1999	0.2	4.5	19.2	28.3	23.0	11.8	5.5	7.4	100.0
2000	0.1	2.7	16.0	29.7	25.9	12.2	6.1	7.2	100.0
2001	0.1	2.0	11.9	25.3	24.3	16.7	9.1	10.6	100.0
2002	0.1	1.6	11.8	24.6	23.9	16.9	10.0	11.2	100.0
2003	0.1	1.3	8.4	19.9	22.4	18.8	13.2	16.1	100.0
2004	0.1	1.2	7.1	16.3	21.1	19.8	15.6	18.8	100.0
2005	0.1	1.1	6.2	15.3	22.9	20.6	16.1	17.7	100.0
2006	0.1	1.3	6.7	17.2	27.1	20.2	13.6	13.9	100.0
외국인부인									
1995	1.0	29.1	27.2	18.5	12.4	6.8	2.7	2.3	100.0
1996	0.9	31.1	32.1	16.4	9.7	5.8	2.2	1.7	100.0
1997	0.9	32.8	31.3	13.9	10.1	6.0	2.9	2.1	100.0
1998	1.2	26.9	30.9	16.5	11.3	7.6	3.2	2.4	100.0
1999	1.8	26.1	33.9	17.1	10.0	6.2	2.8	2.1	100.0
2000	1.3	26.5	33.5	17.9	10.3	6.0	2.8	1.7	100.0
2001	1.1	24.8	28.4	17.2	13.3	9.1	3.9	2.1	100.0
2002	2.6	25.1	25.9	17.6	13.3	8.6	4.7	2.1	100.0
2003	4.3	21.3	20.6	16.4	14.0	11.7	7.7	4.0	100.0
2004	5.3	18.7	17.2	15.5	14.6	14.2	9.4	5.1	100.0
2005	8.8	19.9	16.0	13.9	13.9	13.7	8.6	5.2	100.0
2006	16.0	26.9	18.3	12.3	10.8	8.1	4.6	3.0	100.0

자료: 통계청, 결혼통계(원자료) 분석 결과.

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간의 결혼연령이 동갑인 경우가 1995년 4.5%에서 2006년 2.6%로 감소하였으며, 한국인남편 연령이 외국인 여성보다 적은 경우는 동기간 7.3%에서 5.9%로 감소하였다(표 5-11). 남편연령이 부인연령보다 많은 비율은 1995년 88.2%에서 2006년 91.6%로 높아졌다.

이를 연령차이별로 보면, 점차적으로 연령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6~9세 차이가 25%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10~14세 차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0세 미만의 연령 차이의 비율이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은 주로 15세 이상 차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19세 차이의 비율이 1995년 9.1%에서 2006년 20.4%로 2배 이상 높아졌으며, 20세 이상 차이도 동기간 4.6%에서 15.8%로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1〉 국제결혼 부부(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연령 차이, 1995~2006
(단위: %)

연도	여자>남자	여자=남자	남자>여자(연령 차이)							계
			소계	1~2세	3~5세	6~9세	10~14세	15~19세	20세+	
1995	7.3	4.5	88.2	9.7	16.6	24.2	24.0	9.1	4.6	100.0
1996	7.6	4.7	87.7	10.3	16.9	26.1	24.3	7.5	2.7	100.0
1997	7.0	4.1	88.9	8.4	16.9	27.0	26.4	8.2	2.1	100.0
1998	8.9	4.8	86.3	11.5	19.1	25.3	22.4	6.1	1.8	100.0
1999	10.0	5.2	84.8	11.9	21.4	25.8	19.2	4.9	1.5	100.0
2000	7.4	4.6	88.0	10.4	19.1	28.6	23.0	5.2	1.7	100.0
2001	7.0	4.4	88.6	9.3	17.2	26.3	25.7	7.7	2.4	100.0
2002	7.1	4.2	88.7	8.8	16.9	24.9	25.3	9.5	3.2	100.0
2003	6.9	4.0	89.1	8.8	16.5	24.0	24.3	10.6	4.9	100.0
2004	7.6	4.0	88.4	9.0	16.3	22.8	23.2	11.1	6.0	100.0
2005	7.8	3.5	88.7	8.6	14.9	20.8	21.8	13.5	9.1	100.0
2006	5.9	2.6	91.6	5.7	10.6	16.1	22.9	20.4	15.8	100.0

자료: 통계청, 결혼통계(원자료) 분석 결과.

6. 국제결혼부부의 교육수준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은 <표 5-1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남편의 교육수준은 1996년까지 중학교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대학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에는 고등학교 학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교 이하, 대학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점은 최근에 올수록 대학 이상 학력의 한국인남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06년에 19.5%로 중학교 이하 학력 21.6%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여성(처)의 학력 수준을 보면, 한국인남편과 달리 연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1999년 이전에는 중학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교 학력, 대학 이상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후에는 고등학교 학력소지자, 중학교 이하, 대학 이상 순으로 나타난다.

〈표 5-12〉 국제결혼 부부(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교육수준, 1995~2006
(단위: %)

연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체
한국남편 교육수준				
1995	45.4	44.2	10.4	100.0
1996	46.4	43.4	10.2	100.0
1997	41.4	45.5	13.1	100.0
1998	32.7	49.3	18.0	100.0
1999	26.8	50.0	23.2	100.0
2000	29.8	50.5	19.7	100.0
2001	27.2	53.8	19.1	100.0
2002	26.2	53.9	19.9	100.0
2003	27.8	54.7	17.5	100.0
2004	27.3	56.9	15.8	100.0
2005	26.0	58.3	15.6	100.0
2006	21.6	58.9	19.5	100.0
외국인처 교육수준				
1995	44.1	43.9	12.0	100.0
1996	42.4	42.6	15.0	100.0
1997	46.5	38.5	15.0	100.0
1998	41.5	38.8	19.7	100.0
1999	27.1	41.8	31.2	100.0
2000	27.7	41.9	30.3	100.0
2001	38.9	39.8	21.3	100.0
2002	36.0	41.0	23.1	100.0
2003	40.4	42.0	17.5	100.0
2004	41.0	44.1	14.8	100.0
2005	40.4	46.8	12.8	100.0
2006	36.5	48.9	14.6	100.0

자료: 통계청, 결혼통계(원자료) 분석 결과.

특이한 점은 외국인여성(처) 중 대학이상 고학력 비율이 1999년과 2000년에 30% 이상을 상회하며,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6년에는 14.6%로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한국인남편의 학력에 비해 외국인부인의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를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한국인남편과 외국인부인간의 학력을 직접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표 5-13). 이들 부부의 학력수준이 동등한 비율이 1995년 61.0%이며, 한국인남편이 외국인부인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는 18.4%, 외국인부인의 학력수준이 한국인남편에 비해 높은 경우는 20.6%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인남편의 학력이 외국인부인의 학력보다 높은 비율은 2006년에 30.9%로 전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부인의 학력이 한국인남편의 학력보다 높은 비율은 2006년 1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3〉 국제결혼 부부(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의 학력 차이, 1995~2006
(단위: %)

연도	남편학력 > 부인학력	남편학력 = 부인학력	남편학력 < 부인학력	전체
1995	18.4	61.0	20.6	100.0
1996	17.8	58.2	24.0	100.0
1997	22.5	59.0	18.4	100.0
1998	23.7	60.4	15.9	100.0
1999	19.6	56.6	23.8	100.0
2000	19.9	52.0	28.2	100.0
2001	27.7	54.3	18.0	100.0
2002	26.6	54.4	19.0	100.0
2003	28.1	55.6	16.3	100.0
2004	28.3	57.1	14.6	100.0
2005	29.3	57.5	13.3	100.0
2006	30.9	56.5	12.6	100.0

자료: 통계청, 결혼통계(원자료) 분석 결과.

구체적인 교육정도별로 국제결혼부부간의 학력 차이는 <표 5-1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1995년을 기준으로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교육정도가 중학이하-대학이상인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고등학교-대학이상의 비율은 4.2%로 나타난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교육정도가 중학이하-대학이상 1.0%, 고등학교-대학이상 4.0%로 1995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즉 대학이상 고학력 외국인여성과 대학 미만의 저학력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만, 중학이하 한국인남성과 고등학교 학력의 외국인여성과 결합하는 비율은 1995년 14.9%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마저 2006년에는 6.9%로 낮아졌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보통 남편의 학력이 부인의 학력과 같거나 높다고 볼 때, 국제결혼도 점차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부인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아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 갈등구조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표 5-14> 국제결혼부부(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 교육정도, 1995~2006

(단위: %)

한국인남성의 학력	외국인여성의 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이상
1995			
중학교 이하	29.0	14.9	1.5
고등학교	14.3	25.8	4.2
대학이상	0.9	3.2	6.3
2006			
중학교 이하	13.3	6.9	1.0
고등학교	20.1	34.2	4.6
대학이상	3.0	7.8	9.0

자료: 통계청, 결혼통계(원자료) 분석 결과.

7. 국제결혼부부의 직업

2006년 한해에 결혼한 남성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 결혼한 남성 중 외국인 처를 맞이한 비율은 41.0%로 아주 높다. 즉, 농림어업 종사 남성 10명 4명꼴로 국제결혼을 한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사회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고, 이에 따라 도시로 이주하고 이상이나 자아실현 욕구가 높은 한국인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2006년에 결혼한 농림어업 종사 남성 중 국제결혼을 한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율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道)에서 비교적 높으며,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림어업 남성의 혼인 중 국제결혼 비율은 경남(52.6%)과 경북(50.2%)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남(47.0%), 충북(44.3%), 전북(4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의 이러한 비율은 부산(19.9%), 제주(20.9%)에서 아주 낮고, 경기,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지역은 30% 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 남성의 혼인 중 국제결혼 비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제시한 바 있듯이, 중국이나 러시아 출신 여성들의 부모(또는 조부모)의 고향과 연계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제결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4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표 5-15〉 국제결혼남자의 농림어업종사 현황, 2006

(단위: 명, %)

구 분	혼인건수			비율	
	전체 남자혼인 (A)	농림어업종사 남자혼인 (B)	국제결혼 농림어업남성 (C)	전체혼인 중 농림어업종사 남성비율 (B/A×100)	농림어업남성중 국제결혼비율 (C/A×100)
계	332,752	8,596	3,525	2.6	41.0
서울특별시	73,924	149	54	0.2	36.2
부산광역시	20,017	216	43	1.1	19.9
대구광역시	13,892	93	41	0.7	44.1
인천광역시	17,261	124	47	0.7	37.9
광주광역시	8,487	65	26	0.8	40.0
대전광역시	9,502	40	16	0.4	40.0
울산광역시	7,493	69	24	0.9	34.8
경기도	77,231	933	289	1.2	31.0
강원도	8,731	517	189	5.9	36.6
충청북도	9,291	470	208	5.1	44.3
충청남도	13,373	958	395	7.2	41.2
전라북도	10,429	772	341	7.4	44.2
전라남도	10,507	1,272	598	12.1	47.0
경상북도	16,178	1,285	645	7.9	50.2
경상남도	20,789	1,039	547	5.0	52.6
제주도	3,576	287	60	8.0	20.9
국외	12,071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국제결혼 부부의 직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2% 내외에 불과하며, 그리고 남편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10% 내외이다. 부부 모두 농업이외 직업을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10~15% 수준이며, 남편만 농업이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70% 내외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흔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알려져 있으나, 총각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다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외 부부 모두 무직인 비율이 5% 내외 수준으

로, 실제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위신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결혼가정의 경제력은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표 5-15〉 국제결혼부부의 직업, 1995~2006

(단위: %)

연도	한국인남편-외국인부인 직업 형태					전체
	농업-농업	농업외 - 농업외	농업-무직	농업외-무직	무직-무직	
1995	1.9	14.7	10.5	70.0	2.9	100.0
1996	1.9	14.6	11.2	69.9	2.5	100.0
1997	1.1	10.8	9.4	75.6	3.1	100.0
1998	0.8	11.8	9.6	73.2	4.7	100.0
1999	0.7	13.3	11.9	67.5	6.6	100.0
2000	1.1	11.5	13.3	68.7	5.4	100.0
2001	0.6	11.2	9.1	74.6	4.6	100.0
2002	0.7	11.3	7.8	76.1	4.1	100.0
2003	0.6	11.5	6.4	77.5	4.0	100.0
2004	0.8	14.8	6.2	73.2	5.0	100.0
2005	1.5	15.1	7.7	70.9	4.8	100.0
2006	2.1	12.6	10.3	70.1	4.9	100.0

자료: 통계청, 결혼통계(원자료) 분석 결과.

제 3절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실태

국제결혼부부의 연간 이혼건수는 3,400건에서 2006년 6,28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 증가 속도는 한국인여성+외국인남편에 비해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에 비해 더 빠르게 나타난다. 총 이혼건수 중 외국인 처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기준으로 3.2%, 외국인남편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각각 나타난다.

〈표 5-16〉 외국인배우자 이혼 현황, 2004~2006

(단위: 명, %)

연도	총이혼	외국인처 이혼	외국인남편 이혼	외국인배우자이혼
2004	139,365	1,611	1,789	3,400
2005	128,468	2,444	1,834	4,278
2006	125,032	4,010	2,270	6,280

자료: 통계청, KOSIS.

국적별 분포를 보면, 외국인처의 경우 중국인여성의 이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적별 결혼 규모의 비율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남편의 기준으로는 일본국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난다.

〈표 5-17〉 국적별 외국인배우자 이혼 현황, 2006

(단위: 명, %)

구분	외국인 처 기준(국적별)									
	계	중국	일본	미국	몽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러시아	기타
이혼건수	4,010	2,551	202	73	132	610	33	171	43	195
구성비(%)	100.0	63.6	5.0	1.8	3.3	15.2	0.8	4.3	1.1	4.9
구분	외국인 남편 기준(국적별)									
	계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파키스탄	호주	기타
이혼건수	2,270	319	1,525	238	11	7	30	33	10	97
구성비(%)	100.0	14.1	67.2	10.5	0.5	0.3	1.3	1.5	0.4	4.3

자료: 통계청, KOSIS.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결혼건수 중 2006년 국제결혼가정의 이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들의 이혼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는 전체 인구 중 이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되는 조이혼율의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혼율은 외국인처 기준의 경우 1천명 당 21명(%)으로 외국인남편 기준의 26명(%)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조이혼율이 21%인 것에 비해 외

국인처의 경우 유사하며, 외국인남편의 경우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적별로는 외국인처의 경우 기타국가(주로 동남아시아 여성이 포함)에서 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23%, 미국 16%, 일본 14% 순으로 나타난다. 외국인남편 기준으로는 일본의 경우 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 25%, 중국 24% 순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처의 경우 기타국가(주로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의 이혼율이 28%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들 여성들이 피부색이나 문화 차이로 인하여 중국인 국적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이혼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5-18〉 국적별 국제결혼 이혼수준, 2006

(단위: 명, %)

구분	전체	국적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외국인 처 기준					
1991~2006 결혼건수(A)	189,531	14,192	109,081	4,520	42,513
2006년 이혼건수(B)	4,010	202	2,551	73	1184
B/A×1000(%)	21	14	23	16	28
외국인 남편 기준					
1991~2006 결혼건수(A)	86,204	32,237	13,109	9,475	8,505
2006년 이혼건수(B)	2,270	1,525	319	238	188
B/A×1000(%)	26	47	24	25	22
외국인 배우자 전체					
1991~2006 결혼건수(A)	275,735	46,429	122,190	13,995	51,018
2006년 이혼건수(B)	6280	1,727	2,870	311	1,372
B/A×1000(%)	23	37	23	22	27

주: 전체적으로 1991~2006년간 혼인건수(5,818,304) 대비 2006년 전체 이혼건수(125,032) 비율은 21%임.

자료: 통계청, KOSIS.

모든 이혼이 그렇듯이, 국제결혼부부의 이혼도 자녀수의 유무에 따라 여성은 물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이혼건수 중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비율은 30%대 수준이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처나 외국인 남편 기준 모두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비율은 80% 이상이며, 특히 외국인처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 처와 외국인남편 기준 모두 주로 1자녀를 두고 있었다.

〈표 5-19〉 자녀수별 이혼 현황, 2004~2006

(단위: 명, %)

구분	계	계	없음	1명	2명	3명+	미상
총이혼							
2004	100.0	(139,365)	33.4	28.1	32.7	4.7	1.1
2005	100.0	(128,468)	35.5	27.3	31.4	4.7	1.1
2006	100.0	(125,032)	38.8	26.8	29.6	4.4	0.5
외국인처							
2004	100.0	(1,611)	88.5	6.3	2.2	0.4	2.6
2005	100.0	(2,444)	88.6	5.4	2.8	0.3	2.9
2006	100.0	(4,010)	90.6	5.4	1.9	0.4	1.6
외국인남편							
2004	100.0	(1,789)	80.6	9.3	3.7	0.5	5.9
2005	100.0	(1,834)	82.5	9.5	2.5	0.5	5.1
2006	100.0	(2,270)	86.5	6.5	2.6	0.6	3.8
외국인 계							
2004	100.0	(3,400)	84.4	7.9	3.0	0.5	4.3
2005	100.0	(4,278)	86.0	7.1	2.7	0.4	3.8
2006	100.0	(6,280)	89.2	5.8	2.2	0.5	2.4

자료: 통계청, KOSIS.

제 4 절 국제결혼 수준 및 행태의 시사점

국제결혼 수준 및 행태 관련 분석결과의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형태는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 그리고 한국인여성과 외국인남성간의 결혼으로 구분된다. 이들 두 형태의 국제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국제결혼건수가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증가할 것인가이다. 결혼 이주 인구들이 아직은 소수일지라도, 최근과 같은 빠른 속도로 장기간에 걸쳐 증가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규모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이주 인구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태어난 2세와 3세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제결혼 증가는 다문화국가로의 이행 속도와 정도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규모와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앞선 제3장에서 논의한 국제결혼수급 메커니즘 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에서 외국인처의 국적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의 국적은 1990년대 초 통일교를 매개로 일본인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중국(조선족) 국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같은 민족이고 언어와 피부색이 동일하다는 데에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한국남성과 결혼할 중국조선족여성이 감소한데다가 위장·사기결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에서 인권문제가 여론화되면서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비용도 외국인처의 국적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향후 한국인남성의 결혼 상대자로 외국인여성에 대한 수요를 어느 나라에서 주 공급원이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문제는 1990년대 이래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의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인여성이 결혼한 외국인남성의 국적은 일본, 미국 순이었으나 최근에 들어 중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화 경향이 뚜렷하다. 중국남성과의 결혼은 최근에 요동을 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노동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과 관계가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선진국남성과 한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의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인남편의 초혼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재혼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혼 후 재혼’의 상대자로서 외국인여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 여러 이유로 결혼하지 못한 농촌노총각이 주요 수요자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수요자가 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한 한국남성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반려자를 찾기 어려우나 어느 정도 비용으로 외국의 젊은 신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사회 내 국제결혼 수요 메커니즘이 다변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결혼시장 성격의 변화는 국제결혼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증가세가 농촌에서 보다 도시에서 더 크며, 국제결혼부부간 연령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국인남성의 직업이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결혼가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초혼 한국인남성과 초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에 비해 재혼 한국인남성과 초혼외국인여성간의 결혼의 증가는 기 출산 자녀와 연령차이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자녀출산 및 양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지난 10년간 한국인남편과 외국인처간의 학력 차이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남편의 교육수준이 외국인여성의 교육수준보다 상당히 열등할 것이라는 기존의 보고 내용과는 다르게, 학력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한국사회 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되어 온 것으로, 한국인남편의 교육정도가 외국인처와 동등하거나 한 단계가 높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외국인처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아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 갈등구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인남성의 혼인상태가 재혼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농업 이외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

음은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국제결혼부부 모두 무직이거나 외국인처가 무직인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결혼가정의 경제력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자녀양육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끝으로,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가추이는 위장결혼 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6장 국제결혼가정의 출산 및 양육 실태

이 장에서는 최근 세계 최저 출산수준을 보이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증가가 출산율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일반적인 경향과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민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 내 국제결혼가정의 출산력을 진단해보기로 한다. 한편, 출산 후 자녀양육은 인구 자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제 1절 이민과 출산력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여성의 규모나 인구학적 특성(연령 등)은 그 영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제결혼여성의 인구학적 영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들 국제결혼여성은 출산을 통해 수 세대(generation)를 거쳐 우리나라 인구의 양적 및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이동자의 출산행태는 목적지국가(destination country)나 출발지국가(origin country)의 인구나 다르다. 국제이동자는 이동전후 일정기간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거나, 이동지역에서 적응이 쉽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출산을 연기함으로써 출산율이 낮을 수 있다(UN, 1956). 다른 한편으로 국제이동자는 대부분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부부인 경우가 많아 출산 수준이 높은 경향도 있다. 이동 후 일정기간 이동자는 미루어왔던 결혼 또는 출산을 함으로써 비이동인구의 출산율보다 높을 가

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일부국가를 대상으로 이민자와 비이민자간의 출산수준을 비교하여 보자(표 6-1).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적 이민(immigration)이 활발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민자의 출산율이 비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출산율(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2.0이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1.7로 히스패닉 3.0, 흑인 2.4, 멕시코인 3.51, 중국인 2.26, 한국인 1.57 등으로 한국인을 제외하면 백인이 가장 낮다. 미국 이민 주요 10개국 여성의 출산율은 평균 2.86명으로 출신국가의 출산율 평균(2.32명)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6-1〉 일부 국가의 인종·국적별 출산율 차이

(단위: 명)

구분	합계출산율(TFR)		순이동율 (%)
	전체	인종별	
미국	2.1('07년)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인 1.7, 히스패닉 3.0, 흑인 2.4(2003년) ◦ 멕시코인 3.51, 중국인 2.26, 한국인 1.57 * 미국이민 10개국 여성의 출산율 평균 2.86명>출신국 출산율 평균(2.32명) 	3.10('07)
영국	1.74('06년)	◦ 영국인 1.67, 인도인 2.21, 파키스탄·방글라데시 4.90(1996년)	2.18('05)
스위스	1.44('07년)	◦ 스위스인 1.34, 옛 유고슬라비아인 2.41, 터키인 1.91(1997년)	3.58('05)
독일	1.37('06년)	◦ 독일인 1.39, 터키인 2.40(1996년)	2.18('05)
이탈리아	1.33('06년)	◦ 이탈리아인 1.26, 모로코인 2.14, 알바니아인 2.60, 튀니지인 3.30, 이집트인 3.40(1999년)	2.07('05)

자료: <http://migrationinformation.org/Resources>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http://paa2007.princeton.edu/download.aspx?submissionId=70869>

영국의 경우, 1996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은 인도인 2.21,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 각각 4.90으로 영국인의 1.67에 비해 아주 높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1997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이 옛 유고슬라비아인 2.41, 터키인 1.91 등으로 스위스인의 1.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독일 거주 터키인

의 1996년 합계출산율이 2.40으로 독일인의 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1999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이 모로코인 2.14, 알바니아인 2.60, 튀니지인 3.30, 이집트인 3.40 등으로 이탈리아인의 1.2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OECD국가의 경우 이민자의 출산력이 비이민자의 출산력보다 높으며, 이는 이민자가 이민 이전에 속해 있었던 사회의 출산행태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턴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에도 적용될 것인가? 다음 절에서는 이 일부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

현재 통계청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는 출생통계로는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을 파악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출생통계를 작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출생신고서 상에서 부모의 국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수행된 표본조사나 연구의 결과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실시된 조사로는 200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연구와 2006년에 여성가족부를 통해 실시된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조사시점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수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⁴⁷⁾ 이 조사에서

47)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설동훈 외, 2005)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수는 무자녀 50.5%, 1자녀 27.1%, 2자녀 16.0%, 3자녀 이상 6.4% 등으로 나타난다. 동 조사에서 유효표본수는 945명이다.

조사 당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수(한국인남성과의 자녀수 기준)는 무자녀가 51.6%, 1자녀 27.2%, 2자녀 16.3%, 3자녀 이상 4.9%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0.8명에 불과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별로는 도시 거주 경우 0.7명으로 농촌 거주 경우 1.0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국적별로는 일본의 경우 1.8명, 필리핀의 경우 0.7명, 그리고 조선족, 베트남, 한족의 경우 각각 0.6명으로 나타난다. 일본 여성들의 평균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의 출산력이 높기보다 오래 전에 이주하여 출산기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표 6-2>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계	자녀수						평균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전체	100.0(1,063)	51.6	27.2	16.3	4.0	0.9	0.0	0.8
지역별								
도시	100.0(822)	55.0	25.3	15.7	3.4	0.6	0.0	0.7
농촌	100.0(241)	40.2	33.6	18.3	5.8	2.1	0.0	1.0
국적별								
조선족	100.0(496)	60.1	22.4	16.1	1.2	0.2	0.0	0.6
한족	100.0(110)	59.1	21.8	15.5	3.6	0.0	0.0	0.6
베트남	100.0(184)	44.6	47.8	7.1	0.5	0.0	0.0	0.6
일본	100.0(104)	78.8	17.3	28.8	24.0	8.7	0.0	1.8
필리핀	100.0(100)	55.0	25.0	17.0	3.0	0.0	0.0	0.7
기타	100.0(69)	39.1	33.3	23.2	4.3	0.0	0.0	0.9

자료: 설동훈 외(2006)의 <표 3-26> 재정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표본조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출생신고서 상에 부모의 국적을 신고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과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별도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 사전적인 단계로서 일부 사례조사(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현재 자녀수뿐만 아니라 향후 희망하는 자녀수까지 질문하여 완결출산력(completed fertility)을 측정하

고자 하였으며, 이는 합계출산율에 가까운 개념이기도 하다.

사례조사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표 6-3>과 같다. 2005~2005년 기간 합계출산율(연평균 개념)은 몽고에서 4.4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필리핀 3.22, 우즈베키스탄 2.72, 베트남 2.32, 태국 1.93, 중국 1.70, 일본과 러시아 각각 1.33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수준(2005년 1.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고출산율을 보인 국가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들의 출산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한국의 저출산현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많은 유럽국가에 이민자의 상대적인 고출산력이 전체 출산력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표 6-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합계출산율
(단위: 여성 1명이 가임기동안 낳은 자녀수)

년도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고	우즈베키스탄
1970~1975	2.07	4.86	2.02	6.00	6.70	4.97	2.03	7.33	6.30
1975~1980	1.81	3.32	1.79	5.50	5.89	3.96	1.94	6.65	5.58
1980~1985	1.76	2.55	1.83	4.95	4.50	3.05	2.03	5.74	4.73
1985~1990	1.66	2.46	1.92	4.55	4.02	2.41	2.13	4.83	4.40
1990~1995	1.49	1.92	2.03	4.14	3.30	2.10	1.55	3.37	3.88
1995~2000	1.39	1.78	1.99	3.64	2.50	1.95	1.24	2.70	3.01
2000~2005	1.33	1.70	2.04	3.22	2.32	1.93	1.33	4.45	2.74

자료: United Nation(2004).

전체 사례조사건수 중 출산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면접이 이루어진 14개 사례들은 <표 6-4>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별 심층면접내용은 [부록 10]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출산과 관련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개별사례들을 종합화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의 수준과 그 결정요인들을 진단하고자 한다. 물론, 보다 일반화된

실태는 보다 전국적인 신고체계를 개선하거나 표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중국에서 결혼했다면 한명의 자녀를 두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둘을 낳아서 중단할 계획이다. 애들이 많으면 조금 힘들어서 남편도 동의했다.(사례 5, 중국 여성, 딸 1명, 아들 1명)

몽고에서는 보통 3명을 낳으며, 저도 처음부터 3명 낳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했다. 저도 남편도 둘째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시어머니는 경제력과 애를 돌볼 수 없어 절대 반대하여 보건소에 가서 불임시술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낳지 말자고 한다. 저도 나이가 서른넷인데 2년 되면 늙을 것 같아서 빨리 낳으면 한다.(사례 7, 몽골여성, 현자녀수 딸 1명)

향후 아들로 1명을 더 낳고 싶다. 아들 있으면 내가 늙었을 때도 언젠가 '내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명 정도 낳는데, 나도 다른 한국 사람과 같이 잘살면 2명을 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 나이가 많은데다가 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가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사례 9, 우즈베키스탄 여성, 딸 1명, 남편의 전처 아들 1명)

첫째아이를 안 낳고 싶었다.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살고 그러면 한국말도 좀 더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카자흐스탄에 돌아 가버렸다.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운 경험도 없고, 카자흐스탄에서 아이 낳고 일 못한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남편이 와서 다시 데려갔다. 둘째아이는 안 낳고 싶었다. 왜냐하면 둘째는 돈 더 많이 있어야 되며, 저도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남편은 제가 먼저 한국말 배우고 나중에 아이를 낳자고 말했지만 하지만 꼭 낳아야 된다. 남편은 아이 그만 낳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좋다. 도와주면(여건이 되면) 더 낳고 싶다.(사례 10, 카자흐스탄 여성, 아들 1명, 딸 1명)

1~2명 더 낳고 싶다. 남편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없고, 불임시술을 하였다. 그래도 더 낳고 싶으며, 이를 위해 일 하고 싶다.(사례 11, 베트남 여성, 딸 1명, 남편의 전처 사이 아들 2명)

(본국에서 결혼했다면 아이 더 낳았을까요?) 여기에서는 추가로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나는 외로우니까 하나 더 낳으라고 한다. 지금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 더 낳으면 불쌍해 질 것이다. 남편이 아이한테 잘해주면 하나 더 낳을 생각은 있다.(사례 12, 베트남 여성, 딸 1명)

20세에 첫째아이를 낳았다. 원래 첫째아이만 낳으려고 했으나,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다. (기독교 신자로서) 유산할 수 없어 출산하였다. 더 이상 임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남편이 싫으나 아이가 있어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례 13, 베트남 여성, 딸 2명, 아들 1명)

남편과 상의해서 아이를 빨리 갖기로 했다. 추가로 아이를 더 출산할 계획은 없다. 처음에는 남편도 둘째까지 낳자고 했으나, 생활비도 부족하고 첫째아이도 크고, 남편의 연령도 많아 어렵다. 경제가 괜찮다면 하나 더 낳고도 싶다. 첫째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사례 15, 태국 여성, 딸 1명)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들을 좋아한다. 시어머니는 첫 아이 출산 후 다시 임신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가도록 했다. 그 이유로 남편이 직장이 없으니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인은 돈 많이 벌면 꼭 딸을 낳자고 주장하였다. 시어머니는 이미 아이들이 세 명(전처와의 아이들)이 있으니 낳지 말자고 주장하였다.(사례 16, 태국 여성, 아들 1명, 남편과 전처 사이 2남1녀)

딸만 낳아서 남편은 아들을 낳고 싶어 했다. 본인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다. 시부모님은 왜 많이 낳느냐고 하면서도 셋째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꼭 아들을 낳으라고 하였다.(사례 17, 태국 여성, 딸3명 아들 1명)

또 아들 낳을까봐 추가로 출산할 의향은 없다. 남편도 좋은 직장도 안다니고 여유가 없으니, 여기에서 중단하자고 한다.(사례 19, 필리핀 여성, 아들 3명)

남편이 나이가 많고 해서 첫째아이를 빨리 가지려 했다. 둘째아이는 그냥 낳았다. 셋째아이는 안 낳을 생각이다. 남편은 셋째아이 빨리 낳은 후 한국어를 배우라고 한다. 아이들 양육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낳지 못할 것이다.(사례 21, 필리핀 여성, 딸 1명, 아들 1명)

현재 임신 중으로 이 아이 출산 후에 자녀를 더 두지 않을 생각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남편은 나이가 많고 돈벌이도 좋지 않아 하나만 키우기를 희망했으며, 시어머니도 반대하였다.(사례 22, 인도네시아 여성, 딸 1명, 임신 중인 아들 1명)

지금 딸 1명으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더 낳을 생각이다. 남편도 더 출산할 생각을 갖고 있다. 둘째아이는 아들이었으면 한다. 될 수 있으면 3명도 낳고 싶으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현실이 어려워 2명만 둘 계획이다. 남편의 생각도 그렇다.(사례 23, 일본 여성, 딸 1명)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녀를 제외한 후) 외국인처가 낳은 자녀수는 1명에서 4명까지 분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3 사례에서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대체적으로 남편은 추가자녀를 두고 싶지 않은 반면, 외국인처는 여건만 허락하면 추가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남편의 희망자녀수를 감안하면, 외국인처의 완결출산력은 1~2명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며, 반면 외국인처의 희망자녀수를 감안하면 자신의 완결출산력은 2~3명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물론 가구경제의 상황이나 남편의 재혼(전처와의 자녀수) 등이 추가 출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남편은 한국의 출산율에 맞추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외국인처는 출신국가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추구하거나 적어도 한국의 출산율보다 높은 출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처들이 추가자녀로 특정한 성(아들이나 딸)을 원하는 경향이 두렷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간의 결혼생활이 한국사회에 강하게 내재된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시어머니가 경제력과 전처와의 자녀들을 감안하여 외국인처의 추가출산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인남편의 혼인상태가 재혼(전처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인 경우가 많고, 경제력이 취약하고, 그리고 연

정도 많다. 이들 이유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은 한국의 출산율에 보다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표 6-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존자녀수 및 추가희망자녀수

국적	연령(결혼시기)	결혼방법	거주지	남편-부인 학력	현존자녀수	추가희망자녀 (희망하는 성)
5.중국	남편39세-처32세 (2004년)	한국 거주 친구 소개	대구 달성	고-대	딸 1명 아들 1명	남편: 없음 부인: 없음
7.몽골	남편 33세-처 34세(2003)	종교단체 소개 후 연애	춘천	고-대	딸1명	남편: 없음 부인: 1명
9.우즈베키스탄	남편(재혼)46세, 처 31세(2003년)	결혼중개업체	춘천	고-고	딸 1명 (전 처 아들 1명)	남편: 없음 부인:1명(아들)
10.카자흐스탄	남편38세-처33세 (2001)	아는 사람 소개	김제	고-전문대	아들 1명 딸 1명	남편: 1명 부인: 1명
11.베트남	남편45세(재혼)-처 29세(2003)	결혼중개업체	춘천	모름-고	딸1명(전처와 아들2명)	남편: 없음 부인: 1~2명
12.베트남	남편38세-처22세 (2003)	결혼중개업체	춘천	고-고	딸 1명	남편: 1명 부인: 없음
13.베트남	남편46세-처26세 (2001)	아는 사람 소개	대전	미상-고	딸 2명 아들 1명	남편: 없음 부인: 없음
15.태국	남편39세-처30세 (2000)	종교단체	춘천	고-고	딸 1명	남편: 없음 부인: 1명(딸)
16.태국	남편(재혼)45세-처27세 (2001)	아는 사람 소개	청주	미상-초등	아들 1명 (전처 2남1녀)	남편: 없음 부인: 1명(딸)
17.태국	남편46세-처35세 (1999)	통일교	순천	미상-고	딸 3명 아들 1명	남편: 없음 부인: 1명(딸)
19.필리핀	남편45세-처36세 (1997)	결혼중개업체	춘천	초-대	아들 3명	남편: 없음 부인: 없음
21.필리핀	남편42세-처22세 (2003)	결혼중개업체	춘천	미상-고	딸 1명, 아들 1명	남편: 1명 부인: 없음
22.인도네시아	남편46세-처28세 (2002)	연애결혼	춘천	미상-고	딸1명 (임신 중)	남편: 없음 부인: 없음
23.일본	남편36세-처32세 (2005)	아는 사람 소개	대구 달성	고-전문대	딸 1명	남편: 1명 부인: 1명(아들)

주: 번호는 사례 고유번호이며, 전체 사례는 제1장 <표 1-1> 참조.

제 3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은 크게 경제적인 것과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우선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표 6-5)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중’ 또는 ‘하’로 나타났으며, 극히 일부만이 ‘상’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주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중 또는 상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저위신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정이 많고, 정부가 저소득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가정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주관적인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례대상 국제결혼가정 대부분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구조에서 국제결혼가정도 다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자녀양육과 관련한 용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상당히 높다. 실제 사례조사 대상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보육 및 교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문제를 가장 주된 어려움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5〉 심층 면접대상자의 자녀양육 관련 특성

사례번호	국적	언어 사용	부모연령		부직업	주관적 경제수준	자녀현황		정부지원
			부	모			자녀수(연령)	교육보육(자녀수)	
1	중국 조선족	한국어+ 중국어	28	38	회사원	상	딸(4), 딸(3)	어린이집(1), 학 습지	보육료
2	중국 조선족	한국어	32	38	회사원	중	딸(4), 아들(0)	어린이집(1), 학 습지	출산장려금1회 (30만원)
3	중국 조선족	한국어	24	46	사망	중	딸(0)	가정양육	
5	중국 한족	한국어+ 몽골어	32	39	무직	하	아들(3), 딸(1)	어린이집(1)	보육료 무료
6	몽골(고 려인)	한국어+ 영어	31	40	회사원	중	딸(3)	어린이집	
7	몽골	한국어+ 러시아	34	33	보일러	중	딸(4)	어린이집	보육료 50%지원
8	우즈베 키스탄	한국어+ 러시아	27	37	회사원	중	아들(1)		
9	우즈베 키스탄	한국어+ 러시아	31	46	쌀 장사	중	아들(10), 딸(3)	어린이집(1), 피 아노	
10	카자흐 스탄	한국어+ 베트남	33	38	농사+ 보일러	상	아들(6), 딸(1)	유치원(2)	보육료 전액 지원
11	베트남	한국어	29	45		중	아들(15), 아들 (12), 딸(4)	어린이집(1), 학 원	
12	베트남	한국어+ 영어	22	38	자동차 정비	모름	딸(4)		
13	베트남	한국어+ 영어	26	46		하	딸(6), 아들(5), 셋 째(2)	유치원(2)	남편 장애인 교육비 무료
14	베트남	한국어	24	45	잡일	하	딸(3)		
15	태국	한국어+ 태국어	30	39	환경미 화원		딸(7)	유치원	
16	태국	한국어+ 태국어	27	45		중	아들(19), 딸(15), 아들(13), 아들(3)	어린이집(1)	
17	태국	한국어+ 영어	35	46		하	딸(8), 딸(7), 딸 (5), 아들(0)	유치원(2)	보육료 지원
18	필리핀	한국어+ 영어	28	40		중	아들(5), 아들(0)	유치원(1)	보육료 지원
19	필리핀	한국어+ 영어	36	45	장사	상	아들(10), 아들 (8), 아들(3)	학원(2), 어린이 집(1)	기초생활수급 자 50%지원
20	필리핀	한국어+ 베트남	47		공공근 로사업	하	딸(8), 아들(3)	어린이집(1)	
21	필리핀	한국어+ 인도네 시아어	22	42			딸(3), 아들(0)	놀이방(1)	
22	인도네 시아	한국어+ 일본어	28	46			딸(5), 임신중	유치원(1)	
23	일본		32	36		하	딸(3)		

주: 공란은 무응답.

돈 많이 들어요. 어떻게 애 더 많이 공부 많이 해줘, 어떻게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고... 돈이 걱정이지. 그래도 많이 생각하지마. 남편 걱정하면 너무 생각하지 말고... 돈 때문에 꼬이고... 그냥 하루하루만 열심히 살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사례 17, 태국 여성)

남편이 아들 낳자고 하면 낳을 생각이다. 경제가 더 좋아지면 낳을 것이다. 경제적 면이 크게 작용한다. 애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건 해주고 싶은 것 너무 많은데 못해준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사례 1, 중국조선족 여성)

만약에 내가 보통 사람처럼 그 만큼 돈 받고 있으면 더 낳아요. 더 낳고 잘 키우고 좋은 거 먹이고 싶었는데 근데 저기 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내가 남편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 말,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틀린 것 다른 것,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부 못해도 잘 살수 있다고 해도 한국이 공부 잘해야 잘 살수 있다고 해요. 공부 잘 하면 교육비 많이 들어가요. 우즈베키스탄 보단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같이 사는 아주머니들한테 아들 대학교 딸 고등학교 그렇게 많이 돈 들어간다고 학원 들어간다고 자기 옷도 못사입는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요.(사례 9, 우즈베키스탄 여성)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모국어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 한국어 미흡은 한국사회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대부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을 이주여성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부모-자녀간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할 시기에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곤란은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학습능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도 많이 걱정해요 내가 아주 말 하긴 하지만 발음이 아주 부족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한국말 해도 보통 한국 엄마들 말 시키고 장난도 해 주지만 못해요. 한국 살아도 모르는 것 많아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그러는구나 생각 많아요. 남편은 나중에 애들은 학교 다니고 지내다 보면 괜찮다고... 애들한테 너무

장난하고 이야기 하고 놀아주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 선배 언니 보면,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자기 이름도 한국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애가 학교에 가면 엄마가 몽골사람이라고... 한국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잘 배우고 또-- 또-- 애 엄마가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런 무시하는 거 안하게 못하게 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사례 7, 몽골 여성)

지금 이제 내가 딸 첫 번째 아이니까 내가 이번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딸내미 말해요. 말을 한국말을 해요. 어린이집도 다니고 했는데, 이야기 책 읽어 주고 싶은데 내가 입을 줄 알아도 얼마나 천천히 읽는지 나도 읽는 것 못 알아들어요. 딸내미한테 이야기나 밖에 나오면 같이 걸어가다가 ‘이런 이런 거다. 이런 나무다’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 못하니까 불편한 거 많아요. 그런데 러시아 말 했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 자꾸 러시아 말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한국말 이야기 하라고 아니면 헛갈린다고 내 생각에는 러시아 말 알아야 엄마 말 알지, 한국 말 하지만 러시아 말 알아야 해. 그래야 내 마음 다 알아. 나도 말 할 수 있고 딸내미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사례 9, 우즈베키스탄 여성)

이젠 딸 학교 가면 딸도 학교 가면 그 때도 한국말 공부하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거 모르는데 엄마 이것도 몰라? 엄마 이것도 모르는데... 그 때 내가 진짜... 지금 그런 것 없지만 그 때 아마 그 때도 아무래도 딸내미 때문에 내가 한글 너무 잘해야 되. 원래 나 공부잘했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책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한국 한글 때문에 한글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편한데요 진짜. 지금까지 그런 아~ 이정도만 되면 괜찮다 했는데 우리 딸내미 때문에 공부도 해야 해 앞으로 이제 앞으로 딸내미 엄마 이것 좀 보여줘 엄마 이것 좀 가르쳐줘 그때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엄마 그것 밖에 몰라. 그런 말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어- 내가 진짜 딸내미한테 엄마 누구야? 공부 잘하고. 잘 하는 사람처럼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엄마 이것 밖에 몰라?” 그런 말을 나올까봐 그래서 줌... (사례 9, 우즈베키스탄 여성)

말 안 들으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잖아요, 먹다가... 제가 외국에서 키웠으니까 말도 힘들어요. 한국말 엄마들이 대화 해주고, 그 얘기도 따라 하잖아요. 그것이 한글말도 해야 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말 때문에, 문화도 틀리고...(사례 23, 일본 여성)

자녀들은 성장하면서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인 모가 한국말이 서툰고 피부색이 달라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 갈등이 심해진다. 결국 자녀들 스스로 이주여성인 모와의 관계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데 내가 학교가면 애들이 니 엄마 외국인이라고 안 좋게 받아들일 가 봐, 꼭 필요할 때만 학교에 가고 부모들 모임에도 안 다녀요.(사례 9, 우즈베키스탄 여성)

나중에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 교육하고 엄마 외국인이라 애가 왕따 당할까봐 걱정이다. 국제결혼 했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 애들이랑 똑 같았으면 한다.(사례 2, 중국 조선족 여성)

애들이 크니까 걱정된다. 선생님한테도 선뜻 이야기가 안 되고... 호적등본 떼면 국적취득 나오니까, 적혀 있으니까 선뜻 이야기는 안 되더라. 국제결혼 했다고... 들어보면 서울에서 언니가 중국에서 결혼한 언니는 애가 6살 정도 되었는데 3살 때 했는데... 주변 아줌마들이 중국에서 왔다는 소리 듣고 피해 다녀 가지고... 그래서 눈치도 많고... 내가 여기서 아줌마들하고 어울려 논다고 하니까 놀래더라.(사례 2, 중국 조선족 여성)

이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양육의 주 양육자인 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피부색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구조는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인 모의 부적응 문제는 자녀들의 언어 학습능력의 취약, 정체성의 혼돈, 대인관계 형성의 소극성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오성배, 2007). 더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질적 수준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설동훈 외, 2006)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여성이 외국인 경우)의 자녀들 중 미취학이 44.7%, 유치원 어린이집 31.6%, 초등학교 20.9%, 중학교 1.3%, 고등학교 0.9%, 대학이상 0.6%로 나타난다. 아직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 대부분이 어린 상태이나, 조금 있으면 고등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이들 인구의 자질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부적응성을 가져올 것이다. 요컨대 국제결혼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또한 사회부적응 문제를 안고 있어 사회통합문제가 심각해질 소지가 있다. 향후에도 국제결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제 7장 국제결혼의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국제이동의 양이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로는 국제이동이 관련 국가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법 및 행정절차 등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UN, 1956). 국제결혼도 국제이동의 한 유형이므로, 향후 그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에서 논의된 국제결혼의 수급 메커니즘과 제5장에서는 분석된 국제결혼 행태를 종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그 방향성을 추측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결혼의 수요는 국내의 나이가 많은 총각과 이혼남성에 의해 발생한다. 무직이나 저위신직업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미혼남성과 이혼남성이 향후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따라 국제결혼 수요도 변동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은 한, 남성실업율의 현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식기반사업으로 이행하고 있는데다가 3D직종에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지는 등으로 인하여 저위신직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의 비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과거 고출산력에 저출산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인구가 청장년층에 도달하면서 미혼남성의 절대 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 이래 감소세에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정도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남성들의 절대 규모는 계속 감소하여 국제결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결혼의 공급측면에서 전망해본다. 외국인신부는 1990년대

초반에 통일교의 주선으로 일본에서 주로 공급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중국(조선족)으로 주 공급원이 이동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갈등, 결혼에 대한 기대 차이, 위장결혼·사기결혼의 사회문제화, 한국 남성과 결혼할 중국조선족 여성의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신부의 주 공급원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국가로 이동하였다. 동남아국가들 사이에서 외국인신부의 공급원도 통일교의 역할이 지대했던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이미 이동하였다. 현재 베트남에서도 인권문제가 사회화되면서 베트남정부가 엄격한 규제를 함에 따라 다른 국가로 공급원이 변경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남성을 위한 외국인신부의 주된 공급국가(국적)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여성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자와 중개업체가 기피하는 경향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신부의 국가에서 자국인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하여 인권착취 등을 당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아시아여성들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매개로 한국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하나, 그러한 코리아드림이 실현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점차 한국인남성과 결혼할 외국인여성의 수가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수요와 공급 모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계량화하는 데에는 보다 정밀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정교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현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의 형태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신 다른 유형의 이민이 증가할 수 있다. 예로, 국내 유입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들 외국인과 한국인여성간의 결혼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듯

이 국내 유입 전후로 같은 민족이나 국적의 남녀가 결합하는 형태의 이민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이민들은 국내나 외국의 정책이나 법령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인구규모와 구조(특히 노동력 구조) 변동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이민(또는 어떤 속성을 가진 이민자)을 언제 어느 정도로 도입할 것이며,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00년 이상 이민역사를 가진 많은 유럽국가에서 아직도 많은 사회통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민정책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수립 및 시행되어야함을 시사해준다.

한편,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도 감소할 것이나, 여전히 일정 수준의 수요와 공급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민주성과 사회통합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출산과 양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결혼에 대한 장기 전망을 토대로 청사진과 로드맵을 작성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제결혼에 관한 법제적 고찰과 지자체의 사업실태 분석 결과, 국제결혼행태 분석 결과,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 실태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원칙 하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법적 및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토록 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가져와 사회통합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 역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이 인권침해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성장을 돌볼 수 있도록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국적취득 기간요건이 충족된 이주여성이 귀화뿐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자신이 원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주비자를 주는데 있어서 심사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 관련법과 모성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 관련법의 적용 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결혼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혼중매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중매업을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최근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다).

여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정착 이전단계에서 포괄적인 적응훈련 기회를 의무화 및 무료로 제공한다.

일곱째,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에게도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 등 가치 교육, 외국여성의 특성 및 타문화의 예절에 관한 교육, 인성 교육, 의사소통 등 문제 교육 등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인구 자질 향상과 관련된다. 현실적으로 이주여성들이 자녀출산이라는 사회적 재생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결혼가정의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현상을 더

욱 악화시키고 동시에 고령화에는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결혼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언어사용의 어려움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사용의 어려운 점은 자녀가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을 시작하는 성장 초기부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의 언어발달 및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에게 미치는 이러한 측면은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및 학습능력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가족의 보호 차원에서 이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들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토록 한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녀 출산을 희망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갈등(불화), 시부모의 반대, 남편의 전처 사이의 자녀 존재 등으로 인하여 출산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의 가정이 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수혜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관련 혜택을 소득자산 등 일정한 조건이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로, 저소득층에 제공하고 있는 차등보육료 등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제결혼 가정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임신시 건강관리, 출산과 가사도우미 파견 같은 모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국제결혼가정이 출산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이민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한국인으로서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해당 여성이 인생주기 전반을 통해 안정적인 적응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한국여성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든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이주여성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언어문제, 문화차이 등이다.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단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접근성이 낮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제결혼가정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부장적이고 불안정한 부부관계와 고부관계는 이주여성의 사회부적응문제를 가중시키는 한편, 자녀의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주여성 부부에게는 부부의 상호이해 증진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가부장적 의식의 완화와 양성평등실천프로그램과 배우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가족에게는 왜곡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가족상담, 캠프활동과 교육, 시부모와의 며느리와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 문화적 적응은 이들의 원활한 국내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다인종 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정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별적으로 형성된다면, 또 다른 소외를 겪을 수 있고 인종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인종 다문화의 공존을 위해서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에 관한 문제로 교육(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은 한국인 시각에서의 이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동정적인 형식적인 통합이 아닌 동일한 한국인으로서의 인식과 포용에 대한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제 8장 결론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그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이주의 역사는 보편적인 것으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게 마련이다. 새로운 민족의 이민과 정착은 가족 형성과 가족 안정성의 문제, 이민자와 2세대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문제, 이민자와 토착민의 사회통합의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외국인 이주와 정착은 매우 특징적이다. 서양의 이주 역사에 비해 우리 사회의 외국인 이주 역사는 비교적 짧은 특징 이외에, 외국인 이주의 형태가 일반적 유형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주과정과 결혼 과정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결혼은 이민 전이나 이민 후에 이민자 동족끼리 또는 다른 민족 간에 성사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라는 특수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주민 정착과 2세대의 성장을 둘러싼 가족 불안정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의 인권과 정착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고, 2세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 결혼과 외국인 이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구 변동의 요인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주민의 노동이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적 과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연구가 인구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제결혼 발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 지속성을 진단하는 데 일차적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제결혼의 추이와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과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차원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제결혼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이 결혼중개 업체 등을 매개로 외국인 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남성의 개별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인구분포의 불균형에서 기인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몽고 등 아시아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한국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여성의 빈곤화 및 여성의 이주화,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인 조류와 결합하여 국제결혼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민자 2세대 자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구성원의 측면에서 이제 다문화성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수준과 행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외국인 여성을 찾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국제결혼에서 초혼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재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은 지역적으로 농촌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로 확대되어 이제는 증가추세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2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혼은 출산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 여성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은 그 영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출산력은 비이민자의 출산력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민자는 이민 이전에 속해 있던 사회의 출산행태를 어느 정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결혼 가정의 출산력 수준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찾아본다면, 적어도 기대자녀수는 배우자 남성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성의 경우 재혼자가 많고, 경제력이 취약하며 연령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은 한국의 출산력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결혼 가정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2세 양육과 관련된 것이다. 양육의 문제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 가정은 경제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정부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가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불안정하고 소득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져 자녀양육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영유아기에 언어미발달로 인한 학습,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위기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외국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은 아동의 안정적 심리발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더욱 합리적 노력이 요구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원칙 하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주 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주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보호 측면에서 이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미는 있는 함의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여성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현재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정생활과 인권 등의 실태조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인구학적인 측면의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출산력 예측 등의 일부 내용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현재 출생신고 시에 부모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국제결혼 가구의 인구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수요 공급 메커니즘 분석에서 수요자 측면에 비해 공급자 측면의 분석이 일부분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또한 공급자 측면의 자료 접근 제한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 측면에서 사용된 자료는 심층면접조사 자료에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욕구 파악에는 일정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는 향후 보완 연구의 필요성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1999.
- 광주여성발전센터, 「보도자료: 광주·전남 외국인여성 실태조사」, 2002.
- 광주여성발전센터. 『외국인 주부 실태조사』, 2003.
-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전남지역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2004.
-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국제결혼 현황과 국적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http://kosian.urm.or.kr> 자료실, 2002.
- 김두섭, 「한국인 국제혼인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2006.
- 김민정, 「필리핀 농촌마을의 권력관계와 성차, 그리고 모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02.
- 김상임,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 김애령,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1998.
- 김오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2006.
- 김이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젠더리뷰』 2, 2006.
- 김정선,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 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성」,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기념 학술대회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 5~41, 2004년 6월 4일.
- 김정대, 「농촌지역 결혼연령 성비 분석과 국제결혼의 의의」,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pp. 105~114, 2005년 6월 17일.
- 김태현,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16(12): 1~23, 1993.
- 김한곤·이미경, 「대구지역 경산부의 남아 선호의식 및 아들 낳기 노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2(2): 73~96, 1999.
- 김한곤, 「선별적 인공유산의 결정인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0(1): 65~96, 1997.
- 김한곤, 「여성의 지위와 출산력의 질적 연구」, 『한국인구학』 17(2): 21~43, 1994.
- 민가영, 「글로벌 자본과 로컬 가부장적 충돌과 공모: 조선족 여성이주를 둘러싼 조선족 사회의 ‘여성유실’담론을 중심으로」,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 43~71, 2004년 6월 4일.
- 민경자,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계레신문사. 2001.
- 박재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 방안」,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pp. 123~128, 2005년 6월 17일.
- 박현정,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여성의 전화 부

- 설 가정폭력상담소, pp. 1~34, 2004.
-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2005.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설동훈·윤홍식,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 사회복지의 딜레마: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pp. 247~265, 2005.
- 성지혜,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신경희,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신성철, 「우리나라 출생아 성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12(1): 30~40, 1987.
- 양점도·김춘택,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복지행정논총』 16(1): 1~20, 2006.
- 양정화,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4.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2003.
- 양혜우,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 토론회: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평가와 과제 - 종합 자료집,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pp. 446~460, 2005.
- 오성배,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12, 2007.
- 옥선화·성미애·신기영,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 38(9): 1~18, 2000.
- 위 흠,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6월 4일.
- 유경선, 『국적법중 개정법률안 개정현황-서면발제-』, 김경천 의원 홈페이지, <http://www.kckim.or.kr/>, 2003.
- 윤영주,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정숙·임유경, 『성별화된 이주 방식으로서의 국제 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 윤형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a.
- 윤형숙,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4b.
- 이규삼,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금연,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2003a.
- 이금연,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2003b.

- 이삼식·신윤정·안선덕 외,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 구축』,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삼식,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일치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21(2): 34~60, 2001.
- 이삼식, 「자녀의 성구성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분석」, 『보건사회연구』 18(2): 83~1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이선미·전귀연,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2001.
- 이선주·김영혜·최정숙,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 이주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 이윤애,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4.
- 이혜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2005.
- 인봉숙, 「한일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 임중훈,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참고자료-」, 법제사법위원회, 김경천 의원 홈페이지, <http://www.kckim.or.kr/>, 2003.
- 전만길,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 전수현,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전우섭,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가정과 행복 만들기』,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461, pp. 30~38, 1997.
- 정기선·김영혜·박영은·이영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정은희,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pp. 33~52, 2004.
- 조성원,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과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채숙희, 『국제결혼한 외국인 주부의 상담실제와 어려움』,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2003.
- 최근정,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 성매매근절운동팀 강연회 자료집』, 2003년 11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003.
- 최선희·전명희,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284~308, 1999.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 자료집』, 2003.
- 통계청, 『인구학대사전』, 2006.
- 한국염,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pp. 1~16, 2004.
- 한국염, 『국제결혼, 희망과 절망의 뒤편에서』, 『중등 우리교육』 200:

- 88~89, 2006. 10.
- 한국엽,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한국 이주 여성의 실태와 과제』, 2005.
- 한국엽, 『이주여성에 관한 베이징 여성 행동강령 이행 평가』, 이주여성인권연대, 2002.
- 한주연,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홍기혜,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홍달아기·채옥희,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5(5), 2006.
- Akers, Donald S., “On Measuring the Marriage Squeeze,” *Demography* 4(2): 907~924, 1967.
- Ataca, Berry,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37(1): 13~26, 2002.
- Becker, Gary S., “A Theory of marriage: Part 1,”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813~846, 1974.
- Bhrolchain, Maire Ni, “Flexibility in the Marriage Market,” *Population: An English Selection* 13(2): 9~47, 2001.
- Bruegel, “Globalization, Feminization and Pay Inequalities in London and the UK,” in Gregory, Jeanne, Rosemary Sales and Ariane Hegewisch (eds) *Women, Work and Inequality: the challenge of equal pay in a deregulated labour market*, Mcmillan, London, 1999.
- Castles, “The Factors that make and unmake migration Polici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s* 3(3): 862~3, 2004.

- Castles, Stephen, and Godula Kosack,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Dixon, Ruth B., "Late Marriage and Non-marriage as Demographic Responses: Are They Similar?," *Population Studies* 32(3): 449~466, 1978.
- Durodoye, "Central library expanded Academic ASAP," *Journal of Cultural Psychology* 28(1): 71~80, 1997.
- Fraboni, Romina and Francesco C. Bilari, *Measure and dynamics of marriage squeezes: form baby boom to boby bust in Italy*,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 2001-005, 2001.
- Glick, Paul C., David M. Herr, and John C. Bersford, *Family formation and family composition: trends and prospects*, 1963.
- Goldman, N., Charles F. Westoff, and Charles Hammerslough, "Demography of the marriage market in the United Stages," *Population Index* 50: 5~25, 1984.
- Grossband-Shechtman, Amyre, "Marriage Squeeze and the Marriage Market," Kingsley Davis edited, *Contmporary Marriage*, Russel Sage Foundation, New York: 375~395, 1982.
- Guttentag, M., & P. E. Secord, *Too Many Women? The Sex Role Question*, Beverly Hills: Sage, 1983.
- Heer David M. and Amyra Grossband-Shechtman, "The Impact of the Female Marriage Squeeze and the Contraceptive Revolution on the Sex Roles and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1960 to 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1.
-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03*, IOM, Geneva, 2003.
- Lee, Sam-Sik, "Son Preference under Low Fertility in Korea,"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3: 1025~1043, IUSSP,

- Beijing, 11~17 Oct. 1997.
- Licher D., LeClere F., McLaughlin D.K., "Local marriage markets and the marital behavior of black and white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843~867, 1991.
- Massey et al, *World in Mo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8.
- Menj var, Salcido,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icult countries," *Gender & Society* 16(6): 898~920, 2002.
- Muhsam, H. V., "The Marriage Squeeze," *Demography* 11(2): 291~299, 1974.
- Oppenheimer, V.K.,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563~591, 1988.
- Schoen, Robert, "The Armonic Mean as the Basis of a Realistic Two-Sex Marriage Model," *Demography* 18(2): 201~216, 1981.
- Schoen, Robert, "Measuring the Tightness of a Marriage Squeeze," *Demography* 20(1): 61~78, 1983.
- Smith, Kaminskas, "Female Filipino migration to Australia: An overview," *Asian Migrant* 5(3): 72~81, 1992.
- Spanier, G. B. and P. C. Glick, "Mate Selection Differentials between Whites and Black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07~725, 1980.
- United Nat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 United Nation, *Methods of Population Projections by Age and Sex, Manual III(Manuals on methods of estimating population), ST/SOA/Series A, Population Studies*, No. 25, 1956.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New York: United Nations, 1998.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02*, New York: United Nations, 2002.

부 록

[부표 1] 외국인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2조 관련)	155
[부표 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56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	162
[부표 4]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 및 제정 일시	169
[부표 5] 지자체 국제결혼 관련 조례 비교	170
[부표 6] 국제결혼 한국인남편-외국인처 연령차이	174
[부표 7] 국적별 자녀수별 이혼 현황, 2004~2006	177
[부표 8] 외국인 처의 연령별 이혼 현황, 2004~2006	178
[부표 9]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평균이혼연령, 2004~2006	179
[부표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심층 면접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180
[부표 11] 일부 국가의 인종 분포 및 이민 특성	185

[부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2조 관련)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회체류기간상한
방문동거(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삭제 <2007.2.28>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2.4.18, 2002.11.6, 2004.8.17>	2년
거주(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개정2007.2.28> 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라.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 마.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개정 2003.9.1>	3년
영주(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상한 없음

[부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2조 관련)(계속)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회체류 기간상한
영주(F-5)	마.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아.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홍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4.8.17, 2005.7.5>	상한 없음

[부표 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4.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5.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6.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7. 단기상용(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8. 단기종합(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C-4)	일시홍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부표 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계속)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0.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2. 산업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준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3. 일반연수(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4.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주재(D-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정 2007.2.28>
17.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개정 2002.4.18, 2003.9.1>
18.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수입기계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개정 2002.4.18>
20.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부표 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계속)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1. 연구(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2. 기술지도(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3.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4. 예술홍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5의2. 연수취업(E-8)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자 <개정 2005.7.5>
25의3.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신설 2003.9.1>
25의4. 내향선원(E-10)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04.8.17>
26. 방문동거(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삭제 <2007.2.28>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2.4.18, 2002.11.6, 2004.8.17>
27. 거주(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개정2007.2.28> 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부표 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계속)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p> <p>라.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강제퇴거된 자는 제외]</p> <p>마.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3.9.1></p>
28. 동반(F-3)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8의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동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개정 99.11.27, 2003.11.20>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p> <p>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p> <p>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p> <p>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p>
28의3. 영주(F-5)	<p>마.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사.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p> <p>아.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홍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p> <p>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p>

[부표 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계속)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정되는 자 <개정 2004.8.17, 2005.7.5>
29. 기타(G-1)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0.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31. 방문취업(H-2)	<p>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p> <p>(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p> <p>(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p> <p>(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p> <p>(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p> <p>(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p> <p>(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천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p> <p>나. 활동범위</p> <p>(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p> <p>(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취업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근해 어업(05112) 4) 연안 어업(05113) 5) 양식 어업(0521)

[부표 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계속)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6) 제조업(15~37)
	7) 건설업(45~46)
	8) 산동물 도매업(51205)
	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209)
	10) 가정용품 도매업(514)
	1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51731)
	12)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13)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1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15) 무점포 소매업(528)
	16) 일반 음식점업(5521)
	17) 기타 음식점업(5522)
	18) 육상 여객 운송업(602)
	19) 냉장 및 냉동 창고업(63202)
	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633)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751)
	22) 건축물 일반 청소업(75922)
	23) 산업설비 청소업(75923)
	24) 사회복지사업(86)
	25)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90)
	26)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27)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28)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29) 육탕업(93121)
	30) 산업용 세탁업(93911)
	31)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3993)
	32) 가사 서비스업(95)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

행정구역	남편기준 혼인건수 (A)	한국인남편- 외국인 처 (B)	처기준 혼인건수 (C)	한국인처- 외국인남편 (D)	$B \div A \times 100$ (E)	$D \div C \times 100$ (F)	E+F (G)
전국	332,752	30,208	332,752	9,482	9.1	2.8	11.9
동부	274,369	21,052	283,816	8,448	7.7	3.0	10.6
읍부	26,938	2,697	23,837	375	10.0	1.6	11.6
면부	31,445	5,682	25,099	443	18.1	1.8	19.8
서울특별시	73,924	6,168	70,711	2,959	8.3	4.2	12.5
종로구	1,043	119	1,008	104	11.4	10.3	21.7
중구	1,035	140	877	62	13.5	7.1	20.6
용산구	1,842	158	1,766	175	8.6	9.9	18.5
성동구	2,686	260	2,508	106	9.7	4.2	13.9
광진구	3,059	236	2,984	102	7.7	3.4	11.1
동대문구	2,591	311	2,529	98	12.0	3.9	15.9
중랑구	2,910	286	3,023	112	9.8	3.7	13.5
성북구	3,299	239	3,084	88	7.2	2.9	10.1
강북구	2,207	237	2,319	85	10.7	3.7	14.4
도봉구	2,276	204	2,245	73	9.0	3.3	12.2
노원구	3,977	280	3,585	132	7.0	3.7	10.7
은평구	3,085	289	3,097	108	9.4	3.5	12.9
서대문구	2,511	218	2,399	98	8.7	4.1	12.8
마포구	3,391	202	3,119	121	6.0	3.9	9.8
양천구	2,798	258	2,824	111	9.2	3.9	13.2
강서구	4,171	321	3,983	141	7.7	3.5	11.2
구로구	3,701	350	3,238	207	9.5	6.4	15.8
금천구	1,819	299	1,785	129	16.4	7.2	23.7
영등포구	3,571	342	3,170	230	9.6	7.3	16.8
동작구	3,249	223	3,063	87	6.9	2.8	9.7
관악구	4,660	346	4,554	138	7.4	3.0	10.5
서초구	2,933	127	2,814	98	4.3	3.5	7.8
강남구	3,912	174	3,713	145	4.4	3.9	8.4
송파구	4,213	274	4,146	116	6.5	2.8	9.3
강동구	2,985	275	2,878	93	9.2	3.2	12.4
부산광역시	20,017	1,466	21,624	520	7.3	2.4	9.7
중구	292	29	335	12	9.9	3.6	13.5
서구	685	62	755	21	9.1	2.8	11.8
동구	606	52	695	16	8.6	2.3	10.9
영도구	848	80	1,025	34	9.4	3.3	12.8
부산진구	2,450	161	2,614	64	6.6	2.4	9.0
동래구	1,423	78	1,601	36	5.5	2.2	7.7
남구	1,701	130	1,807	43	7.6	2.4	10.0
북구	1,781	132	1,897	23	7.4	1.2	8.6
해운대구	2,181	131	2,321	75	6.0	3.2	9.2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계속)

행정구역	남편기준 혼인건수 (A)	한국인남편- 외국인 처 (B)	처기준 혼인건수 (C)	한국인처- 외국인남편 (D)	$B \div A \times 100$ (E)	$D \div C \times 100$ (F)	E+F (G)
사하구	2,136	165	2,279	50	7.7	2.2	9.9
금정구	1,348	100	1,577	40	7.4	2.5	10.0
강서구	333	33	280	4	9.9	1.4	11.3
연제구	1,161	72	1,257	22	6.2	1.8	8.0
수영구	957	64	1,056	41	6.7	3.9	10.6
사상구	1,688	147	1,702	31	8.7	1.8	10.5
기장군	427	30	423	8	7.0	1.9	8.9
대구광역시	13,892	1,070	14,298	225	7.7	1.6	9.3
중구	420	30	528	11	7.1	2.1	9.2
동구	2,090	171	2,037	24	8.2	1.2	9.4
서구	1,390	169	1,572	24	12.2	1.5	13.7
남구	1,107	84	1,222	32	7.6	2.6	10.2
북구	2,897	176	2,777	33	6.1	1.2	7.3
수성구	1,952	113	2,118	50	5.8	2.4	8.1
달서구	3,001	223	3,163	45	7.4	1.4	8.9
달성군	1,035	104	881	6	10.0	0.7	10.7
인천광역시	17,261	1,572	16,418	405	9.1	2.5	11.6
중구	748	94	605	23	12.6	3.8	16.4
동구	484	47	497	9	9.7	1.8	11.5
남구	2,954	284	2,886	59	9.6	2.0	11.7
연수구	1,495	121	1,386	47	8.1	3.4	11.5
남동구	2,645	216	2,636	67	8.2	2.5	10.7
부평구	4,128	362	3,985	108	8.8	2.7	11.5
계양구	2,046	159	1,911	27	7.8	1.4	9.2
서구	2,385	233	2,193	53	9.8	2.4	12.2
강화군	281	48	245	12	17.1	4.9	22.0
옹진군	95	8	74	0	8.4	0.0	8.4
광주광역시	8,487	643	8,532	80	7.6	0.9	8.5
동구	540	61	653	16	11.3	2.5	13.7
서구	1,866	119	1,919	18	6.4	0.9	7.3
남구	1,081	99	1,287	14	9.2	1.1	10.2
북구	2,756	201	2,872	24	7.3	0.8	8.1
광산구	2,244	163	1,801	8	7.3	0.4	7.7
대전광역시	9,502	687	9,223	136	7.2	1.5	8.7
동구	1,632	179	1,570	22	11.0	1.4	12.4
중구	1,633	142	1,695	25	8.7	1.5	10.2
서구	3,071	163	3,202	51	5.3	1.6	6.9
유성구	1,859	90	1,483	21	4.8	1.4	6.3
대덕구	1,307	113	1,273	17	8.6	1.3	10.0
울산광역시	7,493	620	6,510	58	8.3	0.9	9.2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계속)

행정구역	남편기준 혼인건수 (A)	한국인남편- 외국인 처 (B)	처기준 혼인건수 (C)	한국인처- 외국인남편 (D)	$B \div A \times 100$ (E)	$D \div C \times 100$ (F)	E+F (G)
중구	1,479	153	1,452	13	10.3	0.9	11.2
남구	2,222	160	2,003	18	7.2	0.9	8.1
동구	1,428	102	1,205	15	7.1	1.2	8.4
북구	1,149	69	777	5	6.0	0.6	6.6
울주군	1,215	136	1,073	7	11.2	0.7	11.8
경기도	77,231	6,492	67,937	1,829	8.4	2.7	11.1
수원시	8,251	564	7,533	175	6.8	2.3	9.2
장안구	2,069	133	1,830	30	6.4	1.6	8.1
권선구	2,321	167	2,110	45	7.2	2.1	9.3
팔달구	1,791	175	1,815	69	9.8	3.8	13.6
영통구	2,070	89	1,778	31	4.3	1.7	6.0
성남시	7,542	562	6,635	169	7.5	2.5	10.0
수정구	2,334	209	2,132	59	9.0	2.8	11.7
중원구	2,097	245	1,922	36	11.7	1.9	13.6
분당구	3,111	108	2,581	74	3.5	2.9	6.3
의정부시	2,611	240	2,500	75	9.2	3.0	12.2
안양시	4,142	284	3,898	76	6.9	1.9	8.8
만안구	1,785	174	1,747	45	9.7	2.6	12.3
동안구	2,357	110	2,151	31	4.7	1.4	6.1
부천시	6,046	466	5,641	138	7.7	2.4	10.2
원미구	3,144	208	2,952	71	6.6	2.4	9.0
소사구	1,672	123	1,523	37	7.4	2.4	9.8
오정구	1,230	135	1,166	30	11.0	2.6	13.5
광명시	2,141	199	1,958	52	9.3	2.7	12.0
평택시	3,103	269	2,554	96	8.7	3.8	12.4
동두천시	589	71	590	50	12.1	8.5	20.5
안산시	5,260	568	4,615	170	10.8	3.7	14.5
상록구	2,761	252	2,480	60	9.1	2.4	11.5
단원구	2,499	316	2,135	110	12.6	5.2	17.8
고양시	5,460	416	4,919	144	7.6	2.9	10.5
덕양구	2,536	226	2,221	56	8.9	2.5	11.4
일산동구	1,499	99	1,354	45	6.6	3.3	9.9
일산서구	1,425	91	1,344	43	6.4	3.2	9.6
과천시	260	18	253	8	6.9	3.2	10.1
구리시	1,294	106	1,224	28	8.2	2.3	10.5
남양주시	3,002	248	2,833	58	8.3	2.0	10.3
오산시	1,342	77	1,102	20	5.7	1.8	7.6
시흥시	3,182	324	2,608	62	10.2	2.4	12.6
군포시	2,148	125	1,784	44	5.8	2.5	8.3
의왕시	772	46	719	21	6.0	2.9	8.9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계속)

행정구역	남편기준 혼인건수 (A)	한국인남편- 외국인 처 (B)	처기준 혼인건수 (C)	한국인처- 외국인남편 (D)	$B \div A \times 100$ (E)	$D \div C \times 100$ (F)	E+F (G)
하남시	902	91	771	20	10.1	2.6	12.7
용인시	5,251	289	4,424	102	5.5	2.3	7.8
처인구	1,564	137	1,408	21	8.8	1.5	10.3
기흥구	1,935	85	1,542	48	4.4	3.1	7.5
수지구	1,752	67	1,474	33	3.8	2.2	6.1
파주시	2,024	211	1,659	52	10.4	3.1	13.6
이천시	1,416	115	1,197	23	8.1	1.9	10.0
안성시	1,223	129	1,091	29	10.5	2.7	13.2
김포시	1,204	114	1,076	36	9.5	3.3	12.8
화성시	2,632	266	1,729	40	10.1	2.3	12.4
광주시	1,551	175	1,345	38	11.3	2.8	14.1
양주시	1,083	124	925	29	11.4	3.1	14.6
포천시	1,023	153	903	34	15.0	3.8	18.7
여주군	672	80	582	7	11.9	1.2	13.1
연천군	275	40	228	7	14.5	3.1	17.6
가평군	320	53	244	11	16.6	4.5	21.1
양평군	510	69	397	15	13.5	3.8	17.3
강원도	8,731	795	8,063	112	9.1	1.4	10.5
춘천시	1,434	122	1,404	19	8.5	1.4	9.9
원주시	1,858	160	1,735	28	8.6	1.6	10.2
강릉시	1,184	67	1,225	12	5.7	1.0	6.6
동해시	558	39	549	6	7.0	1.1	8.1
태백시	329	23	307	4	7.0	1.3	8.3
속초시	468	32	491	4	6.8	0.8	7.7
삼척시	354	25	380	3	7.1	0.8	7.9
홍천군	470	56	356	2	11.9	0.6	12.5
횡성군	244	49	194	7	20.1	3.6	23.7
영월군	195	36	163	1	18.5	0.6	19.1
평창군	227	28	219	5	12.3	2.3	14.6
정선군	281	33	242	7	11.7	2.9	14.6
철원군	288	29	237	4	10.1	1.7	11.8
화천군	165	11	86	1	6.7	1.2	7.8
양구군	132	19	94	1	14.4	1.1	15.5
인제군	223	22	137	2	9.9	1.5	11.3
고성군	180	25	133	2	13.9	1.5	15.4
양양군	141	19	111	4	13.5	3.6	17.1
충청북도	9,291	953	8,816	110	10.3	1.2	11.5
청주시	4,004	219	4,065	45	5.5	1.1	6.6
상당구	1,608	101	1,587	16	6.3	1.0	7.3
홍덕구	2,396	118	2,478	29	4.9	1.2	6.1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계속)

행정구역	남편기준 혼인건수 (A)	한국인남편- 외국인 처 (B)	처기준 혼인건수 (C)	한국인처- 외국인남편 (D)	$B \div A \times 100$ (E)	$D \div C \times 100$ (F)	E+F (G)
충주시	1,139	141	1,082	18	12.4	1.7	14.0
제천시	764	77	737	10	10.1	1.4	11.4
청원군	1,003	89	900	8	8.9	0.9	9.8
보은군	188	44	143	0	23.4	0.0	23.4
옥천군	304	64	278	5	21.1	1.8	22.9
영동군	282	63	239	2	22.3	0.8	23.2
진천군	459	66	379	8	14.4	2.1	16.5
괴산군	195	39	161	3	20.0	1.9	21.9
음성군	605	106	508	6	17.5	1.2	18.7
단양군	158	33	146	4	20.9	2.7	23.6
증평군	190	12	178	1	6.3	0.6	6.9
충청남도	13,373	1,472	11,313	187	11.0	1.7	12.7
천안시	4,445	285	3,798	57	6.4	1.5	7.9
공주시	689	115	617	18	16.7	2.9	19.6
보령시	592	70	514	7	11.8	1.4	13.2
아산시	1,866	162	1,482	31	8.7	2.1	10.8
서산시	999	94	755	7	9.4	0.9	10.3
논산시	712	131	645	10	18.4	1.6	19.9
계룡시	212	12	177	1	5.7	0.6	6.2
금산군	308	62	255	4	20.1	1.6	21.7
연기군	567	89	504	8	15.7	1.6	17.3
부여군	360	81	310	9	22.5	2.9	25.4
서천군	305	47	293	4	15.4	1.4	16.8
청양군	149	35	110	5	23.5	4.5	28.0
홍성군	479	71	398	7	14.8	1.8	16.6
예산군	509	76	442	7	14.9	1.6	16.5
태안군	366	37	365	5	10.1	1.4	11.5
당진군	815	105	648	7	12.9	1.1	14.0
전라북도	10,429	1,343	9,985	121	12.9	1.2	14.1
전주시	3,438	251	3,615	34	7.3	0.9	8.2
완산구	1,822	131	1,983	18	7.2	0.9	8.1
덕진구	1,616	120	1,632	16	7.4	1.0	8.4
군산시	1,602	171	1,482	24	10.7	1.6	12.3
익산시	1,747	231	1,756	14	13.2	0.8	14.0
정읍시	651	113	599	18	17.4	3.0	20.4
남원시	454	72	440	4	15.9	0.9	16.8
김제시	562	101	512	5	18.0	1.0	18.9
완주군	619	98	476	7	15.8	1.5	17.3
진안군	153	43	109	1	28.1	0.9	29.0
무주군	136	37	104	0	27.2	0.0	27.2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계속)

행정구역	남편기준 혼인건수 (A)	한국인남편- 외국인 처 (B)	처기준 혼인건수 (C)	한국인처- 외국인남편 (D)	$B \div A \times 100$ (E)	$D \div C \times 100$ (F)	E+F (G)
장수군	131	29	115	4	22.1	3.5	25.6
임실군	183	40	158	1	21.9	0.6	22.5
순창군	176	35	145	1	19.9	0.7	20.6
고창군	284	64	211	6	22.5	2.8	25.4
부안군	293	58	263	2	19.8	0.8	20.6
전라남도	10,507	1,582	9,322	113	15.1	1.2	16.3
목포시	1,400	118	1,464	13	8.4	0.9	9.3
여수시	1,629	126	1,642	11	7.7	0.7	8.4
순천시	1,474	179	1,389	14	12.1	1.0	13.2
나주시	491	88	417	4	17.9	1.0	18.9
광양시	902	100	734	16	11.1	2.2	13.3
담양군	293	69	244	5	23.5	2.0	25.6
곡성군	158	25	142	3	15.8	2.1	17.9
구례군	143	21	125	4	14.7	3.2	17.9
고흥군	399	107	325	6	26.8	1.8	28.7
보성군	233	37	211	2	15.9	0.9	16.8
화순군	380	65	343	2	17.1	0.6	17.7
장흥군	193	34	163	0	17.6	0.0	17.6
강진군	180	26	153	3	14.4	2.0	16.4
해남군	475	130	378	8	27.4	2.1	29.5
영암군	350	53	240	3	15.1	1.3	16.4
무안군	327	51	276	4	15.6	1.4	17.0
함평군	167	42	140	3	25.1	2.1	27.3
영광군	302	69	244	6	22.8	2.5	25.3
장성군	276	63	180	1	22.8	0.6	23.4
완도군	271	62	205	2	22.9	1.0	23.9
진도군	192	59	114	1	30.7	0.9	31.6
신안군	272	58	193	2	21.3	1.0	22.4
경상북도	16,178	1,885	14,479	185	11.7	1.3	12.9
포항시	2,906	216	2,753	39	7.4	1.4	8.8
남구	1,551	117	1,389	17	7.5	1.2	8.8
북구	1,355	99	1,364	22	7.3	1.6	8.9
경주시	1,677	221	1,548	21	13.2	1.4	14.5
김천시	831	108	780	8	13.0	1.0	14.0
안동시	836	128	811	12	15.3	1.5	16.8
구미시	3,058	171	2,389	20	5.6	0.8	6.4
영주시	551	89	491	7	16.2	1.4	17.6
영천시	594	110	574	6	18.5	1.0	19.6
상주시	569	147	469	7	25.8	1.5	27.3
문경시	339	54	324	7	15.9	2.2	18.1

[부표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수준, 2006년(계속)

행정구역	남편기준 혼인건수 (A)	한국인남편- 외국인 처 (B)	처기준 혼인건수 (C)	한국인처- 외국인남편 (D)	$B \div A \times 100$ (E)	$D \div C \times 100$ (F)	E+F (G)
경산시	1,626	120	1,521	17	7.4	1.1	8.5
군위군	141	36	101	3	25.5	3.0	28.5
의성군	272	78	229	3	28.7	1.3	30.0
청송군	123	18	103	1	14.6	1.0	15.6
영양군	110	29	99	1	26.4	1.0	27.4
영덕군	207	24	200	4	11.6	2.0	13.6
청도군	216	50	184	1	23.1	0.5	23.7
고령군	242	49	200	1	20.2	0.5	20.7
성주군	240	58	196	7	24.2	3.6	27.7
칠곡군	952	53	916	9	5.6	1.0	6.5
예천군	224	51	193	2	22.8	1.0	23.8
봉화군	160	36	136	7	22.5	5.1	27.6
울진군	254	35	221	2	13.8	0.9	14.7
울릉군	50	4	41	0	8.0	0.0	8.0
경상남도	20,789	2,240	18,446	223	10.8	1.2	12.0
창원시	3,386	214	3,005	28	6.3	0.9	7.3
* 마산시	2,657	213	2,722	24	8.0	0.9	8.9
진주시	1,905	237	1,921	31	12.4	1.6	14.1
진해시	1,318	62	1,047	13	4.7	1.2	5.9
통영시	877	99	842	5	11.3	0.6	11.9
사천시	724	105	645	5	14.5	0.8	15.3
김해시	3,056	262	2,671	37	8.6	1.4	10.0
밀양시	586	107	556	8	18.3	1.4	19.7
거제시	1,913	132	1,322	14	6.9	1.1	8.0
양산시	1,592	124	1,397	25	7.8	1.8	9.6
의령군	160	56	143	2	35.0	1.4	36.4
함안군	385	82	317	5	21.3	1.6	22.9
창녕군	352	64	306	4	18.2	1.3	19.5
고성군	299	59	272	2	19.7	0.7	20.5
남해군	253	76	206	3	30.0	1.5	31.5
하동군	270	59	229	1	21.9	0.4	22.3
산청군	211	55	174	6	26.1	3.4	29.5
함양군	259	101	169	2	39.0	1.2	40.2
거창군	324	72	273	2	22.2	0.7	23.0
합천군	262	61	229	6	23.3	2.6	25.9
제주도	3,576	277	3,582	102	7.7	2.8	10.6
제주시	2,564	193	2,599	72	7.5	2.8	10.3
서귀포시	1,012	84	983	30	8.3	3.1	11.4
국외	12,071	943	33,493	2,117	7.8	6.3	14.1

[부표 4]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 및 제정 일시

시도	시군구	조례명	제정일시
충남	보령시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2.29
	금산군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2006.12.29
	연기군	연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2
	부여군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7.4.25
	청양군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007.4.20
전북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2006.10.2
	임실군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2007.3.6
	순창군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2006.6.1
	창원시	창원시 농촌총각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2006.5.12
	마산시	마산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2006.5.10
	진주시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2006.8.16
	통영시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2006.8.21
	사천시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	2006.5.10
경남	거제시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2006.12.18
	의령군	의령군 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2006.7.14
	함안군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2006.7.7
	창녕군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2007.4.5
	남해군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2006.4.28
	하동군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2006.9.29
	산청군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2006.4.14
	함양군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2006.1.31
	거창군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2006.9.26
	합천군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2006.8.14
제주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7.4.4

자료: 여성가족부 의회 제출 자료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부표 5] 지자체 국제결혼 관련 조례 비교

구분	거창군	제주도	마산시	부여군	연기군
조례명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마산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연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06-09-26	2007·04·04	2006. 5. 10.	2007. 2. 21 2007. 4. 25(개정)	2007.01.02
목적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결혼 적령기 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 원만한 가정 지원 통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대응.
지원 대상1	농업·농촌기본법제 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3세 이상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35세 이상 혼인경험 없는 도내 거주자	농업·농촌기본법제 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지원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남자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 이상 50세 미만 혼인 무경험 군내 거주자
지원 대상2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으로 선정된 자	도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①농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희망자 중 선정 ②희망자가 많을 경우, 마산시농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군내 거주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군내 거주(단,1회 지원)	군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지원 기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 일부나 전부 회수		①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금지급 ②기한 내 지원금 지급 불가능 또는 연장시 그 사유를 신청인에 안내 ③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일부 회수	③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사후관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게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①사회적응교육 등 ②출생아동의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 적응, 학력신장 등 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 노력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마산시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	①사회적응교육 등 ②출생아동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군내 정착 등 노력.	①사후적응교육 등 ②출생아동의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 적응, 학력신장 등을 위한 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 노력

[부표 5] 지자체 국제결혼 관련 조례 비교(계속)

구분	순창군	경상남도	진주시	거제시	의령군
조례명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혼인사업 지원조례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의령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제정일		2006.6.1	2006.8.16	2006.12.18	2006.7.14
목적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토록 함	영농의욕의 고취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	영농의욕 고취, 농촌사회 활력 제고
지원대상 ¹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자	“농촌총각”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만 35세 이상의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하여 농촌지역 거주 남성농업인, 호적법상 미혼, 만35세 이상 50세 미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호적법상 미혼, 30세 이상 남성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남자농업인, 호적법상 미혼, 35세 이상
지원대상 ²	순창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외 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으로 선정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자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으로 선정된 자	우리 군 관내 농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필한 자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확정된 후 지원기준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후관리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 성사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 노력.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습과 문화 등 별도의 사회적응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시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자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관내 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사후관리 노력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기타				지원금의 회수 1. 허위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기타 시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표 5] 지자체 국제결혼 관련 조례 비교(계속)

구분	산청군	청양군	사천시	장수군	임실군
조례명	산청군 농촌총각가정 이르기 지원조례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 조례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제정일	2006.4.14	2007-04-20	2006.5.10	2006.10.02	2007.03.06
목적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에 활력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사회에 활력
지원대상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남자농업인, 호적법상 미혼, 35세 이상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남자농업인, 호적법상 미혼, 35세 이상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남자농업인, 호적법상 미혼, 35세 이상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남자농업인, 호적법상 미혼, 35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농업인, 호적법상 미혼남성
지원대상2	산청군내 거주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 하고 혼인신고 필	군내거주 농촌총각으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 희망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	관내 거주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 희망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자
지원기준	예산 범위 내 1회 결혼소요비용 일부 지원, 6백만원 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산 범위내 국제결혼 소요비용 일부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소요비용 일부
사후관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시관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군내농촌 정착 외국인 등록 및 국외취득 알선, 사회적응교육 등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습득 및 학업교생활적응, 학력신장 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노력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으로 성사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노력
기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 1. 관련법령 및 조례 위반 경우 2.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 무단이탈 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4. 기타 시장이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의 회수) 1.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회수) 1.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부표 5] 지자체 국제결혼 관련 조례 비교(계속)

구분	하동군	남해군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조례명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양녕군농업인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 조례
제정일	2006.9.29	2006.4.28	2007.4.5	2006.1.31	2006.8.14
목적	안정적 영농정착 생활을 돕고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영농의욕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지원대상1	“농촌총각”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농어촌총각”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사람	“농업인 미혼 남성”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사실혼 등 결혼경력이 없고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	농촌총각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
지원대상2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지원 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남해군내에 거주하는 농어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인신고를 필한 사람	창녕군 내 거주하는 농업인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함양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통하여	농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7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백만원을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2.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출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후관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농어촌총각 행복가정이 이루기 지원사업으로 성사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노력	지원자가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려.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 안의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기타	부칙) 조례 공포일 이전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공포일 전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도 이 조례의 규정 준용 시행규칙) 지원기준, 심사기준	

[부표 6] 국제결혼 한국인남편-외국인처 연령차이

(단위: %)

남편 연령	여자>남자	여자=남자	남자>여자						전체
			1~2년	3~5년	6~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25세 미만									
1995	33.9	16.8	27.7	19.9	1.8	0.0	0.0	0.0	100.0
1996	30.1	21.2	28.7	18.7	1.4	0.0	0.0	0.0	100.0
1997	31.0	20.0	29.2	18.1	1.5	0.2	0.0	0.0	100.0
1998	32.1	17.8	29.2	19.1	1.6	0.2	0.0	0.0	100.0
1999	32.0	16.7	29.6	18.4	2.9	0.0	0.2	0.0	100.0
2000	32.4	16.8	28.9	19.0	2.5	0.3	0.0	0.0	100.0
2001	29.0	17.2	30.2	21.5	2.1	0.0	0.0	0.0	100.0
2002	29.2	20.8	27.6	20.8	1.6	0.0	0.0	0.0	100.0
2003	31.8	19.0	28.9	18.3	1.4	0.5	0.0	0.0	100.0
2004	34.2	17.4	24.7	20.2	3.4	0.2	0.0	0.0	100.0
2005	36.3	14.5	27.3	18.6	3.2	0.2	0.0	0.0	100.0
2006	34.5	16.4	24.1	20.4	4.5	0.0	0.0	0.0	100.0
25~29세									
1995	12.9	9.5	17.1	34.3	25.4	0.8	0.0	0.0	100.0
1996	14.8	10.1	19.7	32.4	22.5	0.5	0.0	0.0	100.0
1997	13.0	10.6	17.8	34.4	23.9	0.3	0.0	0.0	100.0
1998	16.3	10.1	22.6	30.3	20.3	0.4	0.0	0.0	100.0
1999	19.7	9.5	21.0	30.0	18.7	1.1	0.0	0.0	100.0
2000	16.6	9.6	19.9	29.6	23.0	1.3	0.0	0.0	100.0
2001	16.9	12.0	21.1	29.7	19.9	0.4	0.0	0.0	100.0
2002	17.4	8.4	17.8	28.5	25.5	2.4	0.0	0.0	100.0
2003	16.5	9.8	18.9	31.3	21.6	1.9	0.0	0.0	100.0
2004	18.4	8.3	21.9	27.4	21.1	2.9	0.0	0.0	100.0
2005	19.9	9.3	19.0	23.9	23.4	4.5	0.0	0.0	100.0
2006	18.6	10.1	18.7	25.6	21.5	5.6	0.0	0.0	100.0
30~34세									
1995	5.8	4.7	10.5	18.1	35.2	25.4	0.2	0.0	100.0
1996	5.8	3.6	10.3	17.7	38.2	24.3	0.1	0.0	100.0
1997	4.5	2.3	5.9	17.4	42.7	27.0	0.1	0.0	100.0
1998	6.7	3.2	9.8	21.7	37.4	20.8	0.3	0.0	100.0
1999	6.3	3.3	10.0	26.7	35.0	18.3	0.4	0.1	100.0
2000	5.3	3.4	9.0	23.5	37.6	21.1	0.1	0.0	100.0
2001	5.9	3.7	8.8	20.3	35.3	25.6	0.5	0.0	100.0
2002	6.8	4.9	8.5	19.1	32.9	26.6	1.3	0.0	100.0
2003	6.8	4.1	8.8	18.8	31.3	27.2	3.1	0.0	100.0
2004	8.8	4.3	8.9	16.3	29.4	28.6	3.6	0.0	100.0
2005	8.4	3.6	8.8	15.6	26.0	30.8	6.7	0.0	100.0
2006	7.5	2.9	6.1	13.5	24.3	35.9	9.8	0.0	100.0

[부표 6] 국제결혼 한국인남편-외국인처 연령차이(계속)

(단위: %)

남편 연령	여자>남자	여자=남자	남자>여자						전체
			1~2년	3~5년	6~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35~39세									
1995	5.5	2.6	7.6	14.5	25.3	35.4	9.0	0.0	100.0
1996	5.2	2.2	6.7	13.1	25.9	38.4	8.5	0.1	100.0
1997	5.0	2.0	5.6	11.7	21.4	44.1	10.1	0.1	100.0
1998	5.4	2.5	7.4	16.6	24.5	36.2	7.5	0.0	100.0
1999	5.2	3.0	7.7	15.9	30.3	31.2	6.6	0.1	100.0
2000	4.1	2.5	6.5	14.0	30.6	35.2	6.8	0.2	100.0
2001	5.1	3.1	5.8	13.1	27.6	34.6	10.4	0.2	100.0
2002	4.9	2.2	6.3	14.0	23.2	35.4	13.0	0.9	100.0
2003	5.6	2.6	7.1	13.2	20.4	32.3	17.0	1.7	100.0
2004	6.6	2.7	7.3	14.3	18.8	27.7	19.7	2.9	100.0
2005	7.1	2.7	6.6	11.5	16.1	24.8	26.6	4.5	100.0
2006	4.0	1.6	3.9	7.5	12.2	24.6	38.3	8.0	100.0
40~44세									
1995	4.4	2.6	7.2	14.8	21.1	27.2	20.1	2.8	100.0
1996	4.2	2.6	7.7	13.7	20.0	27.1	21.5	3.2	100.0
1997	4.9	1.9	7.1	15.2	23.1	25.8	19.2	2.7	100.0
1998	6.8	3.4	9.5	16.7	24.8	24.3	12.8	1.7	100.0
1999	8.2	3.7	7.4	17.6	25.1	25.1	11.4	1.4	100.0
2000	4.6	4.1	10.0	16.8	25.9	25.5	10.7	2.3	100.0
2001	5.9	2.7	8.8	16.5	23.3	27.4	11.8	3.5	100.0
2002	5.3	2.9	8.7	16.9	21.7	24.1	14.8	5.5	100.0
2003	6.8	4.0	8.8	16.0	23.2	20.5	12.3	8.4	100.0
2004	7.4	4.3	9.2	16.6	21.7	18.7	11.7	10.4	100.0
2005	7.4	3.5	9.0	15.1	18.2	15.2	13.2	18.4	100.0
2006	4.2	1.5	4.1	8.9	13.0	15.7	20.4	32.1	100.0
45~49세									
1995	2.5	1.1	4.5	7.8	23.8	29.4	19.3	11.7	100.0
1996	3.3	1.7	4.3	14.3	24.3	27.2	15.0	10.0	100.0
1997	4.1	1.7	5.7	14.3	26.8	27.1	13.9	6.5	100.0
1998	4.0	2.0	7.5	15.6	26.6	29.3	9.2	5.7	100.0
1999	4.9	3.4	9.2	18.7	25.1	24.5	9.5	4.9	100.0
2000	3.8	3.1	5.3	13.8	24.7	28.7	13.1	7.3	100.0
2001	3.4	2.4	7.0	16.2	27.0	27.6	11.8	4.6	100.0
2002	4.2	3.0	8.0	15.2	24.8	26.3	11.4	7.2	100.0
2003	5.3	3.7	8.3	17.0	26.6	21.0	9.2	9.0	100.0
2004	6.8	4.0	9.2	18.5	24.6	20.0	7.8	9.2	100.0
2005	6.5	3.2	8.3	17.9	23.8	18.2	8.3	13.8	100.0
2006	4.0	2.1	4.7	9.9	16.8	21.6	11.6	29.3	100.0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 원자료 분석 결과.

[부표 6] 국제결혼 한국인남편-외국인처 연령차이(계속)

(단위: %)

남편 연령	여자>남자	여자=남자	남자>여자						전체
			1~2년	3~5년	6~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50세 이상									
1995	3.0	1.3	2.0	5.2	10.5	27.3	23.9	26.7	100.0
1996	3.4	1.8	2.8	6.8	15.1	27.7	22.3	20.2	100.0
1997	2.9	1.7	2.2	7.3	16.9	29.6	25.1	14.2	100.0
1998	3.0	1.4	3.1	7.3	19.1	33.0	20.5	12.7	100.0
1999	3.1	2.7	4.5	9.2	16.4	31.0	19.1	13.9	100.0
2000	1.7	1.5	4.2	6.2	19.1	35.5	18.5	13.2	100.0
2001	2.0	1.3	3.1	7.0	20.4	34.6	18.9	12.7	100.0
2002	2.7	1.4	2.7	8.1	21.0	30.1	22.1	11.9	100.0
2003	2.3	1.3	4.2	11.5	22.6	30.6	16.6	10.8	100.0
2004	2.0	1.8	4.8	12.4	23.7	30.1	15.2	10.0	100.0
2005	2.9	1.9	5.3	12.4	23.9	28.7	13.2	11.7	100.0
2006	1.9	1.0	3.6	8.5	16.6	26.4	19.2	22.9	100.0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 원자료 분석 결과.

[부표 7] 국적별 자녀수별 이혼 현황, 2004~2006

(단위: 명, %)

구분	자녀수별 이혼건수						자녀수별 이혼 구성비(%)					
	계	없음	1명	2명	3명+	미상	계	없음	1명	2명	3명+	미상
외국인처기준	4,010	3,635	215	77	17	66	100.0	90.6	5.4	1.9	0.4	1.6
필리핀	171	150	15	4	0	2	100.0	87.7	8.8	2.3	0.0	1.2
베트남	610	557	32	13	0	8	100.0	91.3	5.2	2.1	0.0	1.3
태국	33	26	6	0	0	1	100.0	78.8	18.2	0.0	0.0	3.0
몽고	132	120	6	5	0	1	100.0	90.9	4.5	3.8	0.0	0.8
중국	2,551	2,396	77	27	8	43	100.0	93.9	3.0	1.1	0.3	1.7
일본	202	140	36	13	6	7	100.0	69.3	17.8	6.4	3.0	3.5
미국	73	45	20	5	2	1	100.0	61.6	27.4	6.8	2.7	1.4
러시아	43	37	5	1	0	0	100.0	86.0	11.6	2.3	0.0	0.0
기타	195	164	18	9	1	3	100.0	84.1	9.2	4.6	0.5	1.5
외국인남편기준	2,270	1,964	148	59	13	86	100.0	86.5	6.5	2.6	0.6	3.8
파키스탄	33	30	2	0	0	1	100.0	90.9	6.1	0.0	0.0	3.0
중국	319	285	18	9	3	4	100.0	89.3	5.6	2.8	0.9	1.3
일본	1,525	1,346	68	28	7	76	100.0	88.3	4.5	1.8	0.5	5.0
프랑스	11	10	1	0	0	0	100.0	90.9	9.1	0.0	0.0	0.0
독일	7	6	1	0	0	0	100.0	85.7	14.3	0.0	0.0	0.0
캐나다	30	23	5	2	0	0	100.0	76.7	16.7	6.7	0.0	0.0
미국	238	190	31	14	0	3	100.0	79.8	13.0	5.9	0.0	1.3
호주	10	8	2	0	0	0	100.0	80.0	20.0	0.0	0.0	0.0
기타	97	66	20	6	3	2	100.0	68.0	20.6	6.2	3.1	2.1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 8] 외국인 처의 연령별 이혼 현황, 2004~2006

(단위: 명, %)

처의 국적	전체	외국인 처의 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
2004	1611	70	354	429	314	179	132	71	39	16	7
필리핀	112	9	25	36	25	10	5	2	0	0	0
베트남	147	49	61	19	12	0	5	1	0	0	0
태국	42	0	6	11	15	6	3	0	1	0	0
몽고	83	3	25	44	10	1	0	0	0	0	0
중국	841	2	169	223	183	110	80	46	19	7	2
일본	145	0	11	29	36	27	20	6	10	3	3
미국	74	1	4	14	7	11	10	12	7	6	2
러시아	39	0	15	11	6	3	1	1	2	0	0
기타	128	6	38	42	20	11	8	3	0	0	0
2005	2444	122	537	596	412	286	228	152	66	27	18
필리핀	142	9	48	46	20	12	4	0	1	2	0
베트남	289	92	137	35	10	11	3	1	0	0	0
태국	37	1	3	15	11	3	1	3	0	0	0
몽고	116	11	39	43	10	10	2	1	0	0	0
중국	1431	1	242	347	277	197	175	115	47	18	12
일본	168	1	13	28	44	26	22	13	10	6	5
미국	62	0	1	7	7	15	12	13	5	1	1
러시아	52	1	16	24	4	3	0	2	2	0	0
기타	147	6	38	51	29	9	9	4	1	0	0
2006	4010	216	790	798	593	598	440	308	170	71	26
필리핀	171	14	62	45	33	13	2	2	0	0	0
베트남	610	170	304	85	31	13	3	3	1	0	0
태국	33	0	4	14	3	9	2	1	0	0	0
몽고	132	5	42	46	27	8	3	1	0	0	0
중국	2551	4	311	480	397	482	388	263	150	55	21
일본	202	1	5	39	57	38	26	19	7	9	1
미국	73	0	2	6	16	13	7	13	6	6	4
러시아	43	0	3	23	8	3	2	1	2	1	0
기타	195	22	57	60	21	19	7	5	4	0	0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 9]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평균이혼연령, 2004~2006

(단위: 세)

구분	저의 국적										한국
	전체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고	러시아	기타	전체
2004	31.2	32.3	36.2	40.1	28.6	23.1	31.7	26.4	29.3	28.6	38.3
2005	31.8	33.9	37.0	40.6	27.7	22.7	31.1	26.6	28.5	29.0	38.6
2006	33.2	36.3	36.8	41.7	27.0	22.9	31.6	27.7	31.8	28.0	
	외국인 남편 국적										한국
	전체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파키스탄	기타	전체
2004	47.0	39.3	49.8	39.1	40.2	42.5	38.4	39.4	32.2	36.6	41.8
2005	47.0	40.5	49.9	39.1	37.3	40.5	42.8	35.4	33.3	36.8	42.1
2006	46.2	41.5	49.5	38.4	35.5	34.8	51.1	39.5	36.6	38.3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심층 면접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	출신국	거주지역	국적 취득여부	현재연령		입국 시기	입국 목적	결혼 날짜	결혼 연령	혼인 상태	결혼 방법
				모	부						
1	중국 조선족	경남 김해시 장유면	한국	28	38	2003	결혼	2003	23	초혼	연애
2	중국 조선족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	32	38	2002	연수	2003	28	초혼	연애
3	중국 조선족	전남 순천시 조례동	-	24	46	2006	결혼	2006	23	초혼	소개
4	중국 한족	전남 순천시 동면	-	32	39	2003	여행	2004	28	초혼	소개
5	중국 한족	대구 달성군	-	32	39	2004	결혼	2004	29	초혼	소개
6	몽골(고려인)	강원 춘천시	-	31	40	2004	결혼	2004	27	초혼	중개
7	몽골	강원 춘천시 석사동	-	34	33	1999	여행	2003	30	초혼	종교
8	우즈베키스 탄	경남 창원시 동읍	-	27	37	2005	결혼	2005	26	초혼	중개
9	우즈베키스 탄	강원 춘천시 효자동	-	31	46	2000	일	2003	28	재혼	중개
10	카자흐스탄	전북 김제시 부량면	-	33	38	2001	결혼	2001	27	초혼	중개
11	베트남	강원 춘천시 오백호동	-	29	45	2003	결혼	2003	25	재혼	중개
12	베트남	강원 춘천시 우지2동	-	22	38	2004	결혼	2003	19	초혼	중개
13	베트남	대전 대덕구 신단진동	-	26	46	2001	결혼	2001	20	초혼	소개
14	베트남	전남 순천시	-	24	45	2004	결혼				중개
15	태국	강원 춘천시 호평3동	-	30	39	2000	결혼	2000	23	초혼	종교
16	태국	충북 청주시 흥덕군	-	27	45	2001	결혼	2001	21	재혼	소개
17	태국	전남 순천시 황천면	-	35	46	1999	결혼	1999	23	초혼	종교
18	필리핀	강원 춘천시 규동	한국	28	40	2002	결혼	2002	24	초혼	종교
19	필리핀	강원 춘천시 효자2동	한국	36	45	1997	결혼	1997	25	초혼	종교
20	필리핀	전남 순천시 시내군	-	47		1996	결혼	1996	37	초혼	종교
21	필리핀	충북 청주시 흥덕구	-	22	42	2004	결혼	2003	18	초혼	중개
22	인도네시아	강원 춘천시 효자동	-	28	46	2003	결혼	2002	23	초혼	연애
23	일본	대구 달성군 다사읍	-	32	36	1997	결혼	2005	30	초혼	종교

주: 1) 빈칸은 무응답.

2) 혼인상태 재혼은 부인은 초혼이며 남편은 재혼인 경우임.

[부표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심층 면접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사례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직업	월평균 소득
	모	부	모					
			본국(입국전)	입국후-결혼 전	결혼후	출산후	부	
1	고졸	고졸	무역회사 2년 의류관련 2년	없음	없음	없음	회사원	3400(연)
2	고졸	고졸	복장회사 3년 회사 8개월	산업연수생 1년	없음	없음	회사원	270(월)
3	고졸	고졸	한국인 회사 통역 1년 한국인 공장 2년	없음	없음	없음	간암으로 사망	
4	고졸	-	회사 경리업무 1년	없음	없음	없음	무직	
5	대졸	고졸	교사	없음	회사 경리	없음	회사원	200(월)
6	대졸	고졸	없음	없음	없음	모텔청소	보일러	
7	대졸	고졸	비서 2년 NGO 2년	없음	없음	영어 강사	회사원	200(월)
8	대졸	고졸	안경점,pc방	없음	없음	없음	쌀 장사	170(월)
9	고졸	고졸	어린이집 주방	식품공장	없음	없음	농사+보일러	130~150
10	전 문 대	고졸	미술교사	없음	없음	없음		120~150
11	고졸	모름	회사 경리	없음	없음	없음	자동차 정비	잘 모름
12	고졸	고졸		없음	없음	없음		220
13	고졸	모름	빵가게	없음	없음	영어 강사	아무거나 해요	242
14	초졸	모름		없음	없음	없음	환경미화원	200
15	고졸	고졸	의류공장 미싱	없음	없음	돼지고기 포장		100
16	초졸	모름	언니 옷가게 도외잡	없음	호프집 주방	없음		89
17	고졸	모름	장사	없음	없음	없음		150
18	대졸	고졸	교사	없음	없음	없음	장사	잘 모름
19	대졸	초졸	백화점 계산대	없음	영어 과외	없음	공공근로사 업	150~200
20	대졸	초졸	회사	없음	영어 강의	없음		
21	고졸	모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20
22	고졸	모름	의류업체 미싱	없음	없음	없음		100
23	전 문 대	고졸	치과, 음식코너 아르바이트	없음	없음	없음	회사원	

[부표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심층 면접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사례	언어사용	가족사항			경제적 수준		주택 유형
		현재동거원	시댁가족	친정가족	시댁	친정	
1	한국어+중국어	남편, 자녀2, 시어머니	시어머니, 1남 2녀	부모, 딸3	상	중	아파트
2	한국어+중국어	남편, 자녀2, 친정부모	시어머니, 2남	부모, 딸3	보통	보통	아파트
3	한국어	자녀1, 친정엄마	시부모, 2남 4녀	부모, 딸1	보통	보통	아파트
4	한국어	시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1남 4녀	부모, 딸2	어려움	보통	단독주택
5	한국어+중국어	남편, 자녀2	2남 1녀	부모, 2녀	보통	괜찮은편	아파트
6	한국어+몽골어	친정엄마, 남편, 딸		모, 3남 2녀	보통		빌라
7	한국어+영어	남편, 자녀1	시부모, 2남	부, 2녀	보통	보통	아파트
8	한국어+러시아	친정부모, 남편, 자녀1	시부모, 2남 1녀	부모, 1남1녀	보통	보통	빌라
9	한국어+러시아	남편, 자녀2	시어머니, 3남 1녀	부모, 1남4녀	상	보통	아파트
10	한국어+러시아	시어머니, 시동생, 남편, 자녀2	시어머니, 2남 2녀	부모, 1남 2녀	보통	보통	단독주택
11	한국어+베트남	시어머니, 남편, 자녀3	시어머니, 1남2녀	부모, 1남 3녀	모름	보통	아파트
12	한국어	남편, 딸1	시부모, 2남 1녀	부모, 1남2녀	하	중	연립주택
13	한국어+영어	남편, 자녀2	시어머니, 2남	부모, 5남4녀	못삼	못삼	단독주택
14	한국어+영어	시어머니, 남편, 딸	시어머니, 3남2녀	부, 동생4명			
15	한국어	남편, 딸	3남 1녀	모, 2남6녀	보통	하	연립주택
16	한국어+태국어	남편, 자녀1	시어머니, 2남 1녀	부모, 1남 2녀	하	보통	아파트
17	한국어+태국어	시부모, 남편, 자녀4명	시부모, 3남3녀	부모, 3남6녀	중	중	단독주택
18	한국어+영어	남편, 자녀2	시부모, 4남3녀	모, 2남5녀	상	보통	주택(월세)
19	한국어+영어	시어머니, 남편, 자녀3, 조카1	시어머니, 3남	부모, 1남 5녀	하	보통	주택
20	한국어+영어	남편, 자녀2	시어머니, 3남2녀	5남5녀		보통	아파트
21	한국어+베트남	남편, 자녀2	시어머니, 1남1녀	부모, 1남1녀		보통	단독주택
22	한국어+인도네시아어	시어머니, 남편, 자녀1	시어머니, 2남1녀	모, 1남2녀	하	보통	단독주택
23	한국어+일본어	남편, 딸1	시부모, 4남	부모, 1남1녀	보통	보통	아파트

[부표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심층 면접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사례	종교				사회적 관계망						단체활동여부
	입국전	입국후	시택	친정	동족	외국 친구	국내 한국인	국내 외국인	이웃	친족	
1	없음	없음	불교	없음	6명	없음	4명				없음
2	없음	불교	불교	불교	1명	없음	6명	없음			없음
3	없음	기독교	-	-	3명	1명	없음	없음	-	-	교회, YMCA, 복지관
4	없음	없음			5명						
5	없음	기독교			5명	별로 없음	별로 없음			3	교회, 결혼이민자센터
6	불교	불교			5명						
7	통일교	통일교	통일교	불교	3명	2명	없음		4명		
8	기독교	기독교	없음	기독교	2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교회
9	없음	기독교	없음		3~4명	없음	없음				교회
10	카톨릭	없음			1명				1명		
11	불교	기독교			15명						교회
12	없음	없음			4명					1명	춘천시립도서관
13	카톨릭	기독교			10명						
14	불교	없음	불교		5명						
15	불교	불교			1명			1명			교회
16	기독교	기독교			3명						
17	불교	통일교									교회
18	카톨릭	카톨릭			9명	1명					
19	카톨릭	카톨릭	기독교	카톨릭	5명	없음	없음	없음	2명		
20	통일교										
21	없음	없음			2명		1명			1명	
22	이슬람교	이슬람교									
23	통일교	통일교	불교	불교	3~4명	1~2명			2명		교회

[부표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심층 면접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사례	자녀현황				정부지원여부	불임 및 유산 여부
	성별 및 연령	취학 및 보육상태	보육비용	학원		
1	딸(4세), 딸(3살)	첫째 어린이집	165,000	가정학습지1년	보육료	유산 1회
2	딸(4세), 아들(3개월)	첫째 어린이집	17만원	한솔학습지	출산장려금1회(30만원)	유산1회
3	딸1(7개월)	가정에서 양육				없음
4	없음					유산1회, 불임
5	아들(3세), 딸(1세)	첫째 어린이집	32만원		보육료 무료	없음
6	딸1(3세)	어린이집	30만원			
7	딸1(4세)	어린이집	26만 2천원		보육료 50%지원	없음
8	아들1(1세)					
9	아들(10세)), 딸(3세)	둘째 어린이집	24만원	첫째 피아노(9~0만원), 구몬학습(2만 9천원)		
10	아들(6세), 딸(1세)	첫째,둘째 유치원	무료		보육료 전액 지원	유산 1회
11	아들(15세),아들(12세),딸(4세)	셋째 어린이집	25만원	첫째,둘째 학원 가는데 모름		
12	딸1(4세)					
13	딸(6세),아들(5세), 셋째(22개월)	첫째,둘째 유치원	무료		남편 장애인이라 자녀 교육비 무료	
14	딸(3세)					
15	딸(7세)	유치원	10만원			유산1회
16	아들(19세), 딸(15세),아들(13세),아들(25개월)	막내 아들 어린이집	30만원			
17	딸(8세), 딸(7세), 딸(5세), 아들(8개월)	둘째, 셋째 유치원	4만2천원 2만 7천원		보육료 지원	
18	아들(5세), 아들(10개월)	첫째 유치원	무료		보육료 지원	
19	아들(10세), 아들(8세), 아들(3세)	첫째,둘째 태권도 셋째 어린이집	태 권 도 8만원		기초생활수급자로 학원비,교육비 50%지원	
20	딸(8),아들(3세)	둘째 어린이집				유산1회
21	딸(3세), 아들(10개월)	첫째 놀이방	5만원			
22	딸(5세), 둘째 임신중	첫째 유치원	12만5천원			
23	딸(3세)					

[부표 11] 일부 국가의 인종 분포 및 이민 특성

국가	출산율 (명)	순이동 율(%)	총인구의 인종별 분포	이민자 특성
일본	1.32 (‘07년)	0.0	일본인 99%, 기타 1%(한국, 중국, 브라질, 필리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는 77만명(전체 노동자의 1.3%)으로 28%증가(‘05년) ◦ 인구 1/500 외국인 출신(‘03년) ◦ 15쌍중 1쌍(6.6%)이 국제결혼(‘04년)
대만	1.2 (‘05년)		대만인(本省人) 84%, 대륙본토인(外省人) 14%, 고산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4쌍 중 1쌍 비율로 동남아나 중국 등에서 신부 수입
미국	2.09 (‘07년)	3.10 (‘07년)	백인 66.8%, 히스패닉 14.5%, 흑인 11.9%, 아시안 4.3%(‘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스패닉 및 아시안 인구 매년 3% 이상의 빠른 증가율
캐나다	1.61 (‘03년)	5.9 (‘05년)	영국계 34.4%, 프랑스계 25.7%, 독일계 3.6%, 이태리계 2.8%, 우크라이나계 1.7%, 인디언·에스키모 1.5%, 중국계 1.4%, 네덜란드계 1.4%, 혼혈·기타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는 아시아 50%, 유럽 25%, 중남미 14%, 기타 11% ◦ 2001~2006년간 인구 160만 명 증가(이민자 120만, 국내 출생아 40만명)
호주	1.81 (‘05년)	3.91 (‘05년)	유럽인 89.3%, 아시안 5.1%, 중국인 1.2%, 남부아시안 1.6%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태생 이민자 비율 23.87% ◦ 이민자는 영국계 15%, 뉴질랜드계 15%, 인도계 10%, 중국계 8%(‘05)
프랑스	2.0 (‘06년)	0.66 (‘05년)	켈트족, 슬라브 족, 북아프리카인, 인도차이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는 총인구의 8%(490만명) ◦ 인구증가: 자연증가 64%, 이민증가 36%(‘01~‘04년)
스웨덴	1.85 (‘06년)	1.66	북게르만족(95%), 랍족(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는 총인구의 13%(‘04년) ◦ 출신국은 핀란드, 옛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기타 북유럽
영국	1.74 (‘06년)	2.18 (‘05년)	백인 92%, 인도인 1.8%, 파키스탄인 1.3%, 흑인 2%(‘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는 총인구의 8% - 인구증가는 자연증가 34%, 이민증가 66%(‘01~‘04년도)
스위스	1.44 (‘07년)	3.58 (‘05년)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탈리아계 10%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는 총인구의 19%
독일	1.37 (‘06년)	2.18 (‘05년)	독일인 91.5%, 터키인 2.4%, 기타 6.1%(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는 총인구의 9%
이탈리아	1.33 (‘06년)	2.07 (‘05년)	이탈리안 96.0%, 알바니아계 0.8%, 독일계0.5%,프랑스계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는 총인구의 4%(300만명) (‘05년)

자료: <http://migrationinformation.org/Resources>.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http://paa2007.princeton.edu/download.aspx?submissionId=70869>.

